

별책보고서

T0023822

근해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007. 12

연구기관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가온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해양수산부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어선감적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용역
요약 보고서 (별책)

■ 근해어선 어업실태 및 경영상태 분석

□ 평년수익액 산출

❖ 평균연간어획금액

$$\text{※ 평균연간어획금액} = \text{평균연간어획량} \times \text{평균연간판매단가}$$

❖ 평년어업경비

$$\text{※ 평년어업경비} = \text{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 기산한 해당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

❖ 평년수익액

$$\text{※ 평년수익액} = \text{평균연간어획금액} - \text{평년어업경비}$$

□ 평년수익액 분석결과

평년수익액 자료를 기초로 업종간, 어선규모간의 상관관계 및 평년수익액 추정 모형을 통한 평년수익액 예측을 위하여 통계적 분석을 하였음.

❖ 업종별 (기대)평년수익액

허가업종	구분	평년수익액 (천원)	평년수익액 × 3년(천원)						
			100%	90%	80%	70%	60%	50%	
대형기저 (외끌이)	톤수에 유의성 없음	105,121	315,363	283,826	252,290	220,754	189,218	157,681	
	마력적용 경우	550마력미만	96,953.94	290,862	261,776	232,689	203,603	174,517	145,431
		550마력이상 ~700마력미만	109,215.26	327,646	294,881	262,117	229,352	196,587	163,823
		700마력이상	118,186.48	354,559	319,103	283,648	248,192	212,736	177,280
대형기저 (쌍끌이)	톤수적용 경우	130톤미만	175,528.41	526,585	473,927	421,268	368,610	315,951	263,293
		130톤이상	255,403.99	766,212	689,591	612,970	536,348	459,727	383,106
	마력적용 경우	800마력미만	189,195.20	567,586	510,827	454,068	397,310	340,551	283,793
		800마력이상 ~1600마력미만	240,100.96	720,303	648,273	576,242	504,212	432,182	360,151
		1600마력이상	280,885.40	842,656	758,391	674,125	589,859	505,594	421,328

동해구 기저	톤수,마력에유의성없음		117,646	352,939	317,645	282,351	247,057	211,763	176,470
서남구 (외갈이)	톤수,마력에 유의성없음		178,389	535,167	481,650	428,134	374,617	321,100	267,584
서남구 (쌍갈이)	톤수적용 경우	50톤미만	181,860	545,580	491,022	436,464	381,906	327,348	272,790
		50톤이상	294,580	883,740	795,366	706,992	618,618	530,244	441,870
대형트롤	톤수,마력에 유의성없음		211,916.71	635,750	572,175	508,600	445,025	381,450	317,875
동해구 트롤	톤수적용 경우	40톤미만	89,365.59	268,097	241,287	214,477	187,668	160,858	134,048
		40톤이상	209,897.19	629,692	566,722	503,753	440,784	377,815	314,846
	마력적용 경우	700마력이상	128,870.73	386,612	347,951	309,290	270,629	231,967	193,306
		700마력이하	230,643.59	691,931	622,738	553,545	484,352	415,158	345,965
대형선망	톤수적용 경우	100톤미만	463,016	1,389,048	1,250,143	1,111,238	972,334	833,429	694,524
		100톤이상	771,694	2,315,082	2,083,574	1,852,066	1,620,557	1,389,049	1,157,541
소형선망	톤수,마력에 유의성없음		66,054	198,162	178,346	158,530	138,713	118,897	99,081
허기업종	구분		평년수익액 (천원)	평년수익액 × 3년(천원)					
				100%	90%	80%	70%	60%	50%
채낚기	톤수적용 경우	35톤미만	60,356.58	181,070	162,963	144,856	126,749	108,642	90,535
		35톤이상 ~65톤미만	72,964.07	218,892	197,003	175,114	153,225	131,335	109,446
		65톤이상	83,452.30	250,357	225,321	200,286	175,250	150,214	125,178
기선 권현망	본선 톤수적용 경우	20톤미만	141,381.33	424,144	381,730	339,315	296,901	254,486	212,072
		20톤이상 ~30톤미만	173,294.84	519,885	467,896	415,908	363,919	311,931	259,942
		30톤이상	209,303.62	627,911	565,120	502,329	439,538	376,747	313,955
	총톤수 적용 경우	240톤미만	160,678.28	482,035	433,831	385,628	337,424	289,221	241,017
		240톤이상	223,562.33	670,687	603,618	536,550	469,481	402,412	335,344
자망	톤수적용 경우	35톤미만	52,514.20	157,543	141,788	126,034	110,280	94,526	78,771
		35톤이상 ~65톤미만	76,744.70	230,234	207,211	184,187	161,164	138,140	115,117
		65톤이상	93,961.99	281,886	253,697	225,509	197,320	169,132	140,943
안강망	톤수적용 경우	35톤미만	54,907.81	164,723	148,251	131,779	115,306	98,834	82,362
		35톤이상 ~65톤미만	77,239.69	231,719	208,547	185,375	162,203	139,031	115,860
		65톤이상	90,223.94	270,672	243,605	216,537	189,470	162,403	135,336

봉수망	톤수적용 경우	35톤미만	30,178.29	90,535	81,481	72,428	63,374	54,321	45,267
		35톤이상~ 65톤미만	36,482.03	109,446	98,501	87,557	76,612	65,668	54,723
		65톤이상	41,726.15	125,178	112,661	100,143	87,625	75,107	62,589
자리돔 들망	톤수적용 경우	35톤미만	30,178.29	90,535	81,481	72,428	63,374	54,321	45,267
		35톤이상~ 65톤미만	36,482.03	109,446	98,501	87,557	76,612	65,668	54,723
		65톤이상	41,726.15	125,178	112,661	100,143	87,625	75,107	62,589
잠수기	톤수,마력 에 유의성없 음	1구	79,000	237,000	213,300	189,600	165,900	142,200	118,500
		2구	45,915	137,745	123,971	110,196	96,422	82,647	68,873
		3구	47,174	141,522	127,370	113,218	99,065	84,913	70,761
		4구	45,632	136,896	123,206	109,517	95,827	82,138	68,448
		5구	70,099	210,297	189,267	168,238	147,208	126,178	105,149
		전체	49,669	149,007	134,106	119,206	104,305	89,404	74,504
허가업종	구분	평년수익액 (천원)	평년수익액 × 3년(천원)						
			100%	90%	80%	70%	60%	50%	
통발	톤수적용 경우	35톤미만	61,571.66	184,715	166,243	147,772	129,300	110,829	92,357
		35톤이상 ~65톤미만	83,338.15	250,014	225,013	200,012	175,010	150,009	125,007
		65톤이상	102,001.23	306,004	275,403	244,803	214,203	183,602	153,002
장어통발	톤수적용 경우	35톤미만	68,637.12	205,911	185,320	164,729	144,138	123,547	102,956
		35톤이상 ~65톤미만	83,340.21	250,021	225,019	200,017	175,014	150,012	125,010
		65톤이상	104,162.90	312,489	281,240	249,991	218,742	187,493	156,244
기타통발	톤수적용 경우	35톤미만	64,575.48	193,726	174,354	154,981	135,609	116,236	96,863
		35톤이상 ~65톤미만	84,148.69	252,446	227,201	201,957	176,712	151,468	126,223
		65톤이상	103,533.01	310,599	279,539	248,479	217,419	186,359	155,300
문어단지	톤수적용	40톤미만	61,987.24	185,962	167,366	148,769	130,173	111,577	92,981
패류형망	톤수,마력에 유의성없음		46,671.64	140,015	126,013	112,012	98,010	84,009	70,007
연승	톤수적용 경우	20톤미만	53,912.45	161,737	145,564	129,390	113,216	97,042	80,869
		20톤이상 ~35톤미만	65,193.64	195,581	176,023	156,465	136,907	117,349	97,790
		35톤이상	77,275.47	231,826	208,644	185,461	162,278	139,096	115,913

< 목 차 >

[별책] 근해어선 어업실태 및 경영상태 분석	1
제1절 어업실태분석 개요	1
제2절 조사내용 및 방법	1
1. 지역별 · 업종별 허가건수 및 어선척수 현황	1
2. 어업실태분석	1
제3절 어업실태분석	5
1. 지역별 · 업종별 허가건수 및 어선척수 현황	5
2. 근해어업의 평년수익액	9
제4절 평년수익액 분석	82
1. 허가업종별 톤수(또는 마력수) 구간에 따른(기대) 평년수익액의 산출	82
2. 업종별(기대) 평년수익액	90
[별책] 부 록 I	i
1. 어업별 평년수익액	i
2. 산점도	xxxix

〈표 목 차〉

<[별책] 표 1> 어업별 허가현황(2006년 12월 현재) 및 표본수	2
<[별책] 표 2> 생산자물가지수 연도별 보정계수	4
<[별책] 표 3> 소비자물가지수 연도별 보정계수	5
<[별책] 표 4> 지역별·업종별 허가현황(2006.12월말 기준)	5
<[별책] 표 5> 지역별·업종별 허가어선척수(2006.12월말 기준)	6
<[별책] 표 6> 업종별·선질별·선령별 어선척수(2006.12월말 기준)	7
<[별책] 표 7>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10
<[별책] 표 8> 근해어선어업의 어업경비 항목	11
<[별책] 표 9>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	13
<[별책] 표 10>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평년수익액	14
<[별책] 표 11>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15
<[별책] 표 12>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	18
<[별책] 표 13>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평년수익액	18
<[별책] 표 14>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19
<[별책] 표 15>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21
<[별책] 표 16>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평년수익액	22
<[별책] 표 17> 외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23
<[별책] 표 18> 외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	25
<[별책] 표 19> 외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평균수익액	26
<[별책] 표 20> 쌍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28
<[별책] 표 21> 쌍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	30
<[별책] 표 22> 쌍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평균수익액	31
<[별책] 표 23> 대형트롤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32
<[별책] 표 24> 대형트롤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34
<[별책] 표 25> 대형트롤어업 평년수익액	35
<[별책] 표 26> 동해구트롤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36
<[별책] 표 27> 동해구트롤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38
<[별책] 표 28> 동해구트롤어업 평년수익액	39
<[별책] 표 29> 대형선망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40
<[별책] 표 30> 대형선망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42
<[별책] 표 31> 대형선망어업 평년수익액	43
<[별책] 표 32> 소형선망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44
<[별책] 표 33> 소형선망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46
<[별책] 표 34> 소형선망어업 평년수익액	47
<[별책] 표 35> 근해채낚기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47

<[별책] 표 36> 근해채낚기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50
<[별책] 표 37> 근해채낚기어업 평년수익액	51
<[별책] 표 38> 기선권현망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53
<[별책] 표 39> 기선권현망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	55
<[별책] 표 40> 기선권현망어업 평년수익액	56
<[별책] 표 41> 근해자망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57
<[별책] 표 42> 근해자망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59
<[별책] 표 43> 근해자망어업 평년수익액	60
<[별책] 표 44> 근해안강망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62
<[별책] 표 45> 근해안강망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64
<[별책] 표 46> 근해안강망어업 평년수익액	65
<[별책] 표 47> 잠수기어업 평년수익액	68
<[별책] 표 48> 잠수기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70
<[별책] 표 49> 잠수기어업 평년수익액	71
<[별책] 표 50> 근해통발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72
<[별책] 표 51> 근해통발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75
<[별책] 표 52> 근해통발어업 평년수익액	76
<[별책] 표 53> 근해연승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79
<[별책] 표 54> 근해연승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	81
<[별책] 표 55> 근해연승어업 평년수익액	82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용역
별책보고서

근해어선 어업실태 및 경영상태 분석

- 1절 어업실태분석 개요
- 2절 조사내용 및 방법
- 3절 어업실태분석
- 4절 평년수익액 분석

[별책] 근해어선 어업실태 및 경영상태 분석

제1절 어업실태분석 개요

2004년까지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이후 외국과의 어업협정 및 어획량제한 등으로 인한 조업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포획한 어획물에 대한 비계통판매가 많아지는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이전의 감척사업 추진 당시와 현재의 어업경영실태에 대한 비교·검토 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근해어업의 전반적인 어업실태를 조사하여 업종별로 표준적인 어업손실액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감척제도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조사내용 및 방법

1. 지역별·업종별 허가건수 및 어선척수 현황

근해어업의 허가는 연안어업의 허가과 달리 광역시·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별·업종별 허가건수 및 어선척수에 대한 현황은 각 광역시·도별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장어통발, 잠수기, 기선권현망 등의 업종에 대한 허가는 시·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행정관련 담당부서의 협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자료 등을 이용하여 근해어업의 현황에 대하여 분석·정리하였다.

2. 어업실태분석

가. 어업실태분석

1) 현황분석

근해어업의 허가건수 및 어선척수 현황자료를 기초하여 지역별·업종별 수협과 어업인 단체 및 각 광역시·도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업무관련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근해어업 허가업종에 대한 일반적인 어업실태 및 어업자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실태조사

각 지역별·업종별 수협과 어업인 단체 및 각 광역시·도 담당부서의 관련업무 담

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수집한 현황자료를 기초해서 지역별·허가업종별로 근해어업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근해어업은 연안어업과 달리 주로 몇 일 또는 몇 개월 동안 바다에서 조업하는 항차조업을 하고 있다. 어업자 구성에 있어서도 연안어업은 부부가 직접 바다에 나가서 조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근해어업은 조업활동에 참여하는 조업인원의 수가 많고 허가업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선주는 직접 선장(자선장) 또는 선원 등으로 승선하여 조업을 하거나 직접 조업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육상에 상주하면서 원활한 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선장으로서 장기간 항해하거나 선주가 어선 입항경로에 따라 이동하는 등 어업자들의 조사에 대한 협조부족으로 인하여 직접 어업자와 면담조사를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러나 본 조사에 관심을 보이며 어업실태조사에 적극협조 해주신 어업자들을 대상으로 보유허가현황, 인적사항, 조업구역, 사용어구, 조업에 사용되는 경비항목 및 비용, 본 용역과 관련하여 타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어업실태조사지를 작성하여 직접 면담조사 및 기타 방법 등을 병행하며 근해어업에 대한 어업경영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근해어업허가를 가지고 허가에 맞게 정상조업을 하고 있는 어업자들을 가능한 한 많이 조사하여 최대한 현재의 근해어업실태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와 어업자와의 면담조사는 이루어졌으나 동일업종의 어업자와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분석 자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한 어업실태 조사 자료와 여러 가지 참고자료의 수집·분석 등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통하여 어업경영분석에 이용한 표본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1> 어업별 허가현황(2006년 12월 현재) 및 표본수

어업의 명칭	허가건수	어선척수	표본수 (척)	표본비율	비 고
계	4,246	3,622	1,318	36.39%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47	47	19	40.43%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44	88	34	38.64%	17건
동해구기선저인망	42	42	13	30.95%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	45	44	30	68.18%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	9	22	4	18.18%	
대형트롤어업	58	58	17	29.31%	
동해구트롤	39	38	15	39.47%	
대형선망	32	191	132	69.11%	24건
소형선망	52	105	24	22.86%	11건
근해채낚기	985	679	68	10.01%	
기선권현망	83	469	186	39.66%	35건
근해자망	912	464	213	45.91%	

어업의 명칭	허가건수	어선척수	표본수 (척)	표본비율	비 고
근해안강망	274	266	141	53.01%	
근해봉수망	67	9	2	22.22%	
자리돔들망	11	-			
잠수기	236	236	179	75.85%	
장어통발	84	83	10	12.05%	
기타통발	277	145	56	38.62%	
문어단지	60	22	3	13.64%	
패류형망	136	119	15	12.61%	
근해연승	753	495	157	31.72%	

나. 평년수익액 산출

1) 평균연간어획금액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4의 'Ⅱ.1.가'에서 평균연간어획량은 ① 3년 이상의 어획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77조(자원의 조사·보고) 제1항에 의거하여 보고된 어획실적·양륙량 또는 판매실적(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자가 보고된 실적이상의 어획실적이 있었음을 증빙서류로 입증한 경우에는 그 입증된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최근 3년간의 평균어획량으로 하되, 최근 3년간의 어획량은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前)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소급·기산한 3년간(소급·기산한 3년 동안 일시적인 해양환경의 변화로 연평균어획실적의 변동폭이 전년도에 비하여 1.5배 이상이 되거나 휴업·어장정비 등으로 어획실적이 없어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의 평균어획량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만큼 소급·기산한 3년간을 말한다)의 어획량을 평균한 어획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어획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근 하는 동일규모의 동종어업의 어획량을 기초로 어획실적이 없는 기간의 평균연간어획량을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또한 별표4의 'Ⅲ'은 「수산업법」 제30조에 의한 휴업, 태풍피해복구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어획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는 어획량을 산출하지 않고, 허가에 소요된 인지세, 등록세 등 제반 경비와 어선·어구의 감정가격만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연간어획금액은 평균연간어획량에 평균연간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본 조사에서는 어획실적을 어획량으로 산출하지 않고 어업실태조사 자료와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수집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계통판매실적자료 중에서 최소한 2년 이상의 실적이 있으면서 전년도와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해당어업자의 실적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통계자료를 통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업종

별·연도별 계통판매와 비계통판매의 비율을 수집하여 정리한 계통판매실적자료에 비계통판매 비율만큼 보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평균연간어획금액으로 산출하였으며 근해어선어업의 감척전례에 대해 분석한 자료의 어업자별 평균연간어획금액도 함께 활용하였다.

가격시점에서의 연도별 어획금액을 생산자물가지수 중 선어 및 조개류부문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평가시점에서의 어획금액으로 보정한 후 평균연간어획금액을 산정하였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 중 선어 및 조개류의 물가지수를 기초로 산출한 연도별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별책] 표 2> 생산자물가지수 연도별 보정계수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생산자물가지수	102.0	112.9	111.3	124.0	116.6	115.5
보정계수(%)	113.2	102.3	103.8	93.1	99.1	1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www.bok.or.kr/index.jsp>, <http://ecos.bok.or.kr/>

※보정계수 = 2006년도 생산자물가지수 ÷ 당해년도 생산자물가지수

2) 평년어업경비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에 의해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 기산한 해당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조사된 업종별 어선별 평균연간어획금액에 대한 평년어업경비는 각 어선별로 전 어업자에 대하여 각각 산정하여야 하나 모든 어업자를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표본 조사대상 어업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어업자를 대상으로 한 평년어업경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준한 업종별 평년어업경비와 기 보상평가 된 전례자료에 의한 평년어업경비를 비교·분석하여 허가업종별·경비항목별 표준어업경비율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가격시점에서의 연도별 어획금액에서 차지하는 경비항목별 경비율에 2006년을 기준년도로 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보정한 경비항목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평가시점에서의 평년어업경비를 산출하였으며, 보정에 사용한 소비자물가지수는 다음과 같다.

<[별책] 표 3> 소비자물가지수 연도별 보정계수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소비자물가지수	88.317	90.757	93.946	97.32	100	102.2
보정계수	115.7	112.6	108.8	105.0	102.2	1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www.bok.or.kr/index.jsp>, <http://ecos.bok.or.kr/>

※보정계수 = 2006년도 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당해년도 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

3) 평년수익액

평균연간어획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하여 평년수익액을 산출하였다.

다. 참고자료 분석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표본조사를 통한 어업실태조사가 미비한 부분은 연근해어업총조사, 어업경영조사보고, 이전의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감척전례 등의 자료를 인용, 비교·분석하여 보완하였다.

라. 평년수익액 분석

어업실태조사 및 감척전례자료 등에 의해 산출된 평년수익액 자료를 기초로 업종간, 어선규모간의 상관관계 및 평년수익액 예측을 위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제3절 어업실태분석

1. 지역별·업종별 허가건수 및 어선척수 현황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및 각 광역시·도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한 지역별, 업종별 허가처분현황, 어선척수는 아래와 같다.

<[별책] 표 4> 지역별·업종별 허가현황(2006.12월말 기준)

(단위 : 건)

어업의 명칭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246	367	277	101	30	520	328	150	553	815	677	428
외끌이대형 기선저인망어업	47	22	-	-	-	-	-	-	16	-	9	-

쌍끌이대형 기선저인망어업	44	30	5	-	-	-	-	-	2	-	7	-
동해구 기선저인망	42	-	-	-	-	18	-	-	-	24	-	-
외끌이 서남해구기저	45	8	-	11	-	-	-	-	17	-	9	-
쌍끌이 서남해구기저	9	-	-	-	-	-	-	-	1	-	8	-
대형트롤어업	58	53	-	-	-	-	-	-	-	-	5	-
동해구트롤 어업	39	1	-	-	-	7	-	-	-	31	-	-
대형선망어업	32	30	-	-	-	-	-	-	-	1	1	-
소형선망어업	52	1	1	-	-	4	4	6	5	16	14	1
근해채낚기 어업	985	107	31	38	1	228	17	14	34	359	89	67
기선권현망 어업	83	1	-	-	-	-	-	-	16	-	66	-
근해자망 어업	912	38	82	33	4	145	53	23	166	211	73	84
근해안강망 어업	274	1	34	1	4	-	110	22	101	-	1	-
근해봉수망 어업	67	4	-	1	-	4	-	2	6	29	7	14
자리돔들망 어업	11	-	-	-	-	-	-	-	-	-	-	11
잠수기어업	236	5	11	-	4	7	14	8	52	11	124	-
장어통발어업	84	7	-	-	-	-	2	-	-	-	75	-
기타통발어업	277	7	28	4	5	43	26	1	22	82	58	1
문어단지어업	60	2	4	-	-	1	1	1	22	4	5	20
패류형망어업	136	-	34	-	12	-	57	33	-	-	-	-
근해연승어업	753	50	47	13	-	63	44	40	93	47	126	230

<[별책] 표 5> 지역별·업종별 허가어선척수(2006.12월말 기준
(단위 : 척)

어업의명칭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622	465	197	64	26	275	210	124	604	457	897	303
외끌이대형 기선저인망어업	47	22	-	-	-	-	-	-	16	-	9	-
쌍끌이대형 기선저인망어업	88	60	10	-	-	-	-	-	4	-	14	-
동해구 기선저인망	42	-	-	-	-	18	-	-	-	24	-	-

외끌이 서남해구기저	44	7	-	11	-	-	-	-	17	-	9	-
쌍끌이 서남해구기저	18	-	-	-	-	-	-	-	2	-	16	-
대형트롤어업	58	53	-	-	-	-	-	-	-	-	5	-
동해구트롤어업	39	1	-	-	-	7	-	-	-	31	-	-
대형선망어업	191	180	-	-	-	-	-	-	-	6	5	-
소형선망어업	105	3	2	-	-	8	2	2	5	45	33	5
근해채낚기어업	679	61	9	32	1	201	4	7	34	258	54	18
기선권현망어업	471	4	-	-	-	-	-	-	116	-	351	-
근해자망어업	464	6	70	15	2	6	14	22	166	57	51	55
근해안강망어업	266	1	35	-	4	-	106	22	98	-	-	-
근해봉수망어업	9	2	-	-	-	-	-	1	6	-	-	-
자리돔들망어업	-	-	-	-	-	-	-	-	-	-	-	-
잠수기어업	236	5	11	-	4	7	14	8	52	11	124	-
장어통발어업	83	6	-	-	-	-	2	-	-	-	75	-
기타통발어업	145	5	9	2	3	23	11	-	22	23	47	-
문어단지어업	22	-	1	-	-	-	-	1	15	-	2	3
패류형망어업	120	-	33	-	12	-	42	33	-	-	-	-
근해연승어업	495	49	17	4	-	5	15	28	51	2	102	222

<[별책] 표 6> 업종별, 선질별, 선령별 어선척수(2006.12월말 기준)
(단위 : 척)

어업의명칭	선질	계	5년 미만	5 ~10년	10 ~15년	15 ~20년	20 ~25년	25 ~30년	30 ~35년	35년 이상
계		3622	338	761	934	574	538	208	120	149
외끌이대형 기선저인망어업	강선	27	1		1		4	4		17
	FRP	20	2	4	7	7				
쌍끌이대형 기선저인망어업	강선	86	7	6	27	28	8	4		6
	FRP	2			1	1				
동해구 기선저인망어업	강선	36		1	1	2	7	10		15
	목선	1	1							
	FRP	5	1		1	2	1			
외끌이서남해구 기선저인망어업	강선	18	1				2	11		4
	목선	1					1			
	FRP	25	1		6	17	1			
쌍끌이서남해구 기선저인망어업	강선	14	10				1	2		1
	목선	2				2				
	FRP	2			1	1				
대형트롤어업	강선	58		2	32	18	4	1		1

동해구트롤어업	강선	33	6	5	1	1	11	6	1	2
	목선									
	FRP	6	2	2	2					
대형선망어업	강선	190 (32)	2	3	13 (2)	40 (9)	68 (17)	22 (4)	19	23
	FRP	1					1			
소형선망어업	강선	17			2	1	6	2	4	2
	목선	25		4	5	5	4	5	2	
	FRP	63	20	28	10	2	3			
어업의명칭	선질	계	5년 미만	5 ~10년	10 ~15년	15 ~20년	20 ~25년	25 ~30년	30 ~35년	35년 이상
근해채낚기어업	강선	109	3	6	10	13	27	34	10	6
	목선	46	1	3	4	16	14	4	3	1
	FRP	523	55	132	230	79	22	4		1
	기타선	1	1							
기선권현망어업	강선	409 (163)	12 (12)	20 (2)	37 (33)	82 (56)	180 (50)	33 (9)	23	22 (1)
	목선	21 (1)			2 (1)	10	4	1	1	3
	FRP	40 (4)	10 (3)	18	9 (1)		2	1		
	기타선	1					1			
근해자망어업	강선	122	2	20	34	12	21	11	15	7
	목선	61		1	11	24	11	6	3	5
	FRP	278	71	98	83	19	5	2		
	기타선	3	1			1	1			
근해안강망어업	강선	158	4	4	46	20	42	16	18	8
	목선	16			5	3	5	1	1	1
	FRP	92	11	42	34	5				
근해봉수망어업	강선	3		2	1					
	목선	1				1				
	FRP	5	1	2	1		1			
잠수기어업	목선	13			1	2	7			3
	FRP	222	26	100	89	6	1			
	기타선	1	1							
장어통발어업	강선	3			1			1	1	
	목선	11			2	5	2	1	1	
	FRP	69	4	42	23					
어업의명칭	선질	계	5년 미만	5 ~10년	10 ~15년	15 ~20년	20 ~25년	25 ~30년	30 ~35년	35년 이상
기타통발어업	강선	69		10	34	6	1	9	1	8
	목선	20		1	1	8	8	2		
	FRP	56	12	9	23	10	2			
문어단지어업	강선	8		1	3	2		1		1
	목선	6			2	1	2		1	
	FRP	8	1	1	4	2				
패류형망어업	강선	1					1			
	목선	32	2	4	2	18	3	1	1	1
	FRP	87	26	32	16	11	1	1		

근해연승어업	강선	30		1	3	3	3	5	11	4
	목선	115		1	18	52	28	5	4	7
	FRP	349	42	156	95	34	21	1		
	기타선	1						1		

주: ()속의 숫자는 본선 톤수의 척수임

2. 근해어업의 평년수익액

가.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1) 어업실태

가) 조업형태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은 총톤수가 신톤수 60톤(구톤수 80톤)이상~신톤수 140톤(구톤수 170톤)미만의 동력선으로 저층에 서식하는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을 주 대상으로 어선 1척이 양측에 날개그물이 달린 자루그물을 투망한 다음 후릿줄로 대상 생물을 그물 속에 몰아넣어 잡는 것이다.

어구의 형태는 쌍끌이 기선저인망이나 저층트롤망과 유사하지만 어획방법이 다르다. 즉, 예망 중 그물 입구가 오므라들지 않도록 배 2척이 한 통의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쌍끌이 기선저인망이나 날개그물 앞 쪽에 전개판을 부착하여 조업하는 저층트롤은 원하는 거리만큼 그물을 끌고 갈 수 있지만, 외끌이 기선저인망은 투망 시 후릿줄과 끌줄을 삼각형 또는 마름모꼴로 투하한 다음 끌줄을 끌어 끌줄과 후릿줄이 오므라들면서 어군을 그물 속으로 몰아넣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물은 거의 이동하지 않으며, 끌줄과 후릿줄에 의해 포위된 어군만 어획이 가능하다. 따라서 끌줄과 후릿줄이 어획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어군의 포위면적을 크게 하기 위하여 쌍끌이 기선저인망이나 저층트롤보다 훨씬 길게 사용한다. 또한 어군을 효과적으로 그물 속으로 몰아넣기 위하여 끌줄과 후릿줄이 어군보다 빨리 오므라들지 않도록 후릿줄에 작은 체인을, 후릿줄과 끌줄 사이에 큰 체인을 달아 사용하며, 갑판에 잘 사려지는 굵은 섬유로프나 컴파운드 로프를 주로 사용한다. 투망 전에 그물을 좌현 갑판에 이동시켜 정리하고, 좌현 끌줄과 후릿줄은 끌줄 끝이 위로 오도록 하여 좌현 갑판에, 우현 끌줄과 후릿줄은 그물에 연결된 후릿줄 끝이 위로 오도록 우현 갑판에 각각 정리한다. 투망준비가 완료되면 예망 예정 방향에 대해 좌현 쪽으로 약 150도 정도의 방향으로 배를 전속 전진하면서 좌현 끌줄 끝에 있는 부표부터 투하한다. 좌현 끌줄이 모두 나가고 후릿줄과 연결된 부분에서 큰 체인이 나오면 선수를 우현 쪽으로 약 90도 정도 돌려 후릿줄을 투하한다. 후릿줄이 거의 투하되면 기관을 정지시키고 타력으로 전진하면서 좌현 날개그물, 자루그물, 우현 날개그물의 순으로 투망한 다음 다시 선수를 우현 쪽으로 약 30도 정도 돌려 우현 후릿줄을 투하한다. 우현 쪽 큰 체인이 투하되면 선수를 우현 쪽으로 약 90도 정도 돌려 처음 투하한 부표를 향하여 우현 끌줄을 투하한다. 투망이 모두 끝나면 좌우 끌줄의

끝을 선미 비트에 걸고 그물이 완전히 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대기하였다가 예망을 한다. 예망 중 좌우 끝줄이 거의 나란해지면 약 10~15분간 전속으로 예망하여 자루그물 입구 측에 있는 어군을 끝자루로 몰아넣음과 동시에 입구가 거의 오므라들도록 한다. 양망은 선수가 그물 쪽을 향하도록 180도로 배를 돌리면서 끝줄 끝을 선수 양쪽 롤러를 통과시켜 양망 드럼으로 가져 온 다음 끝줄과 후릿줄을 차례로 감아올린다. 날개그물 앞에 있는 갯대가 선수 롤러에 오면 배를 우현 쪽으로 돌리면서 그물을 좌현 쪽으로 가져와 데릭으로 달아 올린다. 과거에는 끝줄과 후릿줄을 사이드드럼으로 감아올리면서 사람이 갑판에다 사렸으나 현재에는 유압식 양승기를 이용하여 양승은 물론 갑판에 자동적으로 사려지도록 되어 있다.

나) 지역별 조업실태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은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 59분 52.21초(동경측지계 : 동경 128도)선의 교점·북위 33도 20분 11.80초 동경 127도 59분 52.25초(동경측지계 : 북위 33도 20분 동경 128도)의 교점 및 북위 33도 30분 11.77초 동경 129도 49분 51.68초(동경측지계 : 북위 33도 30분 동경 129도 50분)의 교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로 조업구역의 제한이 있다. 주로 남해안 지역에 허가를 득하여 거의 연중 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신탄수 60톤미만의 어선들이 당해허가를 가지고 조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선보다는 조업하는 어선의 규모가 크지만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및 대형트롤과 비교하면 조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규모가 작은 편이며, 주조업구역은 제주근해이며 일부지역에서는 약간의 변형된 형태로 조업을 하기도 하였다. 조업어장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근해자망 및 근해통발어업처럼 어구를 일정 지역에 정치하여 조업활동을 하는 어업과 조업과정에서 약간을 마찰을 빚기도 한다. 주로 조기, 갈치, 아귀 등 잡어를 포획하며 포획한 어획물은 빙장 또는 냉장상태로 보관하여 수협을 통한 위탁판매를 하고 있었다.

2) 평균연간어획금액

평균연간어획금액의 산출방법에 의해 산정하였다.

<[별책] 표 7>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균연간 어획금액	582,978	943,618	694,008

3) 평년어업경비

가) 평년어업경비 산출기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4의 ‘Ⅱ.1.다’에서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 기산한 해당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년어업경비의 항목을 생산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기타잡비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경비항목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을 분류하였다.

이들 세부항목 중 근해어업에 필요한 경비항목은 표와 같다.

<[별책] 표 8> 근해어선어업의 어업경비 항목

구 분	경 비 항 목
1. 생산관리비	(1)미끼구입비 (2)유지보수비 (3)연료 및 유류비 (4)어구비 (5)소모품비 (6)어장막관리비 (7)운반비
2. 인 건 비	(1)어업자 본인의 인건비 (2)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
3. 감가상각비	(1)시설물 (2)어선 또는 관리선(선체, 기관 및 의장품 등 포함), (3)어구 (4)기타 장비·도구
4. 판매관리비	(1)보관비 (2)용기대 (3)판매수수료 (4)판매잡비(운반·포장·하역비 등) (5)가공비
5. 기타잡비	(1)제세공과금 (2)주부식비 (3)복리후생비 (4)보험료 및 공제료 (5)사무비 (6)기타

(1) 생산관리비

(가)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 내용년수 1년이상인 어구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48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연료 및 유류비

연료비는 선박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주연료비로 경유와 윤활유가 있다)와 취사 및 난방용 유류구입비(기타 연료비로 주로 LPG를 사용한다)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2266을 적용하였다.

(다) 어구비

어구비는 당해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로서 어망, 로프, 부자, 침자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94를 적용하였다.

(라)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1)항의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모품에 대한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1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2) 인건비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와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로 나누어지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379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에 대하여 신규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게 산출되도록 정액법을 사용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55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4) 판매관리비

(가) 보관비

보관비는 어획물의 저장 또는 미끼보관을 위해 소요되는 물적 요소에 대한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73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용기대

용기대는 어획물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획물 판매시 회수되지 않는 어획물용기(목상자, 골판지상자, 스티로폼상자, PVC상자 등)와 어획물 포장에 소요되는 비닐종이 및 비닐끈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40을 적용하였다.

(다)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어획물을 수협 위판장을 통하여 계통판매할 때 발생하는 위탁판매 수수료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392를 적용하였다.

(라) 판매잡비

판매잡비는 주로 하역비나 진열비 등을 포함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1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5) 기타잡비

(가)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은 어선에 대한 재산세, 선박검사료, 어선입출항 수속비 조합비, 항만수수료, 청항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07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나) 주부식비

주부식비는 승선원들의 선내 식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식비와 부식비 및 식수대 등이 포함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6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근해어업의 경우 의료비(선내비치 약품비 및 방제소독비), 의료보험료(선주 부담분), 작업복비, 기호용품(술, 담배) 구입비, 선내오락용품(서적, 비디오테이프, 장기, 바둑, 화투) 구입비, 회식비, 숙박비, 자녀학자금 지원비 등 다양한 비용이 지출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01을 적용하였다.

(라) 보험료 및 공제료

보험료 및 공제료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83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마) 사무비

사무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무용 소모품비, 사무원급료, 사무실임대료 및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세무장부 기장비, 인쇄비, 기타 사용경비가 포함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35를 적용하였다.

(바) 기타비용

이상에서 산출되지 않은 기타 어업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1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평년어업경비

이상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어업경비항목별 경비율 및 평년어업경율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9>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어업경비항목	경비율
I. 생산관리비	
1. 유지보수비	0.0248
2. 연료및유류비	0.2266
3. 소모품비	0.0111
4. 미끼비	-
5. 어구비	0.0194
6. 어장막관리비	-
7. 운반비	-
II. 인건비	0.3799
III. 감가상각비	0.0555
IV. 판매관리비	
1. 가공비	-
2. 보관비	0.0073
3. 용기대	0.0140
4. 판매수수료	0.0392
5. 판매잡비	0.0111
V. 기타잡비	
1. 체세공과금	0.0007
2. 주부식비	0.0161
3. 복리후생비	0.0101
4. 보험료및공제료	0.0183
5. 사무비	0.0035
6. 기타비용	0.0111
평년어업경비율	0.8485

4) 평년수익액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 Ⅱ.1에서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하여 평년수익액을 산정하였다.

<[별책] 표 10>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평년수익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년수익액	88,307	142,927	105,121

나.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1) 어업실태

가) 조업형태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은 총톤수가 신통수 60톤(구톤수 80톤)이상~신통수 140톤(구톤수 170톤)미만의 동력선 2척으로 저인망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고 있으며, 자루그물의 구성은 등판, 밀판, 옆판으로 되어 있으며 옆판의 앞쪽에 날개그물이 있다. 이 중 옆판과 날개그물의 폭은 그물입구의 상하 전개거리 즉, 망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가자미, 넙치 등과 같이 바다에 거의 붙어 서식하는 어종을 주 대상으로 할 때는 폭이 좁은 어구를 사용하고 갈치, 쥐치 등과 같이 바닥으로부터 다소 떨어져 서식하는 어종을 주 대상으로 할 때는 폭이 넓은 어구를 사용한다.

날개그물 앞쪽에는 그물목줄과 갯대를 부착하여 날개그물이 잘 벌어지도록 하고 그 앞에 후릿줄과 끌줄을 연결한다. 후릿줄은 어군을 위협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므로 가급적 직경이 굵은 컴파운드 로프를 사용하며, 끌줄은 장력이 큰 와이어로프를 사용한다.

어구규모는 어선의 예망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급적 그물코가 크고 실의 굵기가 가는 것을 사용하여 유체저항을 줄임으로써 어구의 규모를 크게 하고 있다.

조업방법은 어선 2척의 업무분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물과 한쪽 후릿줄 및 끌줄을 투·양망하는 그물배 즉, 주선과 다른 한쪽 후릿줄 및 끌줄을 투·양망하는 보조선 즉, 종선으로 구분하여 조업하며 업무를 교대로 수행하기도 한다.

투망은 주선이 바람이나 해·조류를 가급적 선미에서 받으면서 등심선을 따라 자루그물, 날개그물 순으로 투망한 다음, 그물목줄 끝에 있는 갯대를 스톱퍼로 걸어 미

속으로 전진하면서 그물의 전개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종선은 주선의 우현에 접근하여 자기 배에 있는 한쪽 후릿줄의 끝을 주선에 넘겨주어 갯대에 연결하도록 한다. 후릿줄 연결이 끝나면 주선과 종선은 V또는 U자형으로 전속으로 전진하면서 후릿줄과 끌줄을 투승하며, 투승이 완료되면 일정한 거리 즉, 어구의 규모와 후릿줄, 끌줄의 길이에 따라 400~600m 내외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임의시간 동안 예망한다. 예망이 완료되면 양선은 다시 접근하기 시작하여 두 배가 거의 접근이 되면 그물을 빨리 오므려 자루그물에 들어간 어군이 되돌아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 5~10분 동안 전속으로 예망한 다음 종선에서 끌줄 끝에 연락줄을 연결하여 주선으로 넘겨준다. 연락줄을 넘겨받은 주선은 원치나 사이드드럼으로 끌줄, 후릿줄을 감아올리며, 갯대가 원치까지 올라오면 스톱퍼로 그물을 고정시키고 양망줄을 걸어 자루그물을 갑판으로 끌어올린다. 이때 종선은 다음 투망을 위하여 어군 탐색 활동을 하고 주선은 투망준비를 한다.

나) 지역별 어업실태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은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과 달리 2척의 동력선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며, 조업구역은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 59분 52.21초(동경측지계 : 동경 128도)선의 교점·북위 33도 20분 11.80초 동경 127도 59분 52.25초(동경측지계 : 북위 33도 20분 동경 128도)의 교점 및 북위 33도 30분 11.77초 동경 129도 49분 51.68초(동경측지계 : 북위 33도 30분 동경 129도 50분)의 교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로 조업구역의 제한이 있다. 주로 서해안의 인천지역과 남해안 지역에서 허가를 득하여 연중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어선규모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조업형태는 유사하였다. 조업은 주로 제주근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업어장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근해자망 및 근해통발, 근해안강망어업처럼 어구를 일정 지역에 투하·정치시켜 어획하는 어업과 조업과정에서 약간을 마찰을 빚기도 한다. 주로 조기, 갈치, 삼치, 병어 등을 포획하며, 포획한 어획물은 빙장 또는 냉동상태로 보관하여 주로 수협위판을 통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

2) 평균연간어획금액

평균연간어획금액의 산출방법에 의해 산정하였다.

<[별책] 표 11>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균연간 어획금액	1,689,058	3,235,116	2,767,200

3) 평년어업경비

가) 평년어업경비 산출기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4의 'Ⅱ.1.다'에서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 기산한 해당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년어업경비의 항목을 생산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기타잡비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경비항목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을 분류하였다.

(1) 생산관리비

(가)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 어구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41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연료 및 유류비

연료비는 선박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주연료비로 경유와 윤활유가 있다)와 취사 및 난방용 유류구입비(기타 연료비로 주로 LPG를 사용한다)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2850을 적용하였다.

(다)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1)항의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모품에 대한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16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라) 운반비

운반비는 어획물 판매를 위한 운반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88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2) 인건비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와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로 나누어지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278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에 대하여 신규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게 산출되도록 정액법을 사용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87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4) 판매관리비

(가) 보관비

보관비는 어획물의 저장 또는 미끼보관을 위해 소요되는 물적 요소에 대한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5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용기대

용기대는 어획물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획물 판매시 회수되지 않는 어획물용기(목상자, 골판지상자, 스티로폴상자, PVC상자 등)와 어획물 포장에 소요되는 비닐종이 및 비닐끈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32를 적용하였다.

(다)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어획물을 수협 위판장을 통하여 계통판매할 때 발생하는 위탁판매 수수료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454를 적용하였다.

(라) 판매잡비

판매잡비는 주로 하역비나 진열비 등을 포함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9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5) 기타잡비

(가)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은 어선에 대한 재산세, 선박검사료, 어선입출항 수속비 조합비, 항만수수료, 청항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16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나) 주부식비

주부식비는 승선원들의 선내 식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식비와 부식비 및 식수대 등이 포함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3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근해어업의 경우 의료비(선내비치 약품비 및 방제소독비), 의료보험료(선주 부담분), 작업복비, 기호용품(술, 담배) 구입비, 선내오락용품(서적, 비디오테이프, 장기, 바둑, 화투) 구입비, 회식비, 숙박비, 자녀학자금 지원비 등 다양한 비용이 지출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38을 적용하였다.

(라) 보험료 및 공제료

보험료 및 공제료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426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마) 사무비

사무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무용 소모품비, 사무원급료, 사무실임대료 및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세무장부 기장비, 인쇄비, 기타 사용경비가 포함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4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바) 기타비용

이상에서 산출되지 않은 기타 어업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3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평년어업경비

이상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어업경비항목별 경비율 및 평년어업경율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12>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어업경비항목	경비율
I. 생산관리비	
1.유지보수비	0.0414
2.연료및유류비	0.2850
3.소모품비	0.0116
4.미끼비	-
5.어구비	0.0179
6.어장막관리비	-
7.운반비	0.0088
II. 인건비	0.2780
III. 감가상각비	0.0875
IV. 판매관리비	
1.가공비	-
2.보관비	0.0150
3.용기대	0.0132
4.판매수수료	0.0454
5.판매잡비	0.0090
V. 기타잡비	
1.제세공과금	0.0016
2.주부식비	0.0232
3.복리후생비	0.0138
4.보험료및공제료	0.0426
5.사무비	0.0049
6.기타비용	0.0139
평년어업경비율	0.9128

4) 평년수익액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 II.1에서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하여 평년수익액을 산정하였다.

<[별책] 표 13>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평년수익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년수익액	147,293	282,109	241,308

다. 동해구기선저인망

1) 어업실태

가) 조업형태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은 총톤수가 신통수 20톤(구톤수 20톤)이상~60톤(구톤수 80톤) 미만인 동력선에 의하여 주머니 모양으로 된 어구를 수평방향으로 임의시간동안 끌어 대상생물을 잡는 것으로 다른 어법에 비하여 적극적인 어법 중 하나이며 어로장비, 어군탐색장비 등이 매우 발달된 어업이다.

나) 지역별 어업실태

동해구기선저인망은 중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서 조업구역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으로 동해안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주기판의 경우 회전수가 1,200rpm미만은 450마력이하, 회전수가 1,200rpm이상은 550마력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조업활동이 이루어지며 조업방법이나 어선의 규모 등은 비슷하다. 강원지역의 경우 가자미, 도루묵, 새우, 문어, 임연수, 청어 등이며 경상북도 지역은 가자미, 새우, 문어 등으로 나타났다. 조업은 주로 1틀의 저인망을 가지고 조업을 하며 1~2틀 정도의 예비어망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구의 유실이나 파손시 교체하며 원활한 조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자망어업 또는 통발어업과 조업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을 빚기도 한다. 포획한 어획물은 주로 빙장상태로 보관하여 수협위판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2) 평균연간어획금액의 산출

평균연간어획금액의 산출방법에 의해 산정하였다.

<[별책] 표 14>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균연간 어획금액	152,923	652,236	388,634

3) 평년어업경비

가) 평년어업경비 산출기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4의 'Ⅱ.1.다'에서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 기산한 해당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년어업경비의 항목을 생산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기타잡비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경비항목에 포

합되는 세부항목을 분류하였다.

(1) 생산관리비

(가)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 어구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348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연료 및 유류비

연료비는 선박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주연료비로 경유와 윤활유가 있다)와 취사 및 난방용 유류구입비(기타 연료비로 주로 LPG를 사용한다)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890을 적용하였다.

(2) 인건비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와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로 나누어지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384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에 대하여 신규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게 산출되도록 정액법을 사용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56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4) 판매관리비

(가) 보관비

보관비는 어획물의 저장 또는 미끼보관을 위해 소요되는 물적 요소에 대한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5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용기대

용기대는 어획물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획물 판매시 회수되지 않는 어획물용기(목상자, 골판지상자, 스티로폼상자, PVC상자 등)와 어획물 포장에 소요되는 비닐종이 및 비닐끈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54를 적용하였다.

(다)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어획물을 수협 위판장을 통하여 계통판매할 때 발생하는 위탁판매 수수료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490을 적용하였다.

(라) 판매잡비

판매잡비는 주로 하역비나 진열비 등을 포함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0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5) 기타잡비

(가)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은 어선에 대한 재산세, 선박검사료, 어선입출항 수속비 조합비, 항만수수료, 청항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05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나) 주부식비

주부식비는 승선원들의 선내 식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식비와 부식비 및 식수대 등이 포함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53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근해어업의 경우 의료비(선내비치 약품비 및 방제소독비), 의료보험료(선주 부담분), 작업복비, 기호용품(술, 담배) 구입비, 선내오락용품(서적, 비디오테이프, 장기, 바둑, 화투) 구입비, 화식비, 숙박비, 자녀학자금 지원비 등 다양한 비용이 지출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25를 적용하였다.

(라) 보험료 및 공제료

보험료 및 공제료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03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마) 사무비

사무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무용 소모품비, 사무원급료, 사무실임대료 및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세무장부 기장비, 인쇄비, 기타 사용경비가 포함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27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바) 기타비용

이상에서 산출되지 않은 기타 어업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0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평년어업경비

이상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어업경비항목별 경비율 및 평년어업경율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15>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어업경비항목	경비율
I. 생산관리비	
1. 유지보수비	0.0348
2. 연료및유류비	0.0890
3. 소모품비	-
4. 미끼비	-
5. 어구비	-
6. 어장막관리비	-
7. 운반비	-
II. 인건비	0.3841
III. 감가상각비	0.0565

어업경비항목	경비율
IV.판매관리비	
1.가공비	-
2.보관비	0.0054
3.용기대	0.0054
4.판매수수료	0.0490
5.판매잡비	0.0109
V.기타잡비	
1.제세공과금	0.0005
2.주부식비	0.0153
3.복리후생비	0.0125
4.보험료및공제료	0.0203
5.사무비	0.0027
6.기타비용	0.0109
평년어업경비율	0.6973

4) 평년수익액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 II.1에서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하여 평년수익액을 산정하였다.

<[별책] 표 16>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평년수익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년수익액	46,298	197,437	117,646

라. 외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

1) 어업실태

가) 조업형태

외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은 총톤수가 신통수 20톤(구톤수 20톤)이상~60톤(구톤수 80톤) 미만인 동력선에 의하여 주머니 모양으로 된 어구를 수평방향으로 임의시간동안 끌어 대상생물을 잡는 것으로 다른 어법에 비하여 적극적인 어법으로 매우 중요한 어업 중 하나이다.

나) 지역별 어업실태

외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은 중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서 조업구역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와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과 이서의 해역으

로 한정되어 있으며, 주기관의 경우 회전수가 1,200rpm미만은 450마력이하, 회전수가 1,200rpm이상은 550마력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50톤 미만의 어선들은 FRP로 건조된 어선들을 이용하며, 50톤 이상의 어선들은 강재로 건조된 어선으로 1틀의 저인망을 가지고 조업을 하며 1~2틀 정도의 예비어망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구의 유실이나 파손시 교체하며 조업을 원활히 하고 있으나, 자망어업 또는 통발어업과 조업과정에서 약간을 마찰을 빚기도 한다. 어획어종은 지역에 따라서 가자미, 민어, 새우 등이며 포획한 어획물은 활어 또는 빙장상태로 보관하여 수협위판을 통한 판매 또는 사매매를 하고 있었다.

2) 평균연간어획금액

평균연간어획금액의 산출방법에 의해 산정된 어선규모별 평균연간어획금액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17> 외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균연간어획금액	577,675	921,363	767,557

3) 평년어업경비

가) 평년어업경비 산출기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4의 'Ⅱ.1.다'에서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 기산한 해당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년어업경비의 항목을 생산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기타잡비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경비항목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을 분류하였다.

(1) 생산관리비

(가)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 어구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30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연료 및 유류비

연료비는 선박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주연료비로 경유와 윤활유가 있다)와 취사 및 난방용 유류구입비(기타 연료비로 주로 LPG를 사용한다)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1654를 적용하였다.

(다) 어구비

어구비는 당해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로서 어망, 로프, 부자, 침자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00을 적용하였다.

(라)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1)항의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모품에 대한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43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2) 인건비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와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 나누어지나,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305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에 대하여 신규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게 산출되도록 정액법을 사용하여야 하나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64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4) 판매관리비

(가) 보관비

보관비는 어획물의 저장 또는 미끼보관을 위해 소요되는 물적 요소에 대한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4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용기대

용기대는 어획물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획물 판매시 회수되지 않는 어획물용기(목상자, 골판지상자, 스티로폴상자, PVC상자 등)와 어획물 포장에 소요되는 비닐종이 및 비닐끈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66을 적용하였다.

(다)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어획물을 수협 위판장을 통하여 계통판매할 때 발생하는 위탁판매 수수료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450을 적용하였다.

(라) 판매잡비

판매잡비는 주로 하역비나 진열비 등을 포함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0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5) 기타잡비

(가)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은 어선에 대한 재산세, 선박검사료, 어선입출항 수속비 조합비, 항만수수료, 청항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14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나) 주부식비

주부식비는 승선원들의 선내 식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식비와 부식비 및 식수대 등이 포함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8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근해어업의 경우 의료비(선내비치 약품비 및 방제소독비), 의료보험료(선주 부담분), 작업복비, 기호용품(술, 담배) 구입비, 선내오락용품(서적, 비디오테이프, 장기, 바둑, 화투) 구입비, 회식비, 숙박비, 자녀학자금 지원비 등 다양한 비용이 지출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09를 적용하였다.

(라) 보험료 및 공제료

보험료 및 공제료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86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마) 사무비

사무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무용 소모품비, 사무원급료, 사무실임대료 및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세무장부 기장비, 인쇄비, 기타 사용경비가 포함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33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바) 기타비용

이상에서 산출되지 않은 기타 어업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0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평년어업경비

이상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어업경비항목별 경비율 및 평년어업경율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18> 외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어업경비항목	경비율
I. 생산관리비	
1.유지보수비	0.0300
2.연료및유류비	0.1654
3.소모품비	0.0431
4.미끼비	
5.어구비	0.0100
6.어장막관리비	
7.운반비	
II. 인건비	0.3055
III. 감가상각비	0.0645
IV. 판매관리비	
1.가공비	
2.보관비	0.0244
3.용기대	0.0166
4.판매수수료	0.0450
5.판매잡비	0.0109

어업경비항목	경비율
V.기타잡비	
1.제세공과금	0.0014
2.주부식비	0.0180
3.복리후생비	0.0109
4.보험료및공제료	0.0086
5.사무비	0.0033
6.기타비용	0.0100
평년어업경비율	0.7676

4) 평년수익액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 II.1에서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하여 평년수익액을 산정하였다.

<[별책] 표 19> 외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평균수익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균연간 어획금액	134,259	214,135	178,389

마. 쌍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

1) 어업실태

가) 조업형태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은 총톤수가 신통수 60톤(구톤수 80톤)이상~신통수 140톤(구톤수 170톤)미만의 동력선 2척으로 저인망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고 있으며, 자루그물의 구성은 등판, 밀판, 옆판으로 되어 있으며 옆판의 앞쪽에 날개그물이 있다. 이 중 옆판과 날개그물의 폭은 그물입구의 상하 전개거리 즉, 망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가자미, 넙치 등과 같이 바닥에 거의 붙어 서식하는 어종을 주 대상으로 할 때는 폭이 좁은 어구(A)를 사용하고 갈치, 쥐치 등과 같이 바닥으로부터 다소 떨어져 서식하는 어종을 주 대상으로 할 때는 폭이 넓은 어구(C)를 사용한다.

날개그물 앞쪽에는 그물목줄과 갯대를 부착하여 날개그물이 잘 벌어지도록 하고 그 앞에 후릿줄과 끌줄을 연결한다. 후릿줄은 어군을 위협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므로 가급적 직경이 굵은 컴파운드 로프를 사용하며, 끌줄은 장력이

큰 와이어로프를 사용한다.

어구규모는 어선의 예망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급적 그물코가 크고 실의 굵기가 가는 것을 사용하여 유체저항을 줄임으로써 어구의 규모를 크게 하고 있다.

조업방법은 어선 2척의 업무분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물과 한쪽 후릿줄 및 끌줄을 투·양망하는 그물배 즉, 주선과 다른 한쪽 후릿줄 및 끌줄을 투·양망하는 보조선 즉, 종선으로 구분하여 조업하며 업무를 교대로 수행하기도 한다.

투망은 주선이 바람이나 해·조류를 가급적 선미에서 받으면서 등심선을 따라 자루 그물, 날개그물 순으로 투망한 다음, 그물목줄 끝에 있는 갯대를 스톱퍼로 걸어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그물의 전개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종선은 주선의 우현에 접근하여 자기 배에 있는 한쪽 후릿줄의 끝을 주선에 넘겨주어 갯대에 연결하도록 한다. 후릿줄 연결이 끝나면 주선과 종선은 V또는 U자형으로 전속으로 전진하면서 후릿줄과 끌줄을 투승하며, 투승이 완료되면 일정한 거리 즉, 어구의 규모와 후릿줄, 끌줄의 길이에 따라 400~600m 내외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임의시간 동안 예망한다. 예망이 완료되면 양선은 다시 접근하기 시작하여 두 배가 거의 접근이 되면 그물을 빨리 오므려 자루그물에 들어간 어군이 되돌아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 5~10분 동안 전속으로 예망한 다음 종선에서 끌줄 끝에 연락줄을 연결하여 주선으로 넘겨준다. 연락줄을 넘겨받은 주선은 윈치나 사이드드럼으로 끌줄, 후릿줄을 감아올리며, 갯대가 윈치까지 올라오면 스톱퍼로 그물을 고정시키고 양망줄을 걸어 자루그물을 갑판으로 끌어올린다. 이때 종선은 다음 투망을 위하여 어군 탐색 활동을 하고 주선은 투망준비를 한다.

나) 지역별 어업실태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은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과 달리 2척의 동력선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며, 조업구역은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 59분 52.21초(동경측지계 : 동경 128도)선의 교점·북위 33도 20분 11.80초 동경 127도 59분 52.25초(동경측지계 : 북위 33도 20분 동경 128도)의 교점 및 북위 33도 30분 11.77초 동경 129도 49분 51.68초(동경측지계 : 북위 33도 30분 동경 129도 50분)의 교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로 조업구역의 제한이 있으며, 주로 서해안 인천지역과 남해안 지역에서 허가를 득하여 거의 연중 조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어선규모 차이는 있으나 조업형태는 유사하며, 조업활동은 주로 제주근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업어장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근해자망 및 근해통발, 근해안강망어업처럼 어구를 일정 지역에 정치하여 조업활동을 하는 어업과 조업과정에서 약간을 마찰을 빚기도 한다. 주로 조기, 갈치, 삼치, 병어 등을 포획하며, 포획한 어획물은 빙장 또는 냉동상태로 보관하여 주로 수협위판을 통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

2) 평균연간어획금액

평균연간어획금액의 산출방법에 의해 산정된 어선규모별 평균연간어획금액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20> 쌍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균연간 어획금액	1,605,042	2,600,000	2,105,521

3) 평년어업경비

가) 평년어업경비 산출기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4의 'Ⅱ.1.다'에서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 기산한 해당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년어업경비의 항목을 생산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기타잡비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경비항목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을 분류하였다.

(1) 생산관리비

(가)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 어구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30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연료 및 유류비

연료비는 선박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주연료비로 경유와 윤활유가 있다)와 취사 및 난방용 유류구입비(기타 연료비로 주로 LPG를 사용한다)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3587을 적용하였다.

(다) 어구비

어구비는 당해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로서 어망, 로프, 부자, 침자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96 적용하였다.

(라)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1)항의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모품에 대한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0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2) 인건비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와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 나누어지나,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263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에 대하여 신규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게 산출되도록 정액법을 사용하여야 하나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35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4) 판매관리비

(가) 보관비

보관비는 어획물의 저장 또는 미끼보관을 위해 소요되는 물적 요소에 대한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9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용기대

용기대는 어획물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획물 판매시 회수되지 않는 어획물용기(목상자, 골판지상자, 스티로폴상자, PVC상자 등)와 어획물 포장에 소요되는 비닐종이 및 비닐끈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97을 적용하였다.

(다)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어획물을 수협 위판장을 통하여 계통판매할 때 발생하는 위탁판매 수수료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450을 적용하였다.

(라) 판매잡비

판매잡비는 주로 하역비나 진열비 등을 포함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35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5) 기타잡비

(가)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은 어선에 대한 재산세, 선박검사료, 어선입출항 수속비 조합비, 항만수수료, 청항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19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나) 주부식비

주부식비는 승선원들의 선내 식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식비와 부식비 및 식수대 등이 포함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3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근해어업의 경우 의료비(선내비치 약품비 및 방제소독비), 의료보험료(선주 부담분), 작업복비, 기호용품(술, 담배) 구입비, 선내오락용품(서적, 비디오테이프, 장기, 바둑, 화투) 구입비, 회식비, 숙박비, 자녀학자금 지원비 등 다양한 비용이 지출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00을 적용하였다.

(라) 보험료 및 공제료

보험료 및 공제료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1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마) 사무비

사무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무용 소모품비, 사무원급료, 사무실임대료 및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세무장부 기장비, 인쇄비, 기타 사용경비가 포함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46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바) 기타비용

이상에서 산출되지 않은 기타 어업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0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평년어업경비

이상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어업경비항목별 경비율 및 평년어업경율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21> 쌍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어업경비항목	경비율
I.생산관리비	
1.유지보수비	0.0300
2.연료및유류비	0.3587
3.소모품비	0.0100
4.미끼비	0.0000
5.어구비	0.0096
6.어장막관리비	0.0000
7.운반비	0.0000
II.인건비	0.2634
III.감가상각비	0.0350
IV.판매관리비	
1.가공비	0.0000
2.보관비	0.0192
3.용기대	0.0097
4.판매수수료	0.0450
5.판매잡비	0.0350
V.기타잡비	
1.제세공과금	0.0019
2.주부식비	0.0231
3.복리후생비	0.0100
4.보험료및공제료	0.0115
5.사무비	0.0046
6.기타비용	0.0200
평년어업경비율	0.8867

4) 평년수익액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 II.1에서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하여 평년수익액을 산정하였으며 지역별, 어선규모별 평년수익액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22> 쌍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평균수익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균연간 어획금액	181,860	294,580,	238,220

바. 대형트롤

1) 어업실태

가) 조업형태

대형트롤어업은 총톤수 신톤수 60톤(구톤수 80톤)이상~신톤수 140톤(구톤수 170톤)미만의 동력선을 이용하여 남·서해 및 동중국해에서 저층트롤망으로 오징어, 갈치, 고등어 등을 잡는 것이다.

과거에는 현측식으로 조업을 하였으며, 가자미나 넙치처럼 바닥에 붙어 서식하는 어종을 주 대상으로 망고가 그다지 크지 않은 어구로 조업을 하였으나, 근년에는 어선 및 어로장비의 현대화로 주로 선미식 조업을 하며, 대상 어종도 바닥에서 다소 떨어져 서식하는 각종 어류로 다양화되어 망고가 큰 어구로 조업을 하고 있다. 투망은 바람이나 해·조류를 가급적 선미에서 받으면서 배를 미속으로 전진시켜 놓고, 선미 슬립웨이를 통하여 자루그물, 날개그물, 후릿줄을 투하한다. 후릿줄까지 투하가 완료되면, 기관을 정지시키고 타력에 의해 전진하면서 선미 깔로우스에 있는 전개판을 연결해 투하한다. 전개판 투하가 완료되면 다시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어구의 전개상태를 확인한 다음 전진하면서 끌줄을 풀어준다. 끌줄의 길이는 수심이 100m 이내인 곳에서는 약 4배 이상, 100m 내외에서는 약 3배, 100m 이상인 곳에서는 2~2.5배로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심에 대한 끌줄 길이의 비를 작게 한다. 끌줄의 투하가 완료되면 등심선을 따라 예망하며, 예망 속도는 대상 어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3노트이며, 1회 예망 소요시간은 2시간 내외이다.

예망 완료 전 약 10분 동안 전속으로 끌어 자루그물 입구에 머물러 있는 어군을 끌자루로 몰아넣은 다음 배를 정선시키고 트롤원치로 끌줄을 감는다. 전개판이 선미 깔로우스에 오면 고리에 걸어 끌줄로부터 분리시키고 계속해서 후릿줄을 감아 날개그물이 원치 앞까지 오도록 한 다음 양망 줄을 걸어 그물을 차례로 갑판에 끌어올린다.

나) 지역별 어업실태

대형트롤어업은 근해트롤어업의 하나로서 동해구트롤어업에 비하여 조업에 이용하는 어선의 규모가 상당히 크며, 조업구역도 동해구트롤어업과 달리 동해, 남해, 서해 등 전국 근해를 조업구역으로 하고 있으나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다른 근해어업과 마찬가지로 조업구역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타어업의 어선들과 어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구파손 등의 사안으로 약간을 마찰을 빚기도 한다. 특히 오징어를 주 어획어종으로 하기 때문에 근해채낚기어업과 상당한 경쟁관계에 있으며 포획한 어획물은 빙장 또는 냉동상태로 보관하여 수협위판 등을 통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

2) 평균연간어획금액

평균연간어획금액의 산출방법에 의해 산정하였다.

<[별책] 표 23> 대형트롤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균연간 어획금액	1,829,813	2,610,723	2,113,326

3) 평년어업경비

가) 평년어업경비 산출기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4의 'Ⅱ.1.다'에서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 기산한 해당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년어업경비의 항목을 생산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기타잡비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경비항목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을 분류하였다.

(1) 생산관리비

(가)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 어구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72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연료 및 유류비

연료비는 선박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주연료비로 경유와 윤활유가 있다)와 취사 및 난방용 유류구입비(기타 연료비로 주로 LPG를 사용한다)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2507을 적용하였다.

(다)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1)항의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모품에 대한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1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2) 인건비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와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로 나누어지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293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에 대하여 신규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게 산출되도록 정액법을 사용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62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4) 판매관리비

(가) 보관비

보관비는 어획물의 저장 또는 미끼보관을 위해 소요되는 물적 요소에 대한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0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용기대

용기대는 어획물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획물 판매시 회수되지 않는 어획물용기(목상자, 골판지상자, 스티로폴상자, PVC상자 등)와 어획물 포장에 소요되는 비닐종이 및 비닐끈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520을 적용하였다.

(다)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어획물을 수협 위판장을 통하여 계통판매할 때 발생하는 위탁판매 수수료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392를 적용하였다.

(라) 판매잡비

판매잡비는 주로 하역비나 진열비 등을 포함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1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5) 기타잡비

(가)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은 어선에 대한 재산세, 선박검사료, 어선입출항 수속비 조합비, 항만수수료, 청항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39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나) 주부식비

주부식비는 승선원들의 선내 식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식비와 부식비 및 식수대 등이 포함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5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근해어업의 경우 의료비(선내비치 약품비 및 방제소독비), 의료보험료(선주 부담분), 작업복비, 기호용품(술, 담배) 구입비, 선내오락용품(서적, 비디오테잎, 장기, 바둑, 화투) 구입비, 회식비, 숙박비, 자녀학자금 지원비 등 다양한 비용이 지출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94를 적용하였다.

(라) 보험료 및 공제료

보험료 및 공제료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363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마) 기타비용

이상에서 산출되지 않은 기타 어업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1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평년어업경비

이상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어업경비항목별 경비율 및 평년어업경율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24> 대형트롤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어업경비항목	경비율
I. 생산관리비	
1. 유지보수비	0.0729
2. 연료및유류비	0.2507
3. 소모품비	0.0111
4. 미끼비	-
5. 어구비	-
6. 어장막관리비	-
7. 운반비	-
II. 인건비	0.2939
III. 감가상각비	0.0624
IV. 판매관리비	
1. 가공비	-
2. 보관비	0.0104
3. 용기대	0.0520
4. 판매수수료	0.0392
5. 판매잡비	0.0111
V. 기타잡비	
1. 제세공과금	0.0039
2. 주부식비	0.0154
3. 복리후생비	0.0294
4. 보험료및공제료	0.0363
5. 사무비	-
6. 기타비용	0.0111
평년어업경비율	0.8997

4) 평년수익액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 Ⅱ.1에서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하여 평년수익액을 산정하였다.

<[별책] 표 25> 대형트롤어업 평년수익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년수익액	183,487	261,792	211,917

사. 동해구트롤

1) 어업실태

가) 조업형태

동해구트롤어업은 총톤수가 신통수 20톤(구톤수 20톤)이상~60톤(구톤수 80톤) 미만인 동력선에 의하여 주머니 모양으로 된 어구를 수평방향으로 임의시간동안 끌어 대상생물을 잡는 것으로 다른 어법에 비하여 적극적인 어법으로 매우 중요한 어업 중 하나이며 어구전개장치(전개판), 어로장비, 어군탐색장비 등이 매우 발달된 어업이다.

조업방법은 과거에는 현측식으로 조업하였으나, 현재는 선미 양측에 간이 갯로우스를 설치하여 현측식과 선미식의 중간방식으로 조업하고 있다. 즉, 투망 전에 좌현측 후릿줄을 선미에 있는 갯로우스 바깥으로 돌려 우현측 선수갑판에 가져와 날개그물에 연결시켜 놓은 다음 우현에서 자루그물, 날개그물 순으로 투망을 한다. 투망 중 그물이 추진기에 감기지 않도록 배를 우회전시키면서 예망 예정 방향으로 세운다. 후릿줄이 모두 나가면 배를 정선시키고 전개판을 연결한 다음, 다시 전속으로 전진하면서 끌줄을 풀어주며, 끌줄의 길이는 수심의 약 2~3배를 준다. 바람이나 해·조류를 선미에서 받으며 등심선을 따라 예망하며, 예망 완료 전 약 5~10분 동안 전속으로 예망한 다음 양망한다. 양망은 배를 정선시키고 사이드드럼을 통해 선수에 있는 와이어드럼으로 끌줄을 감은 다음 전개판을 갯로우스에 고정시키고, 배를 우회전시켜 그물이 우현에 붙도록 한 후 데릭 붐으로 끌어올린다.

나) 지역별 어업실태

동해구트롤어업은 근해트롤어업중의 하나로서 조업구역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으로 동해구기선저인망과 마찬가지로 동해안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나 동해구기선저인망과는 달리 주기관의 마력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조업활동이 이루어지며 조업방법이나 어선의 규모 등은 비슷하나 어획되는 어종에 있어서 강원지역에서는 오징어, 새우 도루묵 등이 어획되며, 경상북도 지역은 오징어, 가자미, 낙지, 문어 등이 어획되는 것이 다르다. 조업에 사용하는 어구는 Warp와 어망, 그리고 전개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구성된 1틀의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며 1~2틀 정도의 예비어망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구가 유실 또는 파손되면 즉시 교체하여 지속적인 조업활동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 통발어업 또는 유자망어업 등과 약간의 마찰을 빚기도 하며 포획한 어획물은 빙장상태로 보관하여 거의 수협위판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2) 평균연간어획금액의 산출

평균연간어획금액의 산출방법에 의해 산정하였다.

<[별책] 표 26> 동해구트롤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균연간 어획금액	379,376	1,485,361	621,161

3) 평년어업경비

가) 평년어업경비 산출기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4의 'Ⅱ.1.다'에서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 기산한 해당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년어업경비의 항목을 생산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기타잡비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경비항목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을 분류하였다.

(1) 생산관리비

(가)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 어구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82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연료 및 유류비

연료비는 선박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주연료비로 경유와 윤활유가 있다)와 취사 및 난방용 유류구입비(기타 연료비로 주로 LPG를 사용한다)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1606을 적용하였다.

(다) 어구비

어구비는 당해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로서 어망, 로프, 부자, 침자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23 적용하였다.

(라)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1)항의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모품에 대한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393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2) 인건비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와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로 나누어지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286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에 대하여 신규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게 산출되도록 정액법을 사용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36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4) 판매관리비

(가) 보관비

보관비는 어획물의 저장 또는 미끼보관을 위해 소요되는 물적 요소에 대한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58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용기대

용기대는 어획물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획물 판매시 회수되지 않는 어획물용기(목상자, 골판지상자, 스티로폴상자, PVC상자 등)와 어획물 포장에 소요되는 비닐종이 및 비닐끈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06을 적용하였다.

(다)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어획물을 수협 위판장을 통하여 계통판매할 때 발생하는 위탁판매 수수료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491을 적용하였다.

(라) 판매잡비

판매잡비는 주로 하역비나 진열비 등을 포함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0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5) 기타잡비

(가)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은 어선에 대한 재산세, 선박검사료, 어선입출항 수속비 조합비, 항만수수료, 청항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46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나) 주부식비

주부식비는 승선원들의 선내 식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식비와 부식비 및 식수대 등이 포함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8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근해어업의 경우 의료비(선내비치 약품비 및 방제소독비), 의료보험료(선주 부담분), 작업복비, 기호용품(술, 담배) 구입비, 선내오락용품(서적, 비디오테이프, 장기, 바둑, 화투) 구입비, 회식비, 숙박비, 자녀학자금 지원비 등 다양한 비용이 지출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04를 적용하였다.

(라) 보험료 및 공제료

보험료 및 공제료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1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마) 사무비

사무비는 사무실에서 해당어업과 관련하여 종사하는 사람의 인건비 및 전화료, 사무실사용료 등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68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바) 기타비용

이상에서 산출되지 않은 기타 어업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0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평년어업경비

이상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어업경비항목별 경비율 및 평년어업경율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27> 동해구트롤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어업경비항목	경비율
I. 생산관리비	
1.유지보수비	0.0820
2.연료및유류비	0.1606
3.소모품비	0.0393
4.미끼비	-
5.어구비	0.0223
6.어장막관리비	-
7.운반비	-
II. 인건비	0.2864
III. 감가상각비	0.0365
IV. 판매관리비	
1.가공비	-
2.보관비	0.0058
3.용기대	0.0106
4.판매수수료	0.0491
5.판매잡비	0.0100
V. 기타잡비	
1.제세공과금	0.0146
2.주부식비	0.0181

어업경비항목	경비율
3.복리후생비	0.0104
4.보험료및공제료	0.0211
5.사무비	0.0268
6.기타비용	0.0100
평년어업경비율	0.8035

4) 평년수익액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 II.1에서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하여 평년수익액을 산정하였다.

<[별책] 표 28> 동해구트롤어업 평년수익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년수익액	74,565	291,919	141,239

아. 대형선망

1) 어업실태

가) 조업형태

대형선망어업은 총톤수 신통수 50톤(구톤수 70톤)이상~130톤(구톤수 150톤) 미만의 동력선과 2척이내의 등선과 운반선 등의 부속선들에 의하여 선망어구를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조업방법은 주머니 모양의 그물이 없는 긴 네모꼴의 그물로 어군을 둘러쳐 포위한 다음 발줄 전체에 있는 조임줄을 조여 어군이 그물 아래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위범위를 좁혀 대상 생물을 잡는다. 그물의 모양은 조업방법 또는 대상생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날개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된 긴 네모꼴이며 상부에는 뜰을, 하부에는 발돌을 달아 수직으로 전개하도록 하고, 발줄에 조임고리와 조임줄을 장치하여 어군을 포위한 다음 조임줄을 조여 어군이 그물 아래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나) 지역별 어업실태

대형선망어업은 근해선망어업의 하나로서, 전국근해를 조업구역으로 하고 있으나

멸치를 잡는 경우에는 포획금지구역을 두고 있다. 조업은 주로 본선, 등선, 운반선 등의 6척으로 주로 조업을 하며 주로 고등어, 오징어, 전갱이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저인망어업과 동일어종 포획 등으로 인하여 마찰을 빚고 있었다. 포획한 어획물은 수협위판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2) 평균연간어획금액

평균연간어획금액의 산출방법에 의해 산정된 어선규모별 평균연간어획금액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29> 대형선망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균연간 어획금액	4,827,957	10,921,727	7,793,639

3) 평년어업경비

가) 평년어업경비 산출기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4의 'Ⅱ.1.다'에서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 기산한 해당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년어업경비의 항목을 생산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기타잡비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경비항목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을 분류하였다.

(1) 생산관리비

(가)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 어구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446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연료 및 유류비

연료비는 선박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주연료비로 경유와 윤활유가 있다)와 취사 및 난방용 유류구입비(기타 연료비로 주로 LPG를 사용한다)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1421을 적용하였다.

(다)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1)항의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모품에 대한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77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라) 어구비

어구비는 당해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로서 어망, 로프, 부자, 침자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510을 적용하였다.

(2) 인건비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와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 나누어지나,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2586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에 대하여 신규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게 산출되도록 정액법을 사용하여야 하나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808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4) 판매관리비

(가) 보관비

보관비는 어획물의 저장 또는 미끼보관을 위해 소요되는 물적 요소에 대한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9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용기대

용기대는 어획물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획물 판매시 회수되지 않는 어획물용기(목상자, 골판지상자, 스티로폴상자, PVC상자 등)와 어획물 포장에 소요되는 비닐종이 및 비닐끈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57을 적용하였다.

(다)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어획물을 수협 위판장을 통하여 계통판매할 때 발생하는 위탁판매 수수료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383을 적용하였다.

(5) 기타잡비

(가)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은 어선에 대한 재산세, 선박검사료, 어선입출항 수속비 조합비, 항만수수료, 청항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34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나) 주부식비

주부식비는 승선원들의 선내 식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식비와 부식비 및 식수대 등이 포함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8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근해어업의 경우 의료비(선내비치 약품비 및 방제소독비), 의료보험료(선주 부담분), 작업복비, 기호용품(술, 담배) 구입비, 선내오락용품(서적, 비디오테이프, 장기, 바둑, 화투) 구입비, 회식비, 숙박비, 자녀학자금 지원비 등 다양한 비용이 지출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685를 적용하였다.

(라) 보험료 및 공제료

보험료 및 공제료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38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마) 사무비

사무비는 사무실에서 해당어업과 관련하여 종사하는 사람의 인건비 및 전화료, 사무실사용료 등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68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바) 기타비용

이상에서 산출되지 않은 기타 어업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39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평년어업경비

이상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어업경비항목별 경비율 및 평년어업경율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30> 대형선망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어업경비항목	경비율
I. 생산관리비	
1. 유지보수비	0.0446
2. 연료및유류비	0.1421
3. 소모품비	0.0277
4. 미끼비	-
5. 어구비	0.0510
6. 어장막관리비	-
7. 운반비	-
II. 인건비	0.2586
III. 감가상각비	0.0808
IV. 판매관리비	-
1. 가공비	-
2. 보관비	0.0091
3. 용기대	0.0257
4. 판매수수료	0.0383
5. 판매잡비	0.0081
V. 기타잡비	-
1. 체세공과금	0.0134
2. 주부식비	0.0181
3. 복리후생비	0.0865
4. 보험료및공제료	0.0384
5. 사무비	0.0168
6. 기타비용	0.0390
평년어업경비율	0.8982

4) 평년수익액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 II.1에서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하여 평년수익액을 산정하였다.

<[별책] 표 31> 대형선망어업 평년수익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년수익액	484,120	1,095,164	781,501

자. 소형선망

1) 어업실태

가) 조업형태

소형선망어업은 총톤수 신톤수 8톤(구톤수 10톤)이상~30톤(구톤수 40톤) 미만의 동력선과 1척이내의 등선과 1척이내의 운반선에 의하여 선망어구를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조업방법은 주머니 모양의 그물이 없는 긴 네모꼴의 그물로 어군을 둘러쳐 포위한 다음 발줄 전체에 있는 조임줄을 조여 어군이 그물 아래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위범위를 좁혀 대상 생물을 잡는다. 그물의 모양은 조업방법 또는 대상생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날개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된 긴 네모꼴이며 상부에는 뜸을, 하부에는 발돌을 달아 수직으로 전개하도록 하고, 발줄에 조임고리와 조임줄을 장치하여 어군을 포위한 다음 조임줄을 조여 어군이 그물 아래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나) 지역별 어업실태

소형선망어업은 근해선망어업의 하나로서, 어선의 규모가 8톤이상 30톤미만으로 2~3척의 어선으로 연안에서 전어, 전갱이, 고등어, 멸치 등을 대상으로 조업을 한다. 조업을 함에 있어서 남해안에서는 기선권현망과 동해안에서는 동해구트롤어업과 동일어종 어획 등으로 인한 마찰을 빚고 있다. 포획한 어획물은 주로 수협위탁 판매를 하면서 일부 사매매를 병행하고 있었다.

2) 평균연간어획금액

평균연간어획금액의 산출방법에 의해 산정된 어선규모별 평균연간어획금액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32> 소형선망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균연간 어획금액	279,491	685,725	440,898

3) 평년어업경비

가) 평년어업경비 산출기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4의 'II.1.다'에서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 기산한 해당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년어업경비의 항목을 생산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기타잡비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경비항목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을 분류하였다.

(1) 생산관리비

(가)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 어구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33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연료 및 유류비

연료비는 선박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주연료비로 경유와 윤활유가 있다)와 취사 및 난방용 유류구입비(기타 연료비로 주로 LPG를 사용한다)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841적용하였다.

(다)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1)항의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모품에 대한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라) 어구비

어구비는 당해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로서 어망, 로프, 부자, 침자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728적용하였다.

(2) 인건비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와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 나누어지나,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3431적용하여 산출하였다.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에 대하여 신규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자

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게 산출되도록 정액법을 사용하여야 하나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783적용하여 산출하였다.

(4) 판매관리비

(가) 보관비

보관비는 어획물의 저장 또는 미끼보관을 위해 소요되는 물적 요소에 대한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71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용기대

용기대는 어획물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획물 판매시 회수되지 않는 어획물용기(목상자, 골판지상자, 스티로폼상자, PVC상자 등)와 어획물 포장에 소요되는 비닐종이 및 비닐끈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93적용하였다.

(다)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어획물을 수협 위판장을 통하여 계통판매할 때 발생하는 위탁판매 수수료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386적용하였다.

(라) 판매잡비

판매잡비는 주로 하역비나 진열비 등을 포함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076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5) 기타잡비

(가)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은 어선에 대한 재산세, 선박검사료, 어선입출항 수속비 조합비, 항만수수료, 청항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72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나) 주부식비

주부식비는 승선원들의 선내 식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식비와 부식비 및 식수대 등이 포함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5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근해어업의 경우 의료비(선내비치 약품비 및 방제소독비), 의료보험료(선주 부담분), 작업복비, 기호용품(술, 담배) 구입비, 선내오락용품(서적, 비디오테이프, 장기, 바둑, 화투) 구입비, 회식비, 숙박비, 자녀학자금 지원비 등 다양한 비용이 지출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92를 적용하였다.

(라) 보험료 및 공제료

보험료 및 공제료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7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마) 사무비

사무비는 사무실에서 해당어업과 관련하여 종사하는 사람의 인건비 및 전화료, 사무실사용료 등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2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바) 기타비용

이상에서 산출되지 않은 기타 어업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4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평년어업경비

이상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어업경비항목별 경비율 및 평년어업경율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33> 소형선망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어업경비항목	경비율
I. 생산관리비	
1. 유지보수비	0.0233
2. 연료및유류비	0.0841
3. 소모품비	0.0112
4. 미끼비	-
5. 어구비	0.0728
6. 어장막관리비	-
7. 운반비	-
II. 인건비	0.3431
III. 감가상각비	0.0783
IV. 판매관리비	-
1. 가공비	-
2. 보관비	0.0071
3. 용기대	0.0193
4. 판매수수료	0.0386
5. 판매잡비	0.0076
V. 기타잡비	-
1. 체세공과금	0.0072
2. 주부식비	0.0252
3. 복리후생비	0.0092
4. 보험료및공제료	0.0279
5. 사무비	0.0120
6. 기타비용	0.0144
평년어업경비율	0.7813

4) 평년수익액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 II.1에서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하여 평년수익액을 산정하였다.

<[별책] 표 34> 소형선망어업 평년수익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년수익액	41,874	102,729	66,054

차. 근해채낚기

1) 어업실태

가) 조업형태

근해채낚기어업은 총톤수 신통수 8톤(구톤수 10톤)이상~90(구톤수 130톤) 미만의 동력선에 의하여 오징어 조상기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조업방법은 주광성 어종을 주 대상으로 낚시줄에 여러개의 낚시를 달고 모릿줄 끝에 추를 달아서 모릿줄이 연직을 뻗히도록 어구를 상승, 하강시키면서 대상물이 낚시에 걸리게 해서 잡는 것이다. 채낚기어선에서는 어획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발전기를 시설하여 집어등을 설치하며 또한 풍압에 의하여 크게 압류당하지 않고 해·조류를 따라 낚시와 함께 흘러가도록 씨앙카(물풍)를 사용하고 있다. 집어등은 낚시가 배의 그늘에 들어가도록 현으로부터 안쪽에 설치하되 대부분 갑판으로부터 2m 상부에 설치하고 있으며, 어선규모별로 사용 집어등 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나) 지역별 어업실태

근해채낚기어업은 기존의 채낚기어업에 외줄낚시어업을 포함한다. 주로 오징어를 주어획종으로 하며 전국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동해안에서 조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해안 지역에서도 오징어가 많이 어획되기도 한다. 어선의 규모가 작은 어선들은 FRP선을 이용하여 활어형태로 판매를 많이하며 규모가 큰 어선들은 강선을 주로 사용하며 일부는 냉동시설을 갖추어 러시아 지역으로까지 가서 조업을 하고 있다.

2) 평균연간어획금액

평균연간어획금액의 산출방법에 의해 산정된 어선규모별 평균연간어획금액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35> 근해채낚기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균연간 어획금액	227,087	1,566,828	531,652

3) 평년어업경비

가) 평년어업경비 산출기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4의 ‘Ⅱ.1.다’에서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 기산한 해당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년어업경비의 항목을 생산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기타잡비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경비항목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을 분류하였다.

(1) 생산관리비

(가)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 어구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63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연료 및 유류비

연료비는 선박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주연료비로 경유와 윤활유가 있다)와 취사 및 난방용 유류구입비(기타 연료비로 주로 LPG를 사용한다)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1373을 적용하였다.

(다)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1)항의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모품에 대한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8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라) 미끼대

미끼대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8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마) 어구비

어구비는 당해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로서 어망, 로프, 부자, 침자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기타통발은 0.0383, 문어단지는 0.0216을 적용하였다.

(2) 인건비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와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 나누어지나,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386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에 대하여 신규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게 산출되도

특 정액법을 사용하여야 하나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953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4) 판매관리비

(가) 보관비

보관비는 어획물의 저장 또는 미끼보관을 위해 소요되는 물적 요소에 대한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68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용기대

용기대는 어획물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획물 판매시 회수되지 않는 어획물용기(목상자, 골판지상자, 스티로폼상자, PVC상자 등)와 어획물 포장에 소요되는 비닐종이 및 비닐끈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372를 적용하였다.

(다)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어획물을 수협 위판장을 통하여 계통판매할 때 발생하는 위탁판매 수수료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459를 적용하였다.

(라) 판매잡비

판매잡비는 주로 하역비나 진열비 등을 포함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73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5) 기타잡비

(가)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은 어선에 대한 재산세, 선박검사료, 어선입출항 수속비 조합비, 항만수수료, 청항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21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나) 주부식비

주부식비는 승선원들의 선내 식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식비와 부식비 및 식수대 등이 포함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6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근해어업의 경우 의료비(선내비치 약품비 및 방제소독비), 의료보험료(선주 부담분), 작업복비, 기호용품(술, 담배) 구입비, 선내오락용품(서적, 비디오테이프, 장기, 바둑, 화투) 구입비, 회식비, 숙박비, 자녀학자금 지원비 등 다양한 비용이 지출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68을 적용하였다.

(라) 보험료 및 공제료

보험료 및 공제료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31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마) 사무비

사무비는 사무실에서 해당어업과 관련하여 종사하는 사람의 인건비 및 전화료, 사무실사용료 등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46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바) 기타비용

이상에서 산출되지 않은 기타 어업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47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평년어업경비

이상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어업경비항목별 경비율 및 평년어업경율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36> 근해채낚기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어업경비항목	경비율
I. 생산관리비	
1.유지보수비	0.0263
2.연료및유류비	0.1373
3.소모품비	0.0184
4.미끼비	0.0085
5.어구비	0.0216
6.어장막관리비	
7.운반비	
II. 인건비	0.3864
III. 감가상각비	0.0953
IV. 판매관리비	
1.가공비	
2.보관비	0.0168
3.용기대	0.0372
4.판매수수료	0.0459
5.판매잡비	0.0073
V. 기타잡비	
1.세세공과금	0.0021
2.주부식비	0.0161
3.복리후생비	0.0068
4.보험료및공제료	0.0312
5.사무비	0.0046
6.기타비용	0.0047
평년어업경비율	0.8997

4) 평년수익액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 II.1에서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하여 평년수익액을 산정하였다.

<[별책] 표 37> 근해채낚기어업 평년수익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년수익액	30,322	209,179	70,984

카. 기선권현망

1) 어업실태

가) 조업형태

기선권현망어업은 총톤수 신통수 40톤(구톤수 50톤)미만 미만의 동력선에 의하여 권현망어구를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멸치는 연안성 어족으로 표·중층에 군집을 이루어 서식하며, 외부의 자극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습성을 이용하여 자루그물 앞에 긴 날개그물이 달린 어구 1통을 배 2척이 끌어 잡는 것이다. 그물은 크게 오비기, 수비, 자루그물로 되어 있으며, 이중 날개그물인 오비기와 수비는 어군을 위협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몰아 넣는 역할을 하므로 그물코가 매우 큰 것을 사용하는 반면 자루그물은 멸치가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의 매우 작은 그물코로 된 여자망을 주로 사용한다. 특히 멸치는 위협을 느끼면 밑으로 도피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자루그물 입구의 밑판이 등판보다 앞으로 나와 있으며, 자루그물에 들어간 멸치가 되돌아 나올 수 없도록 혀그물을 사용한다. 또한 멸치는 육질이 약하여 빨리 상하므로 수비에 주름을 많이 주고, 자루그물도 뒤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크게 하여 멸치가 그물 내에서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 때에는 자루그물 입구의 전개를 좋게 하여 멸치가 그물살에 치이지 않고 자루그물 속에 잘 들어 갈 수 있도록 수비와 자루그물 사이에 앞장, 호장, 삼각망, 앞치마를 붙인 개량식 권현망이 개발되었으나 어구 제작 상 복잡성으로 인해 아직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투망은 2척의 그물배가 그물을 반씩 나누어 싣고 나란히 붙어서 항해하다가 어탐선이 어군을 발견하면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자루그물부터 투망을 한다. 자루그물이 모두 투망되면 양 배는 서로 거리를 벌리면서 수비와 오비기를 투망한다. 투망이 완료되면 양 배는 각기 끝줄 1가닥씩을 선미측에 고정하고 양 배의 간격을 약 500~700m 정도 유지하면서 예망하기 시작한다. 예망 속도를 2노트 내외로 하여 약 30~40분 정도 예망한 다음 차차 양 배의 간격을 좁혀 날개그물이 나란해 질 때까지 계속 예망한다. 양망은 선미에 있는 양망기로 날개그물을 모두 감아 들인 다음 인력으로 자루그물을 끌어 올린다. 이때 양 배는 버릿줄로 연결하여 나란히 세우고 배와 배 사이에 자루그물이 오도록 한 다음 자루그물을 벌려 안쪽 그물살을 까뒤집으면서 끌어당겨 그물살에 있는 멸치를 자루 끝 쪽으로 모은다. 멸치가 자루 끝에 모두 모이면 자루 끝

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족대로 퍼 올려 가공선에 넘겨준다.

십 여 년 전부터 인력절감을 위하여 자루그물 안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양망고리와 줄을 달아놓고, 선미에는 3~4개의 활차를 단 데릭 붐을 설치하여 자루그물 입구가 올라오면 양망줄을 활차를 통해 사이드드럼으로 감아 올리는 기계적 양망 방법이 개발되어 일부 배에서 사용되고 있다. 양망이 완료되면 그물배는 다음 투망 준비를 하고 어탐선이 어군을 발견할 때까지 대기하며, 가공선은 어획물을 삶아 1차 건조한 다음 운반선에 넘겨주어 기지로 운반하도록 한다. 주로 낮에 조업을 하며, 1일 평균 5~6회 투망한다.

나) 지역별 어업실태

기선권현망어업은 제1구와 제2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1구는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경상남도과 전라남도의 도계선간의 해역, 2구는 전라남도의 해역으로 주로 남해안 지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진다. 본선의 주기판의 경우는 회전수가 1,200rpm 미만은 220마력이하, 회전수가 1,200rpm이상은 350마력 이하의 제한을 받는다. 가공 및 운반선 겸용선의 경우는 2척이내에서 신탄수 150톤 미만의 어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조보조선도 2척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선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주로 본선 2척, 어탐선 1척, 가공 및 운반선 2척으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조보조선을 1척 추가하여 6척으로 조업을 하기도 하고 5척 미만의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1) 제1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며 권현망어구를 사용하여 멸치를 주어획 어종으로 하여 조업활동을 하고 있다. 조업에 사용하는 어구는 본선의 규모 및 어업자의 성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비슷한 규모와 형태의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2~3통의 어구를 가지고 다니며 조업을 하며, 최근에 동일어종 포획과 관련하여 저인망어업과 마찰을 빚고 있다. 포획한 어획물은 간혹 생멸치로 위판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생멸치를 육상의 가공시설에서 가공·건조하여 건멸치로 수협위판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2) 제2구

전라남도 지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며 제1구지역과 어선의 규모나 어업의 형태, 어획종 등 모든 면에서 유사한 어업실태를 보이고 있다. 제1구와 지역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조업구역내에서 조업활동을 하고 있는 조업어선의 척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1구에 비하여 어업자간의 경쟁이나 분쟁이 심하지 않아 조업활동을 위한 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대부분 앞으로 기선권현망어업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감척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2) 평균연간어획금액의 산출

평균연간어획금액의 산출방법에 의해 산정하였다.

<[별책] 표 38> 기선권현망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균연간 어획금액	1,148,953	2,563,653	1,715,247

3) 평년어업경비

가) 평년어업경비 산출기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4의 'Ⅱ.1.다'에서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 기산한 해당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년어업경비의 항목을 생산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기타잡비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경비항목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을 분류하였다.

(1) 생산관리비

(가)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 어구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98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연료 및 유류비

연료비는 선박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주연료비로 경유와 윤활유가 있다)와 취사 및 난방용 유류구입비(기타 연료비로 주로 LPG를 사용한다)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1560을 적용하였다.

(다) 어구비

어구비는 당해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로서 어망, 로프, 부자, 침자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547 적용하였다.

(라)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1)항의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모품에 대한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3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마) 어장막관리비

어장막관리비는 멸치를 건조·가공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운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97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2) 인건비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와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로 나누어지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286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에 대하여 신규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게 산출되도록 정액법을 사용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623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4) 판매관리비

(가) 가공비

가공비는 어획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생물상태의 어획물을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82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용기대

용기대는 어획물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획물 판매시 회수되지 않는 어획물용기(목상자, 골판지상자, 스티로폼상자, PVC상자 등)와 어획물 포장에 소요되는 비닐종이 및 비닐끈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26을 적용하였다.

(다)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어획물을 수협 위판장을 통하여 계통판매할 때 발생하는 위탁판매 수수료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421을 적용하였다.

(라) 판매잡비

판매잡비는 주로 하역비나 진열비 등을 포함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68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5) 기타잡비

(가)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은 어선에 대한 재산세, 선박검사료, 어선입출항 수속비 조합비, 항만수수료, 청항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50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나) 주부식비

주부식비는 승선원들의 선내 식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식비와 부식비 및 식수대 등이 포함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5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근해어업의 경우 의료비(선내비치 약품비 및 방제소독비), 의료보험료(선주 부담분), 작업복비, 기호용품(술, 담배) 구입비, 선내오락용품(서적, 비디오테이프, 장기, 바둑, 화투) 구입비, 회식비, 숙박비, 자녀학자금 지원비 등 다양한 비용이

지출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19를 적용하였다.

(라) 보험료 및 공제료

보험료 및 공제료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2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마) 사무비

사무비는 사무실에서 해당어업과 관련하여 종사하는 사람의 인건비 및 전화료, 사무실사용료 등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1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바) 기타비용

이상에서 산출되지 않은 기타 어업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5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평년어업경비

이상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어업경비항목별 경비율 및 표준경비율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39> 기선권현망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

어업경비항목	경비율
I. 생산관리비	
1. 유지보수비	0.0298
2. 연료및유류비	0.1560
3. 소모품비	0.0234
4. 미끼비	-
5. 어구비	0.0547
6. 어장막관리비	0.0097
7. 운반비	-
II. 인건비	0.2862
III. 감가상각비	0.0623
IV. 판매관리비	
1. 가공비	0.0829
2. 보관비	-
3. 용기대	0.0226
4. 판매수수료	0.0421
5. 판매잡비	0.0068
V. 기타잡비	
1. 제세공과금	0.0150
2. 주부식비	0.0254
3. 복리후생비	0.0219
4. 보험료및공제료	0.0220
5. 사무비	0.0211
6. 기타비용	0.0150
평년어업경비율	0.8969

4) 평년수익액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 II.1에서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하여 평년수익액을 산정하였다.

<[별책] 표 40> 기선권현망어업 평년수익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년수익액	118,467	264,323	176,850

타. 근해자망

1) 어업실태

가) 조업형태

근해자망어업은 총톤수가 신탄수 8톤(구톤수 10톤)이상~90톤(구톤수 130톤) 미만인 동력선에 의하여 자망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자망은 방추형의 어류를 주 대상으로 긴 띠 모양의 그물을 고기가 지나가는 곳에 부설하여, 대상 생물이 그물코에 꽂히도록 하여 잡는 것이다. 다른 어구에 비해 그물감의 선택과 성형을 결정이 매우 중요한 어구이다. 그물감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대상 생물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야 하고,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물코의 매듭이 밀리지 않아야 하며, 그물코의 크기가 일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그물실은 가늘면서 질기고, 적당한 탄력이 있고, 매듭 짓기가 쉬운 것을 택하여야 한다.

나) 지역별 어업실태

근해자망어업은 신탄수 8톤 이상 ~ 90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여 전국 근해에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고 있으며, 고정자망으로 조업하는 어선들은 부속선을 이용해서 조업을 하고 있다.

(1) 서해안

서해안 지역에서는 꽃게를 주로 잡고 있으며 경기·인천지역에서는 고정자망(닷자망)을 이용한 조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닷자망 조업시는 1~2척의 부속선을 갖추어 조업활동을 하며 어획되는 어종은 조기, 갈치, 멸치, 꽃게, 기타잡어 등이다.

(2) 남해안

남해안 지역에서는 주로 유자망을 이용하여 어업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조기망을 이용한 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조업과정에 있어서는 통발어업과 약간의 분쟁관계가 있으며, 일부 어업자들은 중국어선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주로 조기, 꽃게, 잡어를 어획하고 있으며 어획물은 주로 수협위탁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3) 동해안

동해안 지역에서는 주로 게류를 주어종으로 하고 콩치, 가자미 등을 어획하고 있으나 연중 자망으로만 조업을 하기도 하지만, 채낚기어업, 통발어업 등 다른 어업을 병행하며 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망어업 과정에서는 주로 통발어업과 약간의 분쟁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포획한 어획물은 주로 수협위탁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2) 평균연간어획금액

평균연간어획금액의 산출방법에 의해 산정된 어선규모별 평균연간어획금액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41> 근해자망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균연간 어획금액	142,779	695,017	357,241

3) 평년어업경비

가) 평년어업경비 산출기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4의 'Ⅱ.1.다'에서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 기산한 해당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년어업경비의 항목을 생산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기타잡비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경비항목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을 분류하였다.

(1) 생산관리비

(가)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 어구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30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연료 및 유류비

연료비는 선박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주연료비로 경유와 윤활유가 있다)와 취사 및 난방용 유류구입비(기타 연료비로 주로 LPG를 사용한다)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1024를 적용하였다.

(다)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1)항의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모품에 대한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9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라) 어구비

어구비는 당해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로서 어망, 로프, 부자, 침자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366 적용하였다.

(2) 인건비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와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 나누어지나,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3596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에 대하여 신규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게 산출되도록 정액법을 사용하여야 하나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90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4) 판매관리비

(가)가공비

가공비는 어획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생물상태의 어획물을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2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보관비

보관비는 어획물의 저장 또는 미끼보관을 위해 소요되는 물적 요소에 대한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1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다) 용기대

용기대는 어획물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획물 판매시 회수되지 않는 어획물용기(목상자, 골판지상자, 스티로폼상자, PVC상자 등)와 어획물 포장에 소요되는 비닐종이 및 비닐끈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14를 적용하였다.

(라)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어획물을 수협 위판장을 통하여 계통판매할 때 발생하는 위탁판매 수수료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510을 적용하였다.

(마) 판매잡비

판매잡비는 주로 하역비나 진열비 등을 포함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7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5) 기타잡비

(가)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은 어선에 대한 재산세, 선박검사료, 어선입출항 수속비 조합비, 항만수

수료, 청항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07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나) 주부식비

주부식비는 승선원들의 선내 식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식비와 부식비 및 식수대 등이 포함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47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근해어업의 경우 의료비(선내비치 약품비 및 방제소독비), 의료보험료(선주 부담분), 작업복비, 기호용품(술, 담배) 구입비, 선내오락용품(서적, 비디오테잎, 장기, 바둑, 화투) 구입비, 회식비, 숙박비, 자녀학자금 지원비 등 다양한 비용이 지출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72를 적용하였다.

(라) 보험료 및 공제료

보험료 및 공제료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0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마) 사무비

사무비는 사무실에서 해당어업과 관련하여 종사하는 사람의 인건비 및 전화료, 사무실사용료 등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8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바) 기타비용

이상에서 산출되지 않은 기타 어업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36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평년어업경비

이상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어업경비항목별 경비율 및 평년어업경율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42> 근해자망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어업경비항목	경비율
I. 생산관리비	
1. 유지보수비	0.0301
2. 연료및유류비	0.1024
3. 소모품비	0.0194
4. 미끼비	
5. 어구비	0.0366
6. 어장막관리비	
7. 운반비	
II. 인건비	0.3596
III. 감가상각비	0.0905
IV. 판매관리비	
1. 가공비	0.0029
2. 보관비	0.0119
3. 용기대	0.0214
4. 판매수수료	0.0510

어업경비항목	경비율
5.판매잡비	0.0074
V.기타잡비	
1.제세공과금	0.0007
2.주부식비	0.0247
3.복리후생비	0.0172
4.보험료및공제료	0.0200
5.사무비	0.0084
6.기타비용	0.0136
평년어업경비율	0.8178

4) 평년수익액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 II.1에서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하여 평년수익액을 산정하였다.

<[별책] 표 43> 근해자망어업 평년수익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년수익액	26,024	126,604	65,098

파. 근해안강망

1) 어업실태

가) 조업형태

근해안강망어업은 총톤수가 신타수 8톤(구톤수 10톤)이상~90톤(구톤수 130톤) 미만인 동력선에 의하여 안강망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역에 날개가 없는 긴 자루그물을 닻으로 고정 부설하여 조류를 따라 회유하던 대상 생물이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 안강망류는 주목망류와 어구형태 및 어획원리는 같으나 주목망류는 2개의 말목 또는 닻으로 자루그물 입구를 좌우로 벌여지도록 한 것에 반해, 안강망류는 1개의 닻으로 어구를 고정하는 대신 자루그물 입구에 별도의 전개장치를 부착하여 입구가 전개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주목망류는 조류의 방향이 180도로 바로 바뀌지 않고 서서히 방향이 바뀌는 해역에서는 조업이 곤란하나, 안강망류는 조류의 방향이 180도로

바로 바뀌든 서서히 바뀌든 상관없이 조업이 가능하며, 주목망류에 비해 어구를 이동시켜 부설하기가 용이하다.

나) 지역별 어업실태

근해안강망어업은 주로 서해안 지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서는 극히 일부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다. 어선규모는 8톤 이상 90톤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80톤급 내외 규모의 어선들이 조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 경기도, 인천광역시

근해안강망어업에서 사용하는 어구는 어장돛을 포함한 안강망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획되는 어종은 조기, 갈치, 멸치, 꽃게, 기타잡어 등이다. 조업에 사용하는 어구수는 주로 10틀 내외의 어구를 가지고 조업을 행하고 있으며 포획한 어획물은 활어와 냉동상태로 보관하여 수협위판과 사매매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2) 충청남도

근해안강망어업에서 사용하는 어구는 어장돛을 포함한 안강망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획되는 어종은 꽃게, 조기, 아귀, 멸치, 주꾸미, 기타잡어 등이다. 조업에 사용하는 어구수는 주로 10~20틀 내외의 어구를 가지고 조업을 행하고 있으며 포획한 어획물은 빙장 및 냉장상태로 보관하여 수협위판과 사매매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3) 전라북도

근해안강망어업에서 사용하는 어구는 어장돛을 포함한 안강망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획되는 어종은 조기, 갈치, 병어, 기타잡어 등이다. 조업에 사용하는 어구수는 주로 5틀 내외의 어구를 가지고 조업을 행하고 있으며, 포획한 어획물은 주로 냉장·냉동상태로 보관하여 수협위판과 사매매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4) 전라남도

근해안강망어업에서 사용하는 어구는 어장돛을 포함한 안강망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획되는 어종은 조기, 갈치, 병어, 기타잡어 등이며 조업에 사용하는 어구수는 주로 5틀 내외의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을 행하고 있으며, 포획한 어획물은 빙장, 냉장·냉동상태로 보관하여 수협위판과 사매매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2) 평균연간어획금액의 산출

평균연간어획금액의 산출방법에 의해 산정하였다.

<[별책] 표 44> 근해안강망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균연간 어획금액	188,922	608,452	434,852

3) 평년어업경비

가) 평년어업경비 산출기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4의 'Ⅱ.1.다'에서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 기산한 해당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년어업경비의 항목을 생산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기타잡비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경비항목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을 분류하였다.

(1) 생산관리비

(가)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 어구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43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연료 및 유류비

연료비는 선박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주연료비로 경유와 윤활유가 있다)와 취사 및 난방용 유류구입비(기타 연료비로 주로 LPG를 사용한다)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1157을 적용하였다.

(다) 어구비

어구비는 당해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로서 어망, 로프, 부자, 침자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41을 적용하였다.

(라)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1)항의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모품에 대한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03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2) 인건비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와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로 나누어지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315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에 대하여 신규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게 산출되도록 정액법을 사용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988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4) 판매관리비

(가) 가공비

가공비는 어획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생물상태의 어획물을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5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보관비

보관비는 어획물의 저장을 위해 소요되는 물적 요소에 대한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6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다) 용기대

용기대는 어획물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획물 판매시 회수되지 않는 어획물용기(목상자, 골판지상자, 스티로폴상자, PVC상자 등)와 어획물 포장에 소요되는 비닐종이 및 비닐끈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26을 적용하였다.

(라)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어획물을 수협 위판장을 통하여 계통판매할 때 발생하는 위탁판매 수수료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419를 적용하였다.

(마) 판매잡비

판매잡비는 주로 하역비나 진열비 등을 포함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56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5) 기타잡비

(가)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은 어선에 대한 재산세, 선박검사료, 어선입출항 수속비 조합비, 항만수수료, 청항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09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나) 주부식비

주부식비는 승선원들의 선내 식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식비와 부식비 및 식수대 등이 포함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13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근해어업의 경우 의료비(선내비치 약품비 및 방제소독비), 의료보험료(선주 부담분), 작업복비, 기호용품(술, 담배) 구입비, 선내오락용품(서적, 비디오테이프, 장기, 바둑, 화투) 구입비, 회식비, 숙박비, 자녀학자금 지원비 등 다양한 비용이 지출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73을 적용하였다.

(라) 보험료 및 공제료

보험료 및 공제료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396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마) 사무비

사무비는 사무실에서 해당어업과 관련하여 종사하는 사람의 인건비 및 전화료, 사

무실사용료 등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4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바) 기타비용

이상에서 산출되지 않은 기타 어업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1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평년어업경비

이상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어업경비항목별 경비율 및 평년어업경비율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45> 근해안강망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율(표준경비율)

어업경비항목	경비율
I. 생산관리비	
1.유지보수비	0.0432
2.연료및유류비	0.1157
3.소모품비	0.0103
4.미끼비	-
5.어구비	0.0241
6.어장막관리비	-
7.운반비	-
II. 인건비	0.3151
III. 감가상각비	0.0988
IV. 판매관리비	
1.가공비	0.0150
2.보관비	0.0065
3.용기대	0.0226
4.판매수수료	0.0419
5.판매잡비	0.0156
V. 기타잡비	
1.제세공과금	0.0009
2.주부식비	0.0213
3.복리후생비	0.0173
4.보험료및공제료	0.0396
5.사무비	0.0045
6.기타비용	0.0112
평년어업경비율	0.8036

4) 평년수익액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 Ⅱ.1에서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하여 평년수익액을 산정하였다.

<[별책] 표 46> 근해안강망어업 평년수익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년수익액	37,112	119,507	85,414

하. 근해붕수망

1) 어업실태

가) 조업형태

붕수망어업은 신통수 8톤(구톤수 10톤)이상~신통수 90톤(구톤수 130톤)미만의 어선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4각형 보자기 모양의 그물감 상부에 뜬대들 하부에 발돌과 돋음줄을 양옆에 조임고리와 조임줄을 부착하여 투망시에는 그물이 뜬대에 의해 좌우로 전개됨과 동시에 뜬대의 부력과 발돌의 침력에 의해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하고 어군을 불빛으로 그물위로 유도하거나 소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嚇하여 고기 스스로가 그물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어획하는 어업이다.

해가 진후부터 수색등과 스케닝소나로 어군을 탐색하여 어군이 발견되면 집어등을 켜고 배를 미속전진시키면서 어군을 집어하기 시작하여 어군이 충분히 집어되면 배를 정선하여 집어시킨 반대현에 그물을 투망한다. 일반적으로 좌현에 집어시키고 우현에서 투망을 한다. 투망을 해 조류방향의 아랫쪽에 우현이 오도록 배를 가로세운 다음 우현에 길게 매달려 있는 뜬대를 투하하고 뺨힘대로 뜬대를 밀어내면서 그물살, 발줄, 돋음줄을 차례로 투하하여 그물이 배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한다. 투망이 완료되면 좌현 선미측 집어등부터 차례로 끄면서 어군을 선수측으로 유도한 다음 우현측 유도등을 켜 어군을 배와 그물사이로 유도한다. 어군이 그물의 중앙까지 완전히 유도되면 백색유도등을 모두 끄고 적색등만 켜 어군의 행동을 둔화시키고 표층까지 부상하도록 한다. 어군이 완전히 유도되면 양망원치로 돋음줄과 조임줄을 감아 그물이 오목한 주머니 모양이 되도록하여 어군을 가둔 다음 발줄쪽 그물살부터 차례로 당겨 뜬대 쪽에 있는 고기를 고기받이에 모아 쪽대 또는 물고기 펌프로 퍼올린다.

나) 지역별 어업실태

붕수망어업은 근해붕수망어업의 하나로서 전국 근해를 조업구역으로 하고 있어 각 지역 업무담당자의 협조와 현지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붕수망어업 허가는 다른 어업허가를 복수로 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실제 붕수망어업만을 하는 어업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제주지역에 붕수망으로 조

업을 하는 어업자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복수로 어업허가를 득하고 있으며, 봉수망 어업은 일년 중에서 특정시기에만 조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이외의 기간에는 당해 어선이 득한 다른 허가어업으로 조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봉수망어업은 어업허가는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봉수망어업으로 조업하는 어업자가 극히 드물고 봉수망으로 조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허가어업활동과 병행하고 있으며, 충분한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봉수망어업 전체에 대한 어업실태를 분석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다른 허가업종으로 대부분 조업하고 있기 때문에 봉수망어업에 대한 어업실태는 복수허가 즉, 같이 득한 다른 허가어업에 포함시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근해채낚기어업 허가를 같이 득하여 채낚기어업을 주어업으로 조업하는 어선이 대부분이었다.

2) 평균연간어획금액

본 용역조사에서의 봉수망어업의 평균연간어획금액 산정에 있어서 대부분 근해채낚기어업 허가를 복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해채낚기어업의 50%에 준하는 금액을 평균연간어획금액으로 하였다.

3) 평년어업경비

평년어업경비는 근해채낚기어업의 50%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였다.

4) 평년수익액

평년수익액은 근해채낚기어업의 50%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였다.

가. 자리돔들망

1) 어업실태

가) 조업형태

자리돔들망어업은 신탄수 8톤(구톤수 10톤)이상~신탄수 90톤(구톤수 130톤)미만의 어선 및 1톤미만의 어로보조선 2척이내의 어선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나) 지역별 어업실태

자리돔들망어업은 근해봉수망어업의 하나로서 제주도 연해지역을 조업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봉수망어업허가와 함께 가지고 있다. 자리돔들망어업으로 허가된 정수는 있으나 이를 주어업으로 하는 어선의 척수는 없다. 그래서 본 용역조사에서는 자리돔들망어업을 근해봉수망어업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2) 평균연간어획금액

붕수망어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평년어업경비

붕수망어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평년수익액

붕수망어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잠수기

1) 어업실태

가) 조업형태

잠수기어업은 총톤수 신톤수 8톤(구톤수 10톤)미만의 동력선을 이용하며 잠수어구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사람이 직접 물 속으로 들어가 대상물을 확인한 다음 칼, 갈고리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잡는 것으로, 각종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배로부터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조업한다. 공기 공급방법은 이전에는 수동 펌프를 사용하였으나 현재에는 에어 콤프레샤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채취도구도 수역에 따라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분사기 사용시에는 어획대상 패류의 종류(개조개, 키조개, 왕우럭, 꼬끼리조개)와 분사기의 마력이 제한되어지는데 분사기의 마력은 8마력 이하로 제한된다.

나) 지역별 어업실태

잠수기어업은 전국의 연안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며 다른 근해어업과 달리 지역에 따라 5개 구역으로 나뉘어 지며 어선이나 기관의 마력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잠수부의 능력에 따라 어획정도가 차이를 보인다.

(1) 제1구

조업은 강원도 연해지역을 조업구역으로 하여 3~5톤급의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활동을 하며, 조업은 선장, 잠수부, 선원 등 3명의 인원이 조업하며 잠수부가 잠수어구를 이용하여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해삼, 명게, 성게 등 포획하여 활어상태로 수협위판 또는 사매매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2) 제2구

조업은 경상북도 연해지역을 조업구역으로 하여 3~5톤급의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신항만 건설 등으로 인하여 조업장소가 줄어들고 조업환경의 악화로 조업시간이 줄어드는 한편 레저활동으로 잠수하는 사람들에 의한 자원고갈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감척을 희망하고 있다. 주로 어패류 및 해삼, 멧게, 소라, 개조개 등을 포획하며 울릉지역에서는 수협위판을 통하여 주로 판매하며, 기타지역에서는 사매매를 통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

(3) 제3구

조업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연해를 조업구역으로 하여 주로 5톤미만의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경상남도 연안에서 조업활동이 많이 이루어진다. 주로 해삼, 멧게, 개불, 전복, 소라 등을 포획하며 대부분 수협위판을 통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

(4) 제4구

조업은 전라남도 연해를 조업구역으로 하여 주로 4톤급의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키조개, 개불, 개조개 등을 포획하여 수협위판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5) 제5구

조업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연해를 조업구역으로 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약간 규모가 큰 어선을 이용하여 키조개를 주어종으로 하여 해삼, 전복, 개조개 등을 포획하며 특히 키조개의 경우는 해당지역내에 구성된 어업인 단체에서 일일조업량을 정해 자원관리를 통하여 어로행위를 하고 있다. 포획한 어획물은 수협위판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자의 경우에는 어선의 규모나 실질적인 본인들의 수익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평균연간어획금액

평균연간어획금액의 산출방법에 의해 산정된 어선규모별 평균연간어획금액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47> 잠수기어업 평년수익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년수익액	66,116	306,363	153,261

3) 평년어업경비가) 평년어업경비 산출기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4의 'II.1.다'에서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의 산정

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 기산한 해당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년어업경비의 항목을 생산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기타잡비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경비항목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을 분류하였다.

(1) 생산관리비

(가)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 어구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3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연료 및 유류비

연료비는 선박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주연료비로 경유와 윤활유가 있다)와 취사 및 난방용 유류구입비(기타 연료비로 주로 LPG를 사용한다)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950을 적용하였다.

(다)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1)항의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모품에 대한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06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라) 어구비

어구비는 당해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로서 잠수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62를 적용하였다.

(2) 인건비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와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 나누어지나,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4256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에 대하여 신규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게 산출되도록 정액법을 사용하여야 하나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39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4) 판매관리비

(가) 용기대

용기대는 어획물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획물 판매시 회수되지 않는 어획물용기(목상자, 골판지상자, 스티로폼상자, PVC상자 등), 그물망과 어획물 포장에 소요되는 비닐종이 및 비닐끈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46을 적용하였다.

(나)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어획물을 수협 위판장을 통하여 계통판매할 때 발생하는 위탁판매 수

수료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450을 적용하였다.

(5) 기타잡비

(가)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은 어선에 대한 재산세, 선박검사료, 어선입출항 수속비 조합비, 항만수수료, 청항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22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나) 주부식비

주부식비는 승선원들의 선내 식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식비와 부식비 및 식수대 등이 포함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1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다) 보험료 및 공제료

보험료 및 공제료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1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평년어업경비

이상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어업경비항목별 경비율 및 평년어업경율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48> 잠수기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어업경비항목	경비율
I. 생산관리비	
1.유지보수비	0.0232
2.연료및유류비	0.0950
3.소모품비	0.0006
4.미끼비	
5.어구비	0.0062
6.어장막관리비	
7.운반비	
II. 인건비	0.4256
III. 감가상각비	0.0391
IV. 판매관리비	
1.가공비	
2.보관비	
3.용기대	0.0146
4.판매수수료	0.0450
5.판매잡비	
V. 기타잡비	
1.제세공과금	0.0022
2.주부식비	0.0219
3.복리후생비	
4.보험료및공제료	0.0111
5.사무비	

어업경비항목	경비율
6.기타비용	
평년어업경비율	0.6845

4) 평년수익액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 Ⅱ.1에서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하여 평년수익액을 산정하였다.

<[별책] 표 49> 잠수기어업 평년수익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년수익액	22,386	84,773	49,669

다. 근해통발

1) 어업실태

가) 조업형태

근해통발어업은 총톤수 신톤수 8톤(구톤수 10톤)이상~90톤(구톤수 130톤) 미만의 동력선에 의하여 통발 또는 문어단지를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여 서식하거나 유영력이 크지 않으면서 미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 생물을 대상으로 나무, 철사 등으로 된 여러가지 형태의 고정틀, 또는 고정된 틀 대신에 테를 이용하여 어구의 모양을 유지한 것에 그물감이나 철망 또는 나무넝쿨 등을 씌우고 위면 또는 옆면에 1~4개의 입구를 설치한 어구를 부설하여 대상생물을 잡는다. 우리나라에서 어업으로 중요한 것은 대상생물을 미끼로 유인하는 새우 통발, 게 통발, 붕장어 통발, 골뱅이 통발 등과 산란기에 알 받이로 유인하는 갑오징어 통발이 있다. 이러한 통발들은 과거에 비해 새로 개발되었거나, 통발구조 및 재질이 개량 발전되어 현재는 어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나) 지역별 어업실태

근해통발어업은 기타통발어업, 장어통발어업, 문어단지어업으로 나뉘어 지며. 여기에 따라 지역을 이동하면서 조업을 행하고 있다. 기타통발어업은 전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어통발어업의 경우는 주로 남해안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며, 문어단지어업도 남해안 지역에서 주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서해안

기타통발어업에 의한 조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꽃게를 주어획 어종으로 하여 방게, 새우, 문어 등을 어획하고 있다. 어획물은 주로 활어형태로서 보관하여 수협 위판과 사매매를 통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 일부 장어통발조업도 이루어지나 기타 통발어업에 의한 조업에 비하여 그 세력이 미미하며, 문어단지 조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남해안

기타통발어업은 꽃게통발 등을 이용하여 꽃게, 낙지, 문어 등을 주로 어획하며, 장어통발어업은 장어통발을 이용하여 장어류를 주로 어획하고 있다. 문어단지어업의 경우는 미끼의 사용없이 문어단지만을 사용하여 문어를 어획하고 있으며, 주로 타 근해어업과 달리 20톤 미만의 소규모 어선을 이용하여 주로 전라남도 여수지역과 제주지역을 왕래하며 활발한 조업활동을 하고 있다. 포획한 어획물은 주로 활어상태로 보관하여 수협위판과 사매매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문어의 경우는 수협위판으로는 어획된 물량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사매매에 의한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3) 동해안

기타통발에 의한 조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게를 주어획 어종으로 하여, 골뱅이, 새우, 문어 등을 어획하고 있다. 어획물은 활어와 빙장의 형태로 보관하여 수협위판 및 사매매를 통하여 판매를 하고 있으나, 홍게의 경우는 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2) 평균연간어획금액의 산출

평균연간어획금액의 산출방법에 의해 산정하였다.

<[별책] 표 50> 근해통발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균연간 어획금액	160,000	1,441,404	587,688

3) 평년어업경비

가) 평년어업경비 산출기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4의 'Ⅱ.1.다'에서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 기산한 해당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년어업경비의 항목을 생산관리비, 인건

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기타잡비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경비항목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을 분류하였다.

(1) 생산관리비

(가)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 어구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기타통발은 0.0317, 장어통발은 0.0297, 문어단지 0.048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연료 및 유류비

연료비는 선박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주연료비로 경유와 윤활유가 있다)와 취사 및 난방용 유류구입비(기타 연료비로 주로 LPG를 사용한다)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기타통발은 0.1361, 장어통발은 0.1392, 문어단지는 0.1930을 적용하였다.

(다) 어구비

어구비는 당해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로서 어망, 로프, 부자, 침자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기타통발은 0.0208, 문어단지는 0.0323을 적용하였다.

(라) 미끼대

미끼대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 기타통발은 0.0530, 장어통발은 0.197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마)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1)항의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모품에 대한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기타통발은 0.0219, 장어통발은 0.0366, 문어단지 0.005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2) 인건비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와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로 나누어지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기타통발은 0.3168, 장어통발은 0.2720, 문어단지는 0.3713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에 대하여 신규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게 산출되도록 정액법을 사용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981, 장어통발은 0.0635, 문어단지는 0.053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4) 판매관리비

(가) 보관비

보관비는 어획물의 저장 또는 미끼보관을 위해 소요되는 물적 요소에 대한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기타통발은 0.0142, 문어단지는 0.003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용기대

용기대는 어획물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획물 판매시 회수되지 않는 어획물용기(목상자, 골판지상자, 스티로폴상자, PVC상자 등)와 어획물 포장에 소요되는 비닐종이 및 비닐끈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기타통발은 0.0187을 적용하였다.

(다)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어획물을 수협 위관장을 통하여 계통판매할 때 발생하는 위탁판매 수수료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기타통발은 0.0370, 장어통발은 0.0282, 문어단지는 0.0393을 적용하였다.

(라) 판매잡비

판매잡비는 주로 하역비나 진열비 등을 포함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기타통발은 0.0040, 장어통발은 0.031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5) 기타잡비

(가)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은 어선에 대한 재산세, 선박검사료, 어선입출항 수속비 조합비, 항만수수료, 청항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기타통발은 0.0018, 장어통발은 0.0056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나) 주부식비

주부식비는 승선원들의 선내 식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식비와 부식비 및 식수대 등이 포함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기타통발은 0.0166, 장어통발은 0.0379, 문어단지는 0.057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근해어업의 경우 의료비(선내비치 약품비 및 방제소독비), 의료보험료(선주 부담분), 작업복비, 기호용품(술, 담배) 구입비, 선내오락용품(서적, 비디오테이프, 장기, 바둑, 화투) 구입비, 회식비, 숙박비, 자녀학자금 지원비 등 다양한 비용이 지출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기타통발은 0.0168, 장어통발은 0.0272를 적용하였다.

(라) 보험료 및 공제료

보험료 및 공제료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 기타통발 0.0224, 장어통발 0.0311, 문어단지는 0.014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마) 사무비

사무비는 사무실에서 해당어업과 관련하여 종사하는 사람의 인건비 및 전화료, 사무실사용료 등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기타통발은 0.007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

다.

(바) 기타비용

이상에서 산출되지 않은 기타 어업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기타통발은 0.0108, 장어통발은 0.0101, 문어단지 0.001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평년어업경비

이상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어업경비항목별 경비율 및 평년어업경비율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51> 근해통발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표준경비율)

어업경비항목	경비율		
	기타통발	장어통발	문어단지
I. 생산관리비			
1.유지보수비	0.0317	0.0297	0.0484
2.연료및유류비	0.1361	0.1392	0.1930
3.소모품비	0.0219	0.0366	0.0054
4.미끼비	0.0530	0.1972	-
5.어구비	0.0208	-	0.0323
6.어장막관리비	-	-	-
7.운반비	-	-	-
II. 인건비	0.3168	0.2720	0.3713
III. 감가상각비	0.0981	0.0635	0.0532
IV. 판매관리비			
1.가공비	-	-	-
2.보관비	0.0142	-	0.0034
3.용기대	0.0187	-	-
4.판매수수료	0.0370	0.0282	0.0393
5.판매잡비	0.0040	0.0314	-
V. 기타잡비			
1.제세공과금	0.0018	0.0056	-
2.주부식비	0.0166	0.0379	0.0571
3.복리후생비	0.0168	0.0272	-
4.보험료및공제료	0.0224	0.0311	0.0140
5.사무비	0.0074	-	-
6.기타비용	0.0108	0.0101	0.0012
평년어업경비율	0.8281	0.9097	0.8186

4) 평년수익액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 II.1에서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하여 평년수익액을 산정하였다.

<[별책] 표 52> 근해통발어업 평년수익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년수익액	27,105	143,359	88,208

라. 패류형망

1)어업실태

근해형망어업은 신통수 20톤미만(구통수 25톤)미만의 어선을 이용해서 형망틀을 끌 어 조개류 등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모래나 펄에 서식하는 조개류나 해저 가까이에 서식하는 갑각류를 대상으로 자루그물 입구에 일정한 틀을 단 어구로 바닥 또는 해저 가까운 곳을 긁어서 잡는 것이다. 바닥이나 해저를 긁는 방법에 따라 즉, 틀에 손잡이를 달아 사람이 직접 잡고 바닥을 긁어 채취하는 것을 손틀방이라고 하며, 어구를 배가 끌어서 채취하는 것을 배틀방이라고 한다. 배틀방은 끌줄에 어구를 연결하거나 그것을 다시 방채에 연결하여 끄는 방법이 가장 많지만 어구를 배의 좌우현에 직접 붙여서 끄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주로 표층에 부상하는 갑각류를 채취할 때 사용된다. 대상 생물에 따라 틀의 밑면에 갈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며, 갈퀴가 있는 것은 바닥 속 깊이 묻혀 서식하는 조개류를 대상으로, 갈퀴가 없는 것은 바닥 표면에 서식하는 조개류를 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틀의 형태도 사각형, 삼각형, 원형, 반원형 등이 있으며, 배틀방에서는 주로 사각형을, 손틀방에서는 삼각형이나 원형을 사용한다. 손틀방은 한 사람이 1개의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지만 배틀방은 대상 생물에 따라 선미에 1개의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와 양 현에 방채를 내어 어구 2~4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심 2~3m 이내의 천해나 강, 호수에서 주로 조업하는 바지락 채취기, 재첩 채취기 등 손틀방류가 있고 수심이 다소 깊은 연안에서 주로 조업하는 피조개 형망, 가리비 형망, 소라 형망 등 배틀방류가 있으며 배틀방류는 조개류 채취어업 중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손틀방류는 과거부터 어구구조 및 조업방법에 큰 변화 없이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다만 어구분류상 과거에는 잡어구류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배틀방류는 과거부터 끌어구류로 분류되었으며, 과거에 비해 대상 어종이 다양화되었고, 대상 어종의 다양화에 따라 어구구조 및 조업방법 등이 크게 발전되었다. 특히 조업 해역의 저질에 따라 수시로 예행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틀의 양측에 썰매판 장치를 하여 펄이나 모래가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어구구조 개량이 이루어졌으며, 어선의 대형화에 따라 어구규모도 다소 대형화되었다.

나) 지역별 어업실태

근해형망어업은 지역에 따라 제1구와 제2구로 나누어진다. 제1구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충청남도 연해 지역이며, 제2구는 전라북도 연해지역이다.

(1) 제1구

근해형망어업은 20톤미만의 어선을 이용하여 충남이북지역에서 형망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어선의 좌우현에 각각 데릭을 이용하여 형망틀을 부착하여 조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허가는 충북이북지역에 있으나 실질적인 조업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조업방법 또한 과거의 양쪽으로 끄는 방법으로 조업하는 것보다는 1개의 형망틀을 이용하여 뒤쪽에서 끌거나 측면으로 끄는 방법으로 많은 조업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조업구역에 있어서 제2구지역과 경계구역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약간을 마찰을 빚고 있었다.

(2) 제2구

20톤미만의 어선을 이용하여 전북지역에서 형망틀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며 주로 어선의 뒤쪽에 어구를 설치하여 조업을 행하고 있었다. 현재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자들 중에는 과거에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던 어업자들이 전업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제1구와의 조업구역 마찰로 인하여 지역내에 서로 다른 협회를 구성하여 어업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새만금 간척사업의 물막이공사가 완료된 이후 패류량의 감소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 평균연간어획금액

패류형망어업에서 어획한 어획물은 주로 비계통판매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업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어업자들의 조업활동으로 인하여 자료확보가 어려웠다. 그래서 조업의 형태가 유사한 연안조망어업의 평균연간어획금액 산정에 있어 안강망어업을 토대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패류형망어업의 평균연간어획금액은 근해안강망어업의 85%를 적용하였다.

3) 평년어업경비

평년어업경비는 근해안강망어업의 85%를 적용하였다.

4) 평년수익액

평년수익액은 근해안강망어업의 85%를 적용하였다.

마. 근해연승

1) 어업실태

가) 조업형태

근해연승어업은 총톤수가 신통수 8톤(구톤수 10톤)이상~90톤(구톤수 130톤) 미만인 동력선에 의하여 주낙어구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우리나라 근해에서 연승어업은 대상물을 일시에 여러 마리를 잡기 위하여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의 아릿줄을 달고, 아릿줄 마다 낚시 1개씩을 달아 수평으로 부설하여 대상물을 낚아 잡는다. 어구의 부설방법에 따라 멍이나 닳으로 고정시키는 고정낚시류와 해·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하는 흘림낚시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저에 서식하는 어종을 대상으로 할 때는 고정낚시류를 사용하고 표·중층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할 때는 흘림낚시류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 중 어업으로서 중요한 것은 멍태, 넙치, 농어, 복어, 가자미, 장어, 돔, 조피볼락, 볼락 주낙 등이 있으며, 이들 어구는 과거부터 어구구조 및 조업방법 등에 큰 변화 없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다만 낚시줄 재료로 과거에는 면사에 갈물을 먹여 사용하였으나, 현재에는 어구의 종류에 따라 나일론, 쿠라론, PE, 경심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선의 대형화로 어장을 외해로 확대하고 적당 사용 어구수를 증가시켜 조업하고 있다.

나) 지역별 어업실태

근해연승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은 다른 근해어업에서 사용하는 어선들과 달리 20~35톤 내외의 소규모 어선들이다. 그리고 연안연승어업과 달리 전국을 이동하면서 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제주도, 전남지역 등의 남해안지역에서 조업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근해연승어업은 다른 허가업종과 겸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타 업종에 비해 소극적인 어법에 속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개 이상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근해연승어업보다는 다른 허가업종으로 조업하는 경우가 많아 근해연승어업에 의한 조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서해안

연승어업은 주로 주낙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다른 허가를 동시에 득하여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연승어업보다는 겸업하고 있는 다른 허가어업으로 조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해안 지역에 비하여 연승어업은 발달되지 못하였으며 최근 들어 남해안 지역의 일부 어업자들이 여기에 맞추어 서해안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하고 있었다.

(2) 남해안

연승어업에 사용하고 있는 어구는 주로 장어주낙, 복어주낙, 갈치주낙, 돔주낙 등이며 타 지역에 비하여 활발한 조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30톤 전후의 어선들이 갈치, 복어, 돔 등을 주어획 어종으로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부산·경남지역에서도 장어와 복어 등을 주어획 어종으로 해서 조업활동을 하고 있다. 포획한 어획물은 활어, 빙장, 냉동 등 다양한 형태로의 보관을 통하여 수협위판과 사매매를 통하여 판매를 하고 있었다.

(3) 동해안

동해안도 서해안과 마찬가지로 주로 다른 허가를 동시에 득하여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연승어업보다는 겸업하고 있는 다른 허가어업으로 조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해안의 일부 어선들이 복어 어기에 맞추어 동해안 지역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하고 있었다.

2) 평균연간어획금액의 산출

평균연간어획금액의 산출방법에 의해 산정하였다.

<[별책] 표 53> 근해연승어업 평균연간어획금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균연간 어획금액	142,988	714,897	398,071

3) 평년어업경비

가) 평년어업경비 산출기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4의 'II.1.다'에서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 기산한 해당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년어업경비의 항목을 생산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기타잡비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경비항목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을 분류하였다.

(1) 생산관리비

(가)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 어구로 구분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25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연료 및 유류비

연료비는 선박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주연료비로 경유와 윤활유가 있다)와 취사 및 난방용 유류구입비(기타 연료비로 주로 LPG를 사용한다)로 구분되며 평균연간

어획금액에 0.1176을 적용하였다.

(다) 어구비

어구비는 당해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로서 어망, 로프, 부자, 침자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394를 적용하였다.

(라) 미끼대

미끼대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45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마)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1)항의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모품에 대한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42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바)운반비

운반비는 어획물 판매를 위한 운반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2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2) 인건비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와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로 나누어지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3767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선체, 기관, 의장품에 대하여 신규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게 산출되도록 정액법을 사용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598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4) 판매관리비

(가) 보관비

보관비는 어획물의 저장 또는 미끼보관을 위해 소요되는 물적 요소에 대한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6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용기대

용기대는 어획물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획물 판매시 회수되지 않는 어획물용기(목상자, 골판지상자, 스티로폼상자, PVC상자 등)와 어획물 포장에 소요되는 비닐종이 및 비닐끈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26을 적용하였다.

(다)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어획물을 수협 위판장을 통하여 계통판매할 때 발생하는 위탁판매 수수료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473을 적용하였다.

(라) 판매잡비

판매잡비는 주로 하역비나 진열비 등을 포함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6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5) 기타잡비

(가)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은 어선에 대한 재산세, 선박점사료, 어선입출항 수속비 조합비, 항만수수료, 청항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13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나) 주부식비

주부식비는 승선원들의 선내 식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식비와 부식비 및 식수대 등이 포함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8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근해어업의 경우 의료비(선내비치 약품비 및 방제소독비), 의료보험료(선주 부담분), 작업복비, 기호용품(술, 담배) 구입비, 선내오락용품(서적, 비디오테이프, 장기, 바둑, 화투) 구입비, 회식비, 숙박비, 자녀학자금 지원비 등 다양한 비용이 지출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16을 적용하였다.

(라) 보험료 및 공제료

보험료 및 공제료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18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마) 사무비

사무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무용 소모품비, 사무원급료, 사무실임대료 및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세무장부 기장비, 인쇄비, 기타 사용경비가 포함되며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9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바) 기타비용

이상에서 산출되지 않은 기타 어업비용으로서 평균연간어획금액에 0.0007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평년어업경비

이상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어업경비항목별 경비율 및 평년어업경비율은 다음과 같다.

<[별책] 표 54> 근해연승어업 어업경비항목별 평년어업경비율

어업경비항목	경비율
I. 생산관리비	
1. 유지보수비	0.0250
2. 연료및유류비	0.1176
3. 소모품비	0.0422
4. 미끼비	0.0459
5. 어구비	0.0394
6. 어장막관리비	-
7. 운반비	0.0025

어업경비항목	경비율
Ⅱ.인건비	0.3767
Ⅲ.감가상각비	0.0598
Ⅳ.판매관리비	
1.가공비	-
2.보관비	0.0062
3.용기대	0.0126
4.판매수수료	0.0473
5.판매잡비	0.0062
Ⅴ.기타잡비	
1.제세공과금	0.0013
2.주부식비	0.0181
3.복리후생비	0.0116
4.보험료및공제료	0.0182
5.사무비	0.0094
6.기타비용	0.0007
평년어업경비율	0.8407

4) 평년수익액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 Ⅱ.1에서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평균연간어획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하여 평년수익액을 산정하였다.

<[별책] 표 55> 근해연승어업 평년수익액

구분	최저금액 (천원)	최고금액 (천원)	평균금액 (천원)
평년수익액	23,186	115,891	64,069

제4절 평년수익액 분석

평년수익액 자료를 기초로 업종간, 어선규모간의 상관관계 및 평년수익액 추정 모형을 통한 평년수익액 예측을 위하여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1. 허가업종별 톤수(또는 마력수) 구간에 따른 (기대)평년수익액의 산출 허가업종별로 적합된 회귀직선과 이차 회귀곡선을 이용하여 톤수(또는 마력수)를

적절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속하는 어선들의 평균톤수(또는 평균마력수)에서 적합된 회귀직선의 값을 계산하여 그 구간을 대표하는 (기대) 평년수익액을 산출한다.

가. 대형기저(외끌이)

1) 톤수에 의한 평년수익액의 산출

평년수익액의 톤수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유의확률은 0.614로 유의성을 찾을 수 없다. (기대)평년수익액은 전체 평균인 105,121(천원)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2) 마력수에 의한 평년수익액의 산출

평년수익액의 마력수에 대한 회귀분석은 유의확률이 0.006으로 유의하므로, 마력수를 550마력 미만, 550마력 이상 700마력 미만, 700마력 이상의 3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기대) 평년수익액을 산출한다.

구간	(기대) 평년수익액 (단위:천원)
550마력 미만	$74,741.61 + 55.67 \times 399.00 = 96,953.94$
550마력 이상 ~700마력 미만	$74,741.61 + 55.67 \times 619.25 = 109,215.26$
700마력 이상	$74,741.61 + 55.67 \times 780.40 = 118,186.48$

대형기저(외끌이)어업의 평년수익액을 톤수와 마력수를 기준으로 하여 구간별 (기대)평년수익액을 산출하여 검토한 결과, 마력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더 유의하기는 하나 급간 차이가 크지 않고 마력수에 의할 경우에는 기관변경 등의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으므로 톤수에 의해 평년수익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의한 전체 평균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대형기저(쌍끌이)

1) 톤수에 의한 평년수익액의 산출($R^2 = 0.72$)

톤수를 130톤 미만, 130톤 이상의 2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기대) 평년수익액을 산출한다.

구간	(기대) 평년수익액 (단위:천원)
130톤 미만	$-13,950.81 + 1,980.55 \times 95.67 = 175,528.41$
130톤 이상	$-13,950.81 + 1,980.55 \times 136.00 = 255,403.99$

2) 마력수에 의한 평년수익액의 산출($R^2=0.406$)

마력수를 800마력 미만, 800마력 이상 1600마력 미만, 1600마력 이상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기대) 평년수익액을 산출한다.

구간	(기대) 평년수익액 (단위:천원)
800마력 미만	$140,937.20 + 80.43 \times 600.00 = 189,195.20$
800마력 이상 ~1600마력 미만	$140,937.20 + 80.43 \times 1232.92 = 240,100.96$
1600마력이상	$140,937.20 + 80.43 \times 1740.00 = 280,885.40$

대형기저(쌍끌이)어업의 평년수익액을 톤수와 마력수를 기준으로 하여 구간별 (기대)평년수익액을 산출하여 검토한 결과, 2가지 모두 회귀직선식이 유의하기는 하나 톤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년수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 동해구기저

평년수익액의 톤수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톤수가 증가할수록 평년 수익액이 감소하는 기현상이 있으나 (유의확률 0.168), 이는 유의수준 5%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며, 마력수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마력수가 증가할수록 평년수익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유의확률 0.094), 이 또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므로 동해구기저의 경우 (기대)평년수익액은 전체 평균인 117,646.35(천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라. 외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

외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의 경우도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과 마찬가지로 (기대) 평년수익액은 전체 평균인 178,389(천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 쌍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

쌍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의 경우는 전체 허가정수가 10건 밖에 없고 해당어업 종사자들의 협조부족 등으로 인하여 (기대)평년수익액을 구분하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구간	(기대) 평년수익액 (단위:천원)
50톤 미만	181,860
50톤 이상	294,580

바. 대형트롤

평년수익액의 톤수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유의확률은 0.344로 유의성을 찾을 수 없으며, 평년수익액의 마력수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도 유의확률이 0.414로 유의성이 없으므로, (기대)평년수익액은 전체 평균인 211,916.71(천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 동해구트롤

1) 톤수에 의한 평균수익액의 산출 ($R^2=0.539$)

톤수를 40톤 미만, 40톤 이상의 두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기대)평년수익액을 산출한다.

구간	(기대) 평년수익액 (단위:천원)
40톤 미만	$9,012.34 + 3,443.76 \times 23.333 = 89,365.59$
40톤 이상	$9,012.34 + 3,443.76 \times 58.333 = 209,897.19$

2) 마력수에 의한 평균수익액의 산출($R^2=0.433$)

구간	(기대) 평년수익액 (단위:천원)
700마력 미만	$32,275.45 + 209.28 \times 461.56 = 128,870.73$
700마력 이상	$32,275.45 + 209.28 \times 947.86 = 230,643.59$

동해구트롤어업의 평년수익액을 톤수와 마력수를 기준으로 하여 구간별 (기대)평년수익액을 산출하여 검토한 결과, 2가지 경우 모두 회귀직선식이 유의하기는 하나 어선의 톤급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톤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년수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 대형선망

대형선망의 경우 선형모형 적합결과 결정계수가 $R^2=0.005$ 로서 0에 가깝고, 유의확률은 0.731로 아주 커서 톤수에 의한 평년수익액의 변화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대)평년수익액은 전체평균인 771,694(천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본선톤수 100톤이상 기준).

본선 톤수가 100톤미만인 대형선망의 (기대)평년수익액은 본선 톤수 100톤 이상의 (기대)평년수익액의 60% 수준인 463,016(천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자. 소형선망

소형선망의 경우 선형모형 적합결과 결정계수가 $R^2=0.004$ 로서 0에 가깝고, 유의 확률은 0.845로 아주 커서 톤수에 의한 평년수익액의 변화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대) 평년수익액은 전체평균인 66,054(천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차. 채낚기

톤수를 35톤 미만, 35톤 이상 65톤 미만, 65톤 이상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기대)평년수익액을 산출한다.

구간	(기대) 평년수익액 (단위:천원)
35톤 미만	$51,705.04 + 415.54 \times 20.82 = 60,356.58$
35톤 이상 ~65톤 미만	$51,705.04 + 415.54 \times 51.16 = 72,964.07$
65톤 이상	$51,705.04 + 415.54 \times 76.40 = 83,452.30$

카. 기선권현망

1) 본선톤수에 의한 평년수익액의 산출 ($R^2=0.256$)

본선톤수를 20톤 미만, 20톤 이상 30톤 미만, 30톤 이상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기대) 평년수익액을 산출한다.

구간	(기대) 평년수익액 (단위:천원)
20톤 미만	$61,956.60 + 4,352.04 \times 18.250 = 141,381.33$
20톤 이상 ~30톤 미만	$61,956.60 + 4,352.04 \times 25.583 = 173,294.84$
30톤 이상	$61,956.60 + 4,352.04 \times 33.857 = 209,303.62$

2) 총톤수에 의한 평년수익액의 산출 ($R^2=0.624$)

총톤수(선단에 포함된 모든 어선 톤수의 합)를 240톤 미만, 240톤 이상의 두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기대) 평년수익액을 산출한다.

구간	(기대) 평년수익액 (단위:천원)
240톤 미만	$64,765.52 + 583.34 \times 164.42 = 160,678.28$
240톤 이상	$64,765.52 + 583.34 \times 272.22 = 223,562.33$

기선권현망어업의 평년수익액을 본선톤수와 총톤수를 기준으로 하여 구간별 (기대) 평년수익액을 산출하여 검토한 결과, 2가지 경우 모두 회귀직선식이 유의하기는 하나 총톤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년수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타. 자망

톤수를 35톤 미만, 35톤 이상 65톤 미만, 65톤 이상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기대)평년수익액을 산출한다.

구간	(기대) 평년수익액 (단위:천원)
35톤 미만	$36,892.34 + 830.95 \times 18.80 = 52,514.20$
35톤 이상 ~65톤 미만	$36,892.34 + 830.95 \times 47.96 = 76,744.70$
65톤 이상	$36,892.34 + 830.95 \times 68.68 = 93,961.99$

파. 안강망

톤수를 35톤 미만, 35톤 이상 65톤 미만, 65톤 이상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기대)평년수익액을 산출한다.

구간	(기대) 평년수익액 (단위:천원)
35톤 미만	$42,623.40 + 645.02 \times 19.045 = 54,907.81$
35톤 이상 ~65톤 미만	$42,623.40 + 645.02 \times 53.667 = 77,239.69$
65톤 이상	$42,623.40 + 645.02 \times 73.797 = 90,223.94$

하. 봉수망

근해채낚기 (기대)평년수익액의 50%를 적용한다.

구간	(기대) 평년수익액 (단위:천원)
35톤 미만	$60,356.58 \times 50\% = 30,178.29$
35톤 이상 ~ 65톤 미만	$72,964.07 \times 50\% = 36,482.03$

구간	(기대) 평년수익액 (단위:천원)
65톤 이상	$83,452.30 \times 50\% = 41,726.15$

가. 자리돔들망

붕수망어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구간	(기대) 평년수익액 (단위:천원)
35톤 미만	$60,356.58 \times 50\% = 30,178.29$
35톤 이상 ~65톤 미만	$72,964.07 \times 50\% = 36,482.03$
65톤 이상	$83,452.30 \times 50\% = 41,726.15$

나. 잠수기

잠수기어업은 잠수부가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하여 어선 등의 시설물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잠수부의 능력에 의하여 어획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선의 톤수나 기관마력과 관련시켜 (기대)평년수익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평균한 금액을 (기대)평년수익액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구간	(기대) 평년수익액 (단위:천원)
1구	79,000
2구	45,915
3구	47,174
4구	45,632
5구	70,099
전체	49,669

다. 통발

톤수를 35톤 미만, 35톤 이상 65톤 미만, 65톤 이상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기대)평년수익액을 산출한다.

구간	(기대) 평년수익액 (단위:천원)
35톤 미만	$51,685.80 + 686.90 \times 14.392 = 61,571.66$

구간	(기대) 평년수익액 (단위:천원)
35톤 이상 ~65톤 미만	$51,685.80 + 686.90 \times 46.080 = 83,338.15$
65톤 이상	$51,685.80 + 686.90 \times 73.250 = 102,001.23$

통발어업은 수협위판 등을 통한 계통판매가 타업종에 비하여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며 특히, 장어통발어업과 문어단지어업의 경우는 비계통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어 장어통발어업과 문어단지어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조사된 자료들 중에서도 해당어업의 실태를 반영하는 자료로 사용하는데 적합하지 못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일부였다. 그러나 증빙자료 등은 미흡하였으나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해당어업의 전반적인 실태 및 경영실태와 기평가자료 등을 비교해 보면 어획금액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경비를 제하고 난 후의 수익액에 있어서는 업종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어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발어업 전체에 대한 적합된 회귀직선식을 구하였다.

구해진 회귀직선식을 기초하여 다시 기타통발어업, 장어통발어업, 문어단지어업으로 구분하고 어업별로 톤수를 기준으로 35톤 미만, 35톤 이상 65톤 미만, 65톤 이상의 세 구간으로 나누었다. 구간별 적용톤수는 어업별로 허가처분 된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톤수를 구하였으며 이를 회귀직선식에 적용하여 어업별·구간별 (기대)평년 수익액을 산정하였다.

1) 장어통발

구간	(기대) 평년수익액 (단위:천원)
35톤 미만	$51,685.80 + 686.90 \times 24.678 = 68,637.12$
35톤 이상 ~65톤 미만	$51,685.80 + 686.90 \times 46.083 = 83,340.21$
65톤 이상	$51,685.80 + 686.90 \times 76.397 = 104,162.90$

2) 기타통발

구간	(기대) 평년수익액 (단위:천원)
35톤 미만	$51,685.80 + 686.90 \times 18.765 = 64,575.48$
35톤 이상 ~65톤 미만	$51,685.80 + 686.90 \times 47.260 = 84,148.69$
65톤 이상	$51,685.80 + 686.90 \times 75.480 = 103,533.01$

3) 문어단지

구간	(기대) 평년수익액 (단위:천원)
전체	$51,685.80 + 686.90 \times 14.997 = 61,987.24$

라. 패류형망

패류형망어업에 대한 자료의 협조가 미흡하여 패류형망의 자료에 의한 분석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유사한 형태로 조업을 하는 연안조망어업을 참조하여 근해안강망어업의 85%를 적용하였다.

구간	(기대) 평년수익액 (단위:천원)
전체	$54,907.81 \times 85\% = 46,671.64$

마. 연승

톤수를 20톤 미만, 20톤 이상 35톤 미만, 35톤 이상의 세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기대) 평년수익액을 산출한다.

구간	(기대) 평년수익액 (단위:천원)
20톤 미만	$41,103.18 + 892.57 \times 14.351 = 53,912.45$
20톤 이상 ~35톤 미만	$41,103.18 + 892.57 \times 26.990 = 65,193.64$
35톤 이상	$41,103.18 + 892.57 \times 40.526 = 77,275.47$

2. 업종별 (기대)평년수익액

허가업종	구분	평년수익액 (천원)	평년수익액 × 3년(천원)						
			100%	90%	80%	70%	60%	50%	
대형기저 (외끌이)	톤수에 유의성 없음	105,121	315,363	283,826	252,290	220,754	189,218	157,681	
	마력적용 경우	550마력미만	96,953.94	290,862	261,776	232,689	203,603	174,517	145,431
		550마력이상 ~700마력미만	109,215.26	327,646	294,881	262,117	229,352	196,587	163,823
		700마력이상	118,186.48	354,559	319,103	283,648	248,192	212,736	177,280

대형기저 (쌍끌이)	톤수적용 경우	130톤미만	175,528.41	526,585	473,927	421,268	368,610	315,951	263,293
		130톤이상	255,403.99	766,212	689,591	612,970	536,348	459,727	383,106
	마력적용 경우	800마력미만	189,195.20	567,586	510,827	454,068	397,310	340,551	283,793
		800마력이상 ~1600마력미만	240,100.96	720,303	648,273	576,242	504,212	432,182	360,151
		1600마력이상	280,885.40	842,656	758,391	674,125	589,859	505,594	421,328
동해구 기저	톤수,마력에유의성없음		117,646	352,939	317,645	282,351	247,057	211,763	176,470
서남구 (외끌이)	톤수,마력에 유의성없음		178,389	535,167	481,650	428,134	374,617	321,100	267,584
서남구 (쌍끌이)	톤수적용 경우	50톤미만	181,860	545,580	491,022	436,464	381,906	327,348	272,790
		50톤이상	294,580	883,740	795,366	706,992	618,618	530,244	441,870
대형트롤	톤수,마력에 유의성없음		211,916.71	635,750	572,175	508,600	445,025	381,450	317,875
동해구 트롤	톤수적용 경우	40톤미만	89,365.59	268,097	241,287	214,477	187,668	160,858	134,048
		40톤이상	209,897.19	629,692	566,722	503,753	440,784	377,815	314,846
	마력적용 경우	700마력이상	128,870.73	386,612	347,951	309,290	270,629	231,967	193,306
		700마력이하	230,643.59	691,931	622,738	553,545	484,352	415,158	345,965
대형선망	톤수적용 경우	100톤미만	463,016	1,389,048	1,250,143	1,111,238	972,334	833,429	694,524
		100톤이상	771,694	2,315,082	2,083,574	1,852,066	1,620,557	1,389,049	1,157,541
소형선망	톤수,마력에 유의성없음		66,054	198,162	178,346	158,530	138,713	118,897	99,081
채낚기	톤수적용 경우	35톤미만	60,356.58	181,070	162,963	144,856	126,749	108,642	90,535
		35톤이상 ~65톤미만	72,964.07	218,892	197,003	175,114	153,225	131,335	109,446
		65톤이상	83,452.30	250,357	225,321	200,286	175,250	150,214	125,178
허가업종	구분		평년수익액 (천원)	평년수익액 × 3년(천원)					
				100%	90%	80%	70%	60%	50%
기선 권현망	본선 톤수적용 경우	20톤미만	141,381.33	424,144	381,730	339,315	296,901	254,486	212,072
		20톤이상 ~30톤미만	173,294.84	519,885	467,896	415,908	363,919	311,931	259,942
		30톤이상	209,303.62	627,911	565,120	502,329	439,538	376,747	313,955
	총톤수 적용 경우	240톤미만	160,678.28	482,035	433,831	385,628	337,424	289,221	241,017
		240톤이상	223,562.33	670,687	603,618	536,550	469,481	402,412	335,344
자망	톤수적용 경우	35톤미만	52,514.20	157,543	141,788	126,034	110,280	94,526	78,771
		35톤이상 ~65톤미만	76,744.70	230,234	207,211	184,187	161,164	138,140	115,117
		65톤이상	93,961.99	281,886	253,697	225,509	197,320	169,132	140,943

근해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용역

안강망	톤수적용 경우	35톤미만	54,907.81	164,723	148,251	131,779	115,306	98,834	82,362
		35톤이상 ~65톤미만	77,239.69	231,719	208,547	185,375	162,203	139,031	115,860
		65톤이상	90,223.94	270,672	243,605	216,537	189,470	162,403	135,336
봉수망	톤수적용 경우	35톤미만	30,178.29	90,535	81,481	72,428	63,374	54,321	45,267
		35톤이상~ 65톤미만	36,482.03	109,446	98,501	87,557	76,612	65,668	54,723
		65톤이상	41,726.15	125,178	112,661	100,143	87,625	75,107	62,589
자리돔 들망	톤수적용 경우	35톤미만	30,178.29	90,535	81,481	72,428	63,374	54,321	45,267
		35톤이상~ 65톤미만	36,482.03	109,446	98,501	87,557	76,612	65,668	54,723
		65톤이상	41,726.15	125,178	112,661	100,143	87,625	75,107	62,589
잠수기	톤수,마력 에 유의성없 음	1구	79,000	237,000	213,300	189,600	165,900	142,200	118,500
		2구	45,915	137,745	123,971	110,196	96,422	82,647	68,873
		3구	47,174	141,522	127,370	113,218	99,065	84,913	70,761
		4구	45,632	136,896	123,206	109,517	95,827	82,138	68,448
		5구	70,099	210,297	189,267	168,238	147,208	126,178	105,149
전체	49,669	149,007	134,106	119,206	104,305	89,404	74,504		
통발	톤수적용 경우	35톤미만	61,571.66	184,715	166,243	147,772	129,300	110,829	92,357
		35톤이상 ~65톤미만	83,338.15	250,014	225,013	200,012	175,010	150,009	125,007
		65톤이상	102,001.23	306,004	275,403	244,803	214,203	183,602	153,002
허가업종	구분	평년수익액 (천원)	평년수익액 × 3년(천원)						
			100%	90%	80%	70%	60%	50%	
장어통발	톤수적용 경우	35톤미만	68,637.12	205,911	185,320	164,729	144,138	123,547	102,956
		35톤이상 ~65톤미만	83,340.21	250,021	225,019	200,017	175,014	150,012	125,010
		65톤이상	104,162.90	312,489	281,240	249,991	218,742	187,493	156,244
기타통발	톤수적용 경우	35톤미만	64,575.48	193,726	174,354	154,981	135,609	116,236	96,863
		35톤이상 ~65톤미만	84,148.69	252,446	227,201	201,957	176,712	151,468	126,223
		65톤이상	103,533.01	310,599	279,539	248,479	217,419	186,359	155,300
문어단지	톤수적용	40톤미만	61,987.24	185,962	167,366	148,769	130,173	111,577	92,981
패류형망	톤수,마력에 유의성없음		46,671.64	140,015	126,013	112,012	98,010	84,009	70,007
연승	톤수적용 경우	20톤미만	53,912.45	161,737	145,564	129,390	113,216	97,042	80,869
		20톤이상 ~35톤미만	65,193.64	195,581	176,023	156,465	136,907	117,349	97,790
		35톤이상	77,275.47	231,826	208,644	185,461	162,278	139,096	115,913

부 록

별책부록 I

[별책] 부 록 I

1. 어업별 평년수익액

1)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	65	582	740,900	628,675	112,225
2	69	800	847,356	719,007	128,349
3	60	450	623,238	528,836	94,402
4	79	650	617,080	523,612	93,468
5	62	660	582,978	494,671	88,307
6	70	420	641,150	544,036	97,114
7	59	350	606,252	514,424	91,828
8	69	420	620,453	526,473	93,980
9	61	350	590,147	500,758	89,389
10	70	350	629,278	533,960	95,318
11	65	776	628,248	533,087	95,161
12	65	450	757,372	642,653	114,719
13	65	776	742,130	629,722	112,408
14	61	775	878,281	745,250	133,031
15	54	300	642,952	545,565	97,387
16	69	775	943,618	800,691	142,927
17	67	585	783,772	665,054	118,718
18	64	500	624,959	530,293	94,666
19	71	400	685,987	582,087	103,900

2)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	135	850	2,960,617	2,702,444	258,173
2	133	1300	3,117,762	2,845,886	271,876
3	139	1740	3,133,192	2,859,971	273,221
4	138	1740	3,232,732	2,950,830	281,902
5	138	1740	3,177,703	2,900,599	277,104
6	134	1100	2,915,521	2,661,279	254,242
7	132	1300	2,650,876	2,419,712	231,164
8	133	1200	2,592,652	2,366,563	226,089
9	135	1400	2,514,623	2,295,339	219,284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0	135	1400	2,575,919	2,351,291	224,628
11	135	1100	3,235,116	2,953,007	282,109
12	139	1305	3,155,335	2,880,182	275,153
13	120	1300	2,099,321	1,916,252	183,069
14	99	750	1,821,821	1,662,951	158,870
15	139	1270	3,131,363	2,858,298	273,065
16	139	1270	3,038,784	2,773,794	264,990
17	68	450	1,689,058	1,541,765	147,293

3) 동해구기선저인망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	54	420	418,304	291,676	126,628
2	59	420	293,911	204,937	88,974
3	35	537	430,658	300,292	130,366
4	45	300	152,923	106,625	46,298
5	56	330	427,141	297,837	129,304
6	59	450	365,616	254,939	110,677
7	38	540	652,236	454,799	197,437
8	35	350	526,431	367,075	159,356
9	29	465	558,159	389,196	168,963
10	33	500	357,205	249,073	108,132
11	53	430	228,764	159,510	69,254
12	59	375	264,786	184,628	80,158
13	59	450	376,108	262,252	113,856

4) 외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	57	350	705,744	541,722	164,022
2	57	550	577,675	443,416	134,259
3	57	450	726,693	557,801	168,892
4	57	500	731,324	561,356	169,968
5	57	500	718,588	551,579	167,009
6	55	550	710,736	545,555	165,181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7	54	540	775,030	594,904	180,126
8	59	550	694,675	533,225	161,450
9	57	500	780,531	599,125	181,406
10	57	540	732,689	562,403	170,286
11	57	550	788,236	605,042	183,194
12	57	540	662,756	508,723	154,033
13	55	340	745,589	572,304	173,285
14	56	440	773,596	593,801	179,795
15	59	540	741,321	569,030	172,291
16	53	450	747,065	573,439	173,626
17	51	450	827,683	635,321	192,362
18	54	350	802,594	616,063	186,531
19	39	530	764,449	586,783	177,666
20	47	440	776,025	595,669	180,356
21	39	441	726,033	557,295	168,738
22	39	537	889,588	682,839	206,749
23	39	485	903,090	693,204	209,886
24	39	500	921,363	707,228	214,135
25	39	537	744,351	571,357	172,994
26	39	537	865,786	664,572	201,214
27	48	441	772,715	593,130	179,585
28	36	507	850,479	652,819	197,660
29	41	470	751,972	577,205	174,767
30	44	547	818,344	628,153	190,191

5)쌍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	39	530	1,605,042	1,423,182	181,860
2	53	530	2,600,000	2,305,420	294,580

6) 대형트롤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	139	1740	2,468,365	2,220,848	247,517
2	139	1300	2,201,071	1,980,355	220,716
3	139	1415	2,610,723	2,348,931	261,792
4	139	1400	2,012,992	1,811,134	201,858
5	138	1470	2,184,672	1,965,602	219,070
6	139	1415	2,433,095	2,189,114	243,981
7	139	1727	2,079,650	1,871,110	208,540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8	139	1300	1,943,306	1,748,436	194,870
9	139	1415	2,037,948	1,833,589	204,359
10	139	1415	1,914,250	1,722,298	191,952
11	139	1500	2,258,222	2,031,775	226,447
12	139	1415	2,218,109	1,995,686	222,423
13	134	1700	1,879,144	1,690,710	188,434
14	139	1450	1,878,604	1,690,226	188,378
15	139	1600	2,080,845	1,872,184	208,661
16	139	1265	1,895,732	1,705,633	190,099
17	139	1300	1,829,813	1,646,326	183,487

7) 동해구트롤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	55	805	710,560	570,909	139,651
2	57	400	379,376	304,811	74,565
3	21	600	426,738	342,865	83,873
4	59	1000	1,044,067	838,875	205,192
5	59	350	733,947	589,701	144,246
6	21	380	419,306	336,894	82,412
7	22	560	483,835	388,741	95,094
8	59	1000	1,421,823	1,142,393	279,430
9	26	588	499,412	401,258	98,154
10	59	730	1,457,438	1,171,007	286,431
11	59	400	1,485,361	1,193,442	291,919
12	59	700	1,099,625	883,514	216,111
13	21	388	427,363	343,368	83,995
14	29	488	535,159	429,979	105,180
15	59	1200	1,216,259	977,226	239,033

8) 대형선망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	115	1710	6,565,462	5,907,113	658,349
2	121	1170	10,394,149	9,351,885	1,042,264
3	124	1000	8,955,048	8,057,090	897,958
4	127	2000	6,050,262	5,443,575	606,687
5	128	2400	7,196,267	6,474,667	721,600
6	129	1170	10,094,107	9,081,930	1,012,177
7	129	1080	9,885,212	8,893,984	991,228
8	129	2400	8,295,275	7,463,475	831,800
9	129	2405	6,624,813	5,960,515	664,298
10	129	1170	9,966,502	8,967,124	999,378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1	129	2400	9,278,738	8,348,322	930,416
12	129	1170	6,456,243	5,808,848	647,395
13	129	1600	5,597,981	5,036,648	561,333
14	129	1170	8,447,095	7,600,069	847,026
15	129		4,827,957	4,343,837	484,120
16	129	1170	7,353,340	6,615,988	737,352
17	129	2400	7,188,066	6,467,288	720,778
18	129	2400	10,921,717	9,826,553	1,095,164
19	129	1170	7,752,381	6,975,019	777,362
20	129	2400	6,751,483	6,074,481	677,002
21	129	2000	6,308,834	5,676,217	632,617
22	129	2000	9,483,599	8,532,640	950,959
23	129	1600	6,367,557	5,729,055	638,502
24	118	1100	6,285,252	5,655,003	630,249

9) 소형선망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	15	388	324,862	276,190	48,672
2	13	350	438,317	372,648	65,669
3	12	305	477,223	405,727	71,496
4	12	340	438,091	372,456	65,635
5	19	350	400,610	340,589	60,021
6	21	370	349,426	297,073	52,353
7	14	260	375,596	319,326	56,270
8	19	252	279,491	237,617	41,874
9	19	315	416,436	354,047	62,389
10	16	485	664,104	564,616	99,488
11	19	528	685,725	582,996	102,729

10) 근해채낚기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	9.77	360	275,246	238,493	36,753
2	9.77	618	229,236	198,624	30,612
3	9.77	550	293,496	254,307	39,189
4	9.77		227,087	196,765	30,322
5	10	315	295,285	255,855	39,430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6	15	510	526,999	456,637	70,362
7	16		472,198	409,150	63,048
8	16	440	488,377	423,170	65,207
9	17	550	352,524	305,453	47,071
10	17	450	358,546	310,672	47,874
11	18		438,737	380,157	58,580
12	18	600	478,887	414,945	63,942
13	19	600	401,212	347,642	53,570
14	21	463	501,068	434,168	66,900
15	22	470	265,497	230,045	35,452
16	23	507	276,629	239,691	36,938
17	24	507	405,291	351,176	54,115
18	24	507	446,306	386,715	59,591
19	26	720	395,568	342,751	52,817
20	29	588	474,683	411,305	63,378
21	29	608	481,745	417,424	64,321
22	29	600	496,106	429,867	66,239
23	29	485	573,759	497,154	76,605
24	29	507	574,123	497,471	76,652
25	29	608	755,334	654,490	100,844
26	29	953	787,537	682,393	105,144
27	34	585	428,845	371,585	57,260
28	39	600	382,026	331,018	51,008
29	39	720	460,225	398,776	61,449
30	39	485	474,035	410,744	63,291
31	40	588	288,552	250,022	38,530
32	42	458	423,340	366,817	56,523
33	43	720	350,682	303,856	46,826
34	46	490	500,199	433,414	66,785
35	52	659	311,480	269,888	41,592
36	53	450	1,222,416	1,059,215	163,201
37	54	1000	1,487,586	1,288,984	198,602
38	57	570	411,847	356,855	54,992
39	58	1500	365,988	317,119	48,869
40	58	1250	430,727	373,217	57,510
41	58	550	878,858	761,521	117,337
42	58	1070	1,091,462	945,742	145,720
44	59	470	448,912	388,973	59,939
45	59	1500	684,195	592,845	91,350
46	59	1000	972,608	842,756	129,852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47	59	1000	1,566,828	1,357,649	209,179
49	69	458	493,921	427,975	65,946
50	69	670	519,862	450,451	69,411
51	69	252	549,770	476,368	73,402
52	69	315	565,404	489,915	75,489
53	69	485	579,528	502,153	77,375
54	69	560	583,725	505,788	77,937
55	71	600	554,960	480,865	74,095
56	71	485	608,183	526,981	81,202
57	72	340	553,748	479,813	73,935
58	72	510	609,783	528,371	81,412
59	75	680	415,507	360,026	55,481
60	77	476	453,287	392,764	60,523
61	79	570	533,810	462,539	71,271
62	79	415	557,534	483,095	74,439
63	82	526	439,431	380,758	58,673
64	85	500	448,018	388,200	59,818
65	86	300	461,963	400,285	61,678
66	87	600	564,721	489,323	75,398
67	89	720	548,082	474,902	73,180
68	89	458	595,476	515,970	79,506

11) 기선권현망

연번	톤수	총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	32	249	350	2,270,357	2,036,276	234,081
2	23	250	344	2,563,653	2,299,330	264,323
3	32	166	350	1,831,785	1,642,921	188,864
4	27	252	344	2,391,392	2,144,831	246,561
5	29	186	344	1,634,575	1,466,044	168,531
6	32	230	338	1,691,823	1,517,388	174,435
7	20	179	350	1,590,364	1,426,389	163,975
8	29	285	400	2,434,048	2,183,089	250,959
9	35	271	344	2,339,604	2,098,385	241,219
10	18	126	350	1,831,987	1,643,098	188,889
11	17	160	350	1,343,756	1,205,205	138,551
12	24	115	327	1,300,720	1,166,606	134,114
13	29	265	344	2,118,710	1,900,261	218,449
14	25	212	344	1,321,997	1,185,690	136,307
15	29	194	345	1,284,662	1,152,206	132,456
16	27	202	345	1,832,065	1,643,171	188,894

연번	톤수	총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7	27	209	344	1,470,490	1,318,874	151,616
18	19	98	350	1,148,953	1,030,486	118,467
19	35	261	344	2,522,268	2,262,215	260,053
20	27	234	340	1,818,341	1,630,862	187,479
21	29	286	350	2,322,749	2,083,265	239,484
22	29	142	344	1,464,690	1,313,671	151,019
23	32	218	218	1,542,708	1,383,648	159,060
24	24	183	344	1,301,687	1,167,476	134,211
25	27	188	350	1,335,276	1,197,603	137,673
26	39	331	344	2,360,537	2,117,158	243,379
27	21	135	322	1,404,167	1,259,389	144,778
28	29	195	340	1,482,947	1,330,047	152,900
29	25	149	350	1,391,020	1,247,596	143,424
30	19	99	315	1,241,853	1,113,810	128,043
31	28	101	338	1,184,194	1,062,094	122,100
32	22	112	300	1,822,116	1,634,247	187,869
33	22	183	320	1,686,852	1,512,929	173,923
34	22	112	344	1,171,110	1,050,361	120,749
35	20	147	344	1,580,190	1,417,263	162,927

12) 근해자망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	9.77		142,779	116,755	26,024
2	9.77		158,670	129,752	28,918
3	9.77		231,149	189,023	42,126
4	9.77	588	317,880	259,953	57,927
5	9.77	281	275,627	225,397	50,230
6	9.77	295	193,643	158,349	35,294
7	9.77	305	149,900	122,577	27,323
8	9.77	320	341,135	278,972	62,163
9	10	238	209,524	171,339	38,185
10	10	265	261,214	213,609	47,605
11	10	265	305,030	249,445	55,585
12	11	254	428,154	350,135	78,019
13	11		317,154	259,361	57,793
14	11	365	228,304	186,697	41,607
15	11	270	193,992	158,637	35,355
16	12	360	188,567	154,200	34,367
17	12	670	478,885	391,623	87,262
18	12	458	169,325	138,465	30,860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9	12	380	529,853	433,304	96,549
20	12	316	179,999	147,186	32,813
21	12		160,141	130,955	29,186
22	12	367	340,653	278,576	62,077
23	13	315	165,383	135,242	30,141
24	13	265	217,135	177,562	39,573
25	13	252	295,622	241,749	53,873
26	13	388	268,897	219,893	49,004
27	13	265	435,215	355,907	79,308
28	13	265	454,162	371,404	82,758
29	13	340	264,903	216,631	48,272
30	14	360	180,769	147,825	32,944
31	14	325	381,519	311,999	69,520
32	14	350	281,629	230,308	51,321
33	14	480	154,064	125,985	28,079
34	14	420	336,778	275,410	61,368
35	14	431	184,161	150,598	33,563
36	14	290	164,887	134,837	30,050
37	14		183,078	149,709	33,369
38	14	133	282,944	231,383	51,561
39	14	281	166,467	136,126	30,341
40	14	500	158,521	129,629	28,892
41	15	380	182,595	149,317	33,278
42	15	340	202,480	165,578	36,902
43	15	340	229,166	187,402	41,764
44	16	290	383,311	313,463	69,848
45	16	246	307,386	251,373	56,013
46	16	500	198,523	162,341	36,182
47	16	470	173,686	142,030	31,656
48	16	315	245,440	200,711	44,729
49	16	315	175,493	143,510	31,983
50	16	350	192,033	157,037	34,996
51	16	380	164,386	134,426	29,960
52	16	365	224,917	183,929	40,988
53	17	507	151,134	123,589	27,545
54	17	325	175,247	143,307	31,940
55	17	380	183,868	150,359	33,509
56	18	480	247,809	202,649	45,160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57	18	360	212,790	174,009	38,781
58	18	482	178,760	146,182	32,578
59	18	1217	301,251	246,353	54,898
60	18	254	473,122	386,912	86,210
61	18	350	180,797	147,846	32,951
62	18	450	228,375	186,756	41,619
63	18	400	199,139	162,848	36,291
64	18	315	333,315	272,576	60,739
65	19	315	152,795	124,948	27,847
66	19	480	420,030	343,493	76,537
67	19	476	193,775	158,458	35,317
68	19	350	223,809	183,022	40,787
69	19	315	302,015	246,978	55,037
70	19	315	278,172	227,478	50,694
71	19	315	244,417	199,876	44,541
72	19	315	395,353	323,312	72,041
73	19	430	172,009	140,658	31,351
74	19	380	368,703	301,516	67,187
75	20		486,200	397,606	88,594
76	20	588	183,296	149,891	33,405
77	20	355	198,023	161,936	36,087
78	20	389	156,959	128,350	28,609
79	20	490	288,149	235,639	52,510
80	20	315	174,776	142,923	31,853
81	20	315	207,000	169,274	37,726
82	21	450	165,347	135,209	30,138
83	21	315	419,746	343,259	76,487
84	22	480	151,340	123,757	27,583
85	22	406	320,204	261,855	58,349
86	22	315	153,795	125,764	28,031
87	23	425	321,818	263,174	58,644
88	24	670	165,082	134,994	30,088
89	24		410,204	335,457	74,747
90	24	487	154,407	126,265	28,142
91	24	320	592,602	484,621	107,981
92	24	485	231,180	189,051	42,129
93	25		163,551	133,743	29,808
94	27	470	551,263	450,816	100,447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95	29	558	325,225	265,960	59,265
96	29	507	399,789	326,939	72,850
97	29		554,578	453,525	101,053
98	29	360	309,111	252,782	56,329
99	29	548	306,300	250,483	55,817
100	29	476	581,692	475,700	105,992
101	29	510	452,762	370,261	82,501
102	29	608	277,540	226,962	50,578
103	29	507	405,934	331,963	73,971
104	29		560,802	458,615	102,187
105	29	588	456,833	373,588	83,245
106	29	608	429,780	351,465	78,315
107	29	587	423,429	346,270	77,159
108	29	720	444,381	363,406	80,975
109	29		290,567	237,617	52,950
110	29	563	468,950	383,499	85,451
111	29	587	502,303	410,776	91,527
112	29	720	263,884	215,794	48,090
113	29	720	317,473	259,620	57,853
114	29	720	557,664	456,049	101,615
115	29	720	582,630	476,467	106,163
116	29	388	452,883	370,360	82,523
117	31	380	489,905	400,635	89,270
118	33	405	344,204	281,482	62,722
119	38		215,098	175,897	39,201
120	38	490	461,340	377,275	84,065
121	39		366,342	299,585	66,757
122	39	528	181,166	148,148	33,018
123	39	388	339,731	277,824	61,907
124	39	550	478,950	391,677	87,273
125	39	648	209,921	171,663	38,258
126	39	550	388,923	318,053	70,870
127	39	485	471,563	385,637	85,926
128	39	528	306,865	250,944	55,921
129	39	365	376,004	307,489	68,515
130	39	550	351,234	287,230	64,004
131	39	540	352,969	288,650	64,319
132	39	415	283,934	232,192	51,742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33	39	550	294,431	240,777	53,654
134	39	550	509,524	416,679	92,845
135	39	1170	552,298	451,661	100,637
136	39	485	530,180	433,573	96,607
137	39	550	269,474	220,367	49,107
138	39	608	451,324	369,083	82,241
139	39	608	426,169	348,511	77,658
140	39	388	566,378	463,175	103,203
141	39	315	234,043	191,389	42,654
142	39	388	546,450	446,878	99,572
143	39	388	525,651	429,869	95,782
144	39	388	318,675	260,605	58,070
145	40	720	324,751	265,573	59,178
146	40	550	343,699	281,069	62,630
147	40		206,966	169,247	37,719
148	41		497,798	407,089	90,709
149	45		396,214	324,015	72,199
150	45	415	464,534	379,887	84,647
151	46	528	236,522	193,418	43,104
152	48	507	448,476	366,754	81,722
153	48	430	598,980	489,837	109,143
154	48	388	448,315	366,624	81,691
155	49		441,791	361,289	80,502
156	49	485	283,717	232,014	51,703
157	49	563	273,801	223,905	49,896
158	49	485	545,013	445,703	99,310
159	50	600	265,640	217,232	48,408
160	50	600	402,954	329,528	73,426
161	50	600	628,010	513,579	114,431
162	50	388	392,029	320,594	71,435
163	51	1014	424,860	347,441	77,419
164	51	600	643,100	525,920	117,180
165	52	570	309,394	253,013	56,381
166	52	490	609,522	498,458	111,064
167	54	485	474,534	388,065	86,469
168	54	507	568,353	464,790	103,563
169	54	485	432,733	353,880	78,853
170	55	388	510,691	417,634	93,057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71	56	458	252,230	206,264	45,966
172	56	476	372,123	304,313	67,810
173	56	485	527,535	431,408	96,127
174	56	458	476,922	390,021	86,901
175	57	485	525,470	429,723	95,747
176	57	585	576,409	471,380	105,029
177	57	585	356,657	291,665	64,992
178	57	485	346,835	283,631	63,204
179	57	585	391,414	320,088	71,326
180	57	585	495,734	405,402	90,332
181	57	485	564,824	461,904	102,920
182	57	600	539,023	440,804	98,219
183	57	585	603,222	493,304	109,918
184	59	600	578,132	472,786	105,346
185	59	600	504,158	412,291	91,867
186	60	560	576,648	471,575	105,073
187	61	585	632,859	517,545	115,314
188	62	540	571,122	467,056	104,066
189	63	1014	268,076	219,222	48,854
190	64	585	429,156	350,954	78,202
191	64	585	406,947	332,793	74,154
192	65	608	411,279	336,333	74,946
193	65	1014	196,394	160,601	35,793
194	66	560	619,639	506,731	112,908
195	68	720	426,003	348,378	77,625
196	69		279,467	228,538	50,929
197	69	600	300,550	245,782	54,768
198	69	1100	664,358	543,304	121,054
199	69	900	526,406	430,487	95,919
200	69	1014	276,940	226,473	50,467
201	69	588	500,508	409,306	91,202
202	69	900	404,944	331,154	73,790
203	69	1014	434,272	355,138	79,134
204	69	670	695,017	568,377	126,640
205	69	1014	588,359	481,149	107,210
206	69	1014	525,137	429,448	95,689
207	69	510	514,439	420,698	93,741
208	69	1014	598,705	489,613	109,092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209	69	315	658,670	538,652	120,018
210	69	540	466,909	381,830	85,079
211	70	450	420,535	343,905	76,630
212	71	465	509,345	416,533	92,812
213	71	805	530,576	433,897	96,679

13) 근해안강망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	89	585	434,318	349,008	85,310
2	89	585	463,206	372,224	90,982
3	69	388	437,792	351,801	85,991
4	69	507	596,504	479,340	117,164
5	69	485	482,629	387,834	94,795
6	69	585	451,712	362,987	88,725
7	82	585	569,694	457,797	111,897
8	69	458	388,190	311,941	76,249
9	68	500	579,514	465,688	113,826
10	69	458	580,857	466,766	114,091
11	65	476	372,525	299,354	73,171
12	69	600	478,019	384,128	93,891
13	69	388	314,197	252,480	61,717
14	69	507	520,998	418,666	102,332
15	69	425	391,800	314,843	76,957
16	74	560	537,438	431,877	105,561
17	69	458	432,378	347,451	84,927
18	69	388	468,541	376,510	92,031
19	71	500	504,339	405,279	99,060
20	87	524	502,661	403,929	98,732
21	69	458	437,643	351,682	85,961
22	69	458	577,462	464,039	113,423
23	69	388	445,229	357,778	87,451
24	69	388	365,198	293,463	71,735
25	69	458	262,829	211,202	51,627
26	54	388	284,924	228,956	55,968
27	89	760	515,768	414,462	101,306
28	69	585	600,539	482,586	117,953
29	69	425	414,101	332,762	81,339
30	69	431	472,437	379,642	92,795
31	69	388	394,292	316,844	77,448
32	89	750	412,782	331,704	81,078
33	9.77	507	188,922	151,810	37,112
34	19	507	232,920	187,166	45,754
35	57	560	559,752	449,809	109,943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36	69	500	568,020	456,454	111,566
37	64	585	509,291	409,255	100,036
38	69	388	437,944	351,923	86,021
39	67	507	445,237	357,784	87,453
40	69	476	461,193	370,605	90,588
41	73	563	518,178	416,399	101,779
42	69	388	293,220	235,623	57,597
43	69	485	266,925	214,495	52,430
44	69	388	430,261	345,749	84,512
45	89	850	484,432	389,279	95,153
46	74	500	427,034	343,153	83,881
47	72	533	408,980	328,648	80,332
48	69	458	530,868	426,596	104,272
49	85	600	398,241	320,019	78,222
50	82	585	446,445	358,755	87,690
51	89	585	495,894	398,492	97,402
52	74	570	409,214	328,838	80,376
53	70	600	465,721	374,244	91,477
54	67	510	489,008	392,959	96,049
55	69	458	506,292	406,847	99,445
56	69	608	545,208	438,121	107,087
57	84	530	446,682	358,947	87,735
58	89	582	500,787	402,422	98,365
59	82	585	520,129	417,967	102,162
60	89	615	483,989	388,925	95,064
61	72	470	490,573	394,214	96,359
62	69	458	465,628	374,171	91,457
63	89	648	373,451	300,096	73,355
64	89	648	499,306	401,234	98,072
65	69	458	306,102	245,974	60,128
66	69	458	404,580	325,112	79,468
67	69	582	523,342	420,552	102,790
68	12	325	231,429	185,969	45,460
69	71	560	508,658	408,747	99,911
70	17	446	219,468	176,356	43,112
71	69	388	467,255	375,477	91,778
72	69	388	438,068	352,025	86,043
73	69	470	487,772	391,964	95,808
74	72	670	506,088	406,685	99,403
75	54	388	417,475	335,474	82,001
76	69	530	472,770	379,910	92,860
77	79	585	489,107	393,037	96,070
78	69	485	392,465	315,377	77,088
79	24	537	222,420	178,727	43,693
80	69	388	440,913	354,310	86,603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81	70	485	486,966	391,316	95,650
82	89	600	403,267	324,055	79,212
83	69	458	561,748	451,414	110,334
84	69	388	526,719	423,264	103,455
85	69	608	552,584	444,048	108,536
86	83	582	532,742	428,103	104,639
87	89	585	453,410	364,354	89,056
88	69	458	504,799	405,650	99,149
89	72	470	509,757	409,631	100,126
90	69	388	532,058	427,554	104,504
91	89	600	383,224	307,950	75,274
92	69	400	382,957	307,737	75,220
93	65	470	507,654	407,941	99,713
94	65	470	444,609	357,281	87,328
95	89	585	439,674	353,314	86,360
96	69	388	554,399	445,507	108,892
97	69	582	433,862	348,642	85,220
98	89	800	608,452	488,945	119,507
99	73	608	477,189	383,462	93,727
100	85	608	559,923	449,945	109,978
101	77	563	399,266	320,842	78,424
102	69	458	480,299	385,960	94,339
103	89	615	387,538	311,416	76,122
104	89	850	474,938	381,653	93,285
105	67	388	573,109	460,542	112,567
106	19	507	239,059	192,099	46,960
107	69	238	263,974	212,118	51,856
108	69	500	440,757	354,183	86,574
109	69	585	467,026	375,293	91,733
110	69	582	474,777	381,523	93,254
111	19	265	290,641	233,550	57,091
112	70	315	286,489	230,214	56,275
113	69	458	464,676	373,406	91,270
114	69	485	424,782	341,347	83,435
115	54	470	453,081	364,088	88,993
116	19	537	306,958	246,664	60,294
117	74	402	455,291	365,863	89,428
118	19	507	242,475	194,844	47,631
119	19	588	239,016	192,064	46,952
120	19	485	363,619	292,197	71,422
121	70	500	384,595	309,049	75,546
122	74	500	480,474	386,101	94,373
123	69	490	449,273	361,027	88,246
124	89	585	566,607	455,316	111,291
125	75	485	445,996	358,393	87,603

연번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26	75	560	450,168	361,746	88,422
127	69	570	427,119	343,225	83,894
128	69	900	424,835	341,388	83,447
129	70	450	462,107	371,340	90,767
130	73	570	307,491	247,090	60,401
131	89	585	539,044	433,167	105,877
132	69	563	418,379	336,199	82,180
133	19	360	201,319	161,770	39,549
134	39	470	259,790	208,757	51,033
135	29	316	354,557	284,913	69,644
136	19	507	287,674	231,165	56,509
137	68	400	484,596	389,411	95,185
138	19	269	255,930	205,657	50,273
139	19	500	250,988	201,687	49,301
140	23	500	341,815	274,674	67,141
141	69	441	419,419	337,034	82,385

14)잠수기

연번	허가업종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	잠수기(3구)	3.48	315	125,352	83,340	42,012
2	잠수기(3구)	4.34	316	165,070	109,750	55,320
3	잠수기(3구)	4.24	316	160,408	106,650	53,758
4	잠수기(3구)	4.33	360	183,845	122,234	61,611
5	잠수기(3구)	3.67	360	153,894	102,319	51,575
6	잠수기(3구)	4.18	360	135,513	90,099	45,414
7	잠수기(3구)	4.23	316	189,371	125,907	63,464
8	잠수기(3구)	4.34	360	182,756	121,511	61,245
9	잠수기(3구)	4.22	316	163,465	108,682	54,783
10	잠수기(3구)	4.38	365	161,655	107,480	54,175
11	잠수기(3구)	4.33	360	143,828	95,627	48,201
12	잠수기(3구)	3.35	360	200,005	132,982	67,023
13	잠수기(3구)	4.29	316	149,110	99,138	49,972
14	잠수기(3구)	4.4	320	153,948	102,354	51,594

연번	허가업종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5	잠수기(3구)	4.69	405	126,419	84,049	42,370
16	잠수기(3구)	3.22	316	162,180	107,830	54,350
17	잠수기(3구)	4.33	360	127,375	84,687	42,688
18	잠수기(3구)	4.36	360	115,481	76,778	38,703
19	잠수기(3구)	4.69	360	167,498	111,364	56,134
20	잠수기(3구)	3.15	316	131,179	87,217	43,962
21	잠수기(3구)	4.18	360	142,377	94,663	47,714
22	잠수기(3구)	4.16	360	138,509	92,088	46,421
23	잠수기(3구)	4.01	300	145,241	96,565	48,676
24	잠수기(3구)	3.99	360	165,487	110,026	55,461
25	잠수기(3구)	4.22	316	179,104	119,081	60,023
26	잠수기(3구)	4.4	360	154,459	102,696	51,763
27	잠수기(3구)	4.32	360	133,770	88,939	44,831
28	잠수기(3구)	4.4	360	140,932	93,702	47,230
29	잠수기(3구)	3.55	316	142,639	94,835	47,804
30	잠수기(3구)	4.18	316	79,356	52,759	26,597
31	잠수기(3구)	4.42	360	116,912	77,731	39,181
32	잠수기(3구)	4.38	360	109,869	73,047	36,822
33	잠수기(3구)	3.63	360	112,708	74,933	37,775
34	잠수기(3구)	3.44	360	132,419	88,042	44,377
35	잠수기(3구)	3.64	360	148,409	98,672	49,737
36	잠수기(3구)	4.2	360	137,593	91,482	46,111
37	잠수기(3구)	3.2	354	96,489	64,151	32,338
38	잠수기(3구)	3.55	490	132,954	88,396	44,558
39	잠수기(3구)	4.38	360	104,639	69,569	35,070

연번	허가업종	톤수	마력	평균연간 어획금액	평균어업 경비액	평년수익액
40	잠수기 (3구)	3.1	530	88,162	58,612	29,550
41	잠수기 (3구)	3.46	316	85,595	56,905	28,690
42	잠수기 (3구)	4.09	360	107,825	71,687	36,138
43	잠수기 (3구)	3.46	316	120,462	80,091	40,371
44	잠수기 (3구)	3.57	316	102,571	68,195	34,376
45	잠수기 (3구)	3.59	315	126,951	84,404	42,547
46	잠수기 (3구)	3.46	316	92,021	61,179	30,842
47	잠수기 (3구)	3.32	360	82,139	54,608	27,531
48	잠수기 (3구)	3.56	335	111,880	74,383	37,497
49	잠수기 (3구)	4.67	302	139,852	92,982	46,870
50	잠수기 (3구)	2.64	316	81,556	54,223	27,333
51	잠수기 (3구)	3.43	320	195,204	129,785	65,419
52	잠수기 (3구)	4.38	360	131,941	87,724	44,217
53	잠수기 (3구)	2.74	150	115,260	76,630	38,630
54	잠수기 (3구)	3.91	316	114,417	76,072	38,345
55	잠수기 (3구)	3.25	390	89,680	59,623	30,057
56	잠수기 (3구)	2.97	190	85,933	57,131	28,802
57	잠수기 (3구)	3.35	316	107,619	71,550	36,069
58	잠수기 (3구)	2.71	185	150,293	99,926	50,367
59	잠수기 (3구)	3.58	431	150,300	99,929	50,371
60	잠수기 (3구)	3.68	431	140,998	93,743	47,255
61	잠수기 (3구)	3.8	362	131,603	87,499	44,104
62	잠수기 (3구)	3.59	431	149,614	99,473	50,141
63	잠수기 (3구)	3.58	431	157,979	105,036	52,943
64	잠수기 (3구)	3.59	431	131,705	87,565	44,140

연번	허가업종	톤수	마력	평균연간 어획금액	평균어업 경비액	평년수익액
65	잠수기 (3구)	3.59	431	168,198	111,830	56,368
66	잠수기 (3구)	3.81	365	126,706	84,239	42,467
67	잠수기 (3구)	3.59	265	136,941	91,047	45,894
68	잠수기 (3구)	3.8	362	157,389	104,642	52,747
69	잠수기 (3구)	3.58	347	153,389	101,983	51,406
70	잠수기 (3구)	3.48	431	143,348	95,307	48,041
71	잠수기 (3구)	3.57	362	124,225	82,593	41,632
72	잠수기 (3구)	3.61	430	142,065	94,453	47,612
73	잠수기 (3구)	3.61	362	128,350	85,333	43,017
74	잠수기 (3구)	3.49	302	107,793	71,665	36,128
75	잠수기 (3구)	3.8	430	182,073	121,055	61,018
76	잠수기 (3구)	4.85	264	135,909	90,360	45,549
77	잠수기 (3구)	4.87	254	130,878	87,017	43,861
78	잠수기 (3구)	4.81	265	99,913	66,427	33,486
79	잠수기 (3구)	4.6	302	152,701	101,524	51,177
80	잠수기 (3구)	4.87	254	155,622	103,467	52,155
81	잠수기 (3구)	4.89	254	110,081	73,188	36,893
82	잠수기 (3구)	4.89	315	175,632	116,772	58,860
83	잠수기 (3구)	4.89	315	166,744	110,864	55,880
84	잠수기 (3구)	4.97	265	138,926	92,367	46,559
85	잠수기 (3구)	4.86	254	136,015	90,431	45,584
86	잠수기 (3구)	4.88	254	112,613	74,872	37,741
87	잠수기 (3구)	4.86	254	139,477	92,734	46,743
88	잠수기 (3구)	3.83	265	170,595	113,424	57,171
89	잠수기 (3구)	4.97	254	112,390	74,724	37,666

연번	허가업종	톤수	마력	평균연간 어획금액	평균어업 경비액	평년수익액
90	잠수기 (3구)	3.38	265	111,600	74,198	37,402
91	잠수기 (3구)	4.86	302	133,585	88,818	44,767
92	잠수기 (3구)	4.99	315	113,736	75,618	38,118
93	잠수기 (3구)	4.67	315	145,018	96,419	48,599
94	잠수기 (3구)	4.98	315	130,660	86,868	43,792
95	잠수기 (3구)	3.65	238	187,583	124,718	62,865
96	잠수기 (3구)	4.99	350	167,216	111,178	56,038
97	잠수기 (3구)	4.99	350	175,719	116,832	58,887
98	잠수기 (3구)	2.97	150	175,052	116,388	58,664
99	잠수기 (3구)	3.49	315	143,222	95,223	47,999
100	잠수기 (3구)	3.13	320	170,748	113,526	57,222
101	잠수기 (3구)	4.71	238	134,945	89,719	45,226
102	잠수기 (3구)	4.06	238	195,886	130,239	65,647
103	잠수기 (3구)	3.16	316	187,115	124,408	62,707
104	잠수기 (3구)	3.21	238	203,645	135,400	68,245
105	잠수기 (3구)	4.8	232	169,371	112,609	56,762
106	잠수기 (3구)	4.77	316	166,003	110,372	55,631
107	잠수기 (3구)	3.43	316	133,717	88,904	44,813
108	잠수기 (3구)	4.34	269	177,487	118,005	59,482
109	잠수기 (3구)	3.21	269	195,491	129,977	65,514
110	잠수기 (3구)	4.86	315	103,680	68,933	34,747
111	잠수기 (3구)	2.44	238	191,153	127,092	64,061
112	잠수기 (4구)	4.97	470	131,949	87,280	44,669
113	잠수기 (4구)	4.63	265	90,810	60,067	30,743
114	잠수기 (4구)	4.76	315	66,116	43,730	22,386

연번	허가업종	톤수	마력	평균연간 어획금액	평균어업 경비액	평년수익액
115	잠수기 (4구)	4.99	360	118,330	78,271	40,059
116	잠수기 (4구)	4.63	315	169,166	111,899	57,267
117	잠수기 (4구)	4.87	315	96,390	63,757	32,633
118	잠수기 (4구)	4.63	238	102,673	67,914	34,759
119	잠수기 (4구)	4.96	405	184,640	122,135	62,505
120	잠수기 (4구)	4.95	405	112,891	74,672	38,219
121	잠수기 (4구)	4.72	315	135,826	89,845	45,981
122	잠수기 (4구)	4.63	294	128,979	85,316	43,663
123	잠수기 (4구)	4.86	230	99,466	65,791	33,675
124	잠수기 (4구)	4.98	530	249,616	165,118	84,498
125	잠수기 (4구)	4.96	470	110,822	73,303	37,519
126	잠수기 (4구)	4.92	440	216,500	143,210	73,290
127	잠수기 (4구)	4.97	315	126,276	83,528	42,748
128	잠수기 (4구)	4.9	470	125,769	83,191	42,578
129	잠수기 (4구)	4.97	315	78,514	51,933	26,581
130	잠수기 (4구)	4.95	290	109,431	72,385	37,046
131	잠수기 (4구)	4.93	420	132,338	87,538	44,800
132	잠수기 (4구)	4.99	400	80,304	53,117	27,187
133	잠수기 (4구)	4.63	238	133,689	88,432	45,257
134	잠수기 (4구)	4.98	409	115,738	76,556	39,182
135	잠수기 (4구)	5.83	470	144,663	95,690	48,973
136	잠수기(전 남)	4.98	356	149,814	99,098	50,716
137	잠수기 (4구)	4.98	405	151,911	100,485	51,426
138	잠수기 (4구)	4.97	315	117,205	77,528	39,677
139	잠수기 (4구)	4.99	356	107,083	70,830	36,253

연번	허가업종	톤수	마력	평균연간 어획금액	평년어업 경비액	평년수익액
140	잠수기 (4구)	4.63	238	85,141	56,317	28,824
141	잠수기 (4구)	4.97	315	269,430	178,224	91,206
142	잠수기 (4구)	4.9	348	126,313	83,551	42,762
143	잠수기 (4구)	4.97	315	117,203	77,526	39,677
144	잠수기 (4구)	4.95	409	144,005	95,256	48,749
145	잠수기 (4구)	4.75	315	154,000	101,868	52,132
146	잠수기 (4구)	4.69	360	206,558	136,633	69,925
147	잠수기 (4구)	4.96	407	122,774	81,209	41,565
148	잠수기 (4구)	4.93	470	109,134	72,188	36,946
149	잠수기 (4구)	4.97	385	200,653	132,727	67,926
150	잠수기 (5구)	6.67	430	258,695	187,110	71,585
151	잠수기 (5구)	6.5	470	279,858	202,417	77,441
152	잠수기 (5구)	4.97	470	276,180	199,758	76,422
153	잠수기 (5구)	7.93	470	259,888	187,972	71,916
156	잠수기 (5구)	7.93	450	208,060	150,484	57,576
157	잠수기 (5구)	4.99	470	275,521	199,280	76,241
158	잠수기 (5구)	7.93	720	288,728	208,834	79,894
159	잠수기 (5구)	7.93	470	264,383	191,222	73,161
160	잠수기 (5구)	7.93	440	222,415	160,868	61,547
162	잠수기 (5구)	7.93	720	264,616	191,392	73,224
165	잠수기 (5구)	4.97	364	219,001	158,399	60,602
167	잠수기 (5구)	6.67	360	249,487	180,448	69,039
168	잠수기 (5구)	4.99	470	285,305	206,355	78,950
169	잠수기 (5구)	4.98	470	288,017	208,317	79,700
171	잠수기 (5구)	6.6	510	198,548	143,604	54,944

연번	허가업종	톤수	마력	평균연간 어획금액	평년어업 경비액	평년수익액
172	잠수기 (5구)	6.67	430	269,152	194,672	74,480
173	잠수기 (5구)	4.98	360	290,566	210,161	80,405
174	잠수기 (5구)	6.67	450	161,775	117,008	44,767
175	잠수기 (5구)	7.93	470	306,363	221,590	84,773
176	잠수기 (5구)	4.97	238	199,920	144,599	55,321
177	잠수기 (2구)	4.99	460	147,945	99,932	48,013
178	잠수기 (2구)	4.98	470	150,000	101,325	48,675
179	잠수기 (1구)	4.05	360	250,000	171,000	79,000

15) 근해통발

연번	허가업종	톤수	마력	평균연간 어획금액	평년어업 경비액	평년수익액
1	기타통발	70	582	579,974	480,267	99,707
2	기타통발	77	470	510,616	422,832	87,784
3	기타통발	29	485	463,940	384,180	79,760
4	기타통발	39	560	608,390	503,798	104,592
5	기타통발	77	615	745,310	617,184	128,126
6	기타통발	69	560	758,759	628,321	130,438
7	기타통발	69	500	432,895	358,473	74,422
8	기타통발	79	585	680,868	563,820	117,048
9	기타통발	11	388	374,685	310,267	64,418
10	기타통발	72	500	653,017	540,754	112,263
11	장어통발	38	507	1,099,806	1,000,430	99,376
12	기타통발	69	300	511,662	423,699	87,963
13	기타통발	69	570	577,386	478,125	99,261
14	기타통발	19	340	307,501	254,635	52,866
15	기타통발	55	380	527,004	436,404	90,600
16	기타통발	55	415	471,164	390,163	81,001
17	문어단지	11	356	250,000	204,650	45,350
18	기타통발	69	600	477,368	395,300	82,068
19	기타통발	46	476	532,548	440,995	91,553
20	기타통발	68	585	560,825	464,411	96,414
21	기타통발	38	400	522,149	432,383	89,766
22	기타통발	47	507	609,036	504,333	104,703
23	기타통발	63	465	632,232	523,542	108,690
24	기타통발	17		301,213	249,427	51,786
25	기타통발	57	560	357,537	296,067	61,470
26	기타통발	71	420	759,642	629,051	130,591

연번	허가업종	톤수	마력	평균연간 어획금액	평년어업 경비액	평년수익액
27	기타통발	59	385	486,439	402,813	83,626
28	문어단지	9.77	355	300,000	245,580	54,420
29	기타통발	15	252	508,788	421,319	87,469
30	기타통발	41	490	471,979	390,838	81,141
31	기타통발	16	365	303,330	251,178	52,152
32	기타통발	9.77	252	352,706	292,068	60,638
33	기타통발	42	470	584,084	483,671	100,413
34	기타통발	41	485	328,220	271,789	56,431
35	문어단지	12	350	160,000	130,976	29,024
36	기타통발	14	365	561,495	464,966	96,529
37	장어통발	68	585	827,008	752,281	74,727
38	기타통발	79	600	530,241	439,084	91,157
39	기타통발	75	550	722,994	598,702	124,292
40	기타통발	35	440	359,456	297,655	61,801
41	기타통발	47	450	387,935	321,239	66,696
42	기타통발	43	458	639,553	529,606	109,947
43	기타통발	77	582	662,645	548,726	113,919
44	장어통발	74	600	1,441,401	1,311,165	130,236
45	장어통발	60	774	1,125,133	1,023,470	101,663
46	기타통발	43	450	352,790	292,138	60,652
47	장어통발	78	720	973,837	885,844	87,993
48	장어통발	69	608	1,197,741	1,089,519	108,222
49	장어통발	72	650	1,378,147	1,253,625	124,522
50	장어통발	75	720	1,271,905	1,156,982	114,923
51	기타통발	71	600	513,233	424,999	88,234
52	기타통발	45	458	570,075	472,071	98,004
53	기타통발	45	458	346,602	287,011	59,591
54	기타통발	69	563	619,183	512,736	106,447
55	기타통발	42	458	619,183	512,736	106,447
56	기타통발	79	800	438,327	362,970	75,357
57	기타통발	79	670	833,918	690,559	143,359
58	장어통발	69	750	813,387	739,891	73,496
59	기타통발	45	458	314,471	260,406	54,065
60	기타통발	72	563	597,850	495,071	102,779
61	기타통발	37	315	300,096	248,503	51,593
62	기타통발	43	431	619,183	512,736	106,447
63	기타통발	70	560	410,226	339,699	70,527
64	기타통발	46	458	427,019	353,604	73,415
65	장어통발	72	608	804,240	731,571	72,669
66	기타통발	79	600	722,764	598,512	124,252
67	기타통발	79	600	554,282	458,992	95,290
68	기타통발	79	585	483,969	400,765	83,204
69	기타통발	9.16	600	329,081	272,501	56,580

16) 근해연승

연번	허가업종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	연승 (제주지역)	33	415	458,613	384,264	74,349
2	연승 (제주지역)	21	315	446,283	373,933	72,350
3	연승 (제주지역)	27	507	560,926	469,991	90,935
4	연승	22	380	502,913	422,790	80,123
5	연승 (제주지역)	11	550	197,090	165,135	31,955
6	연승	21	365	315,259	265,030	50,229
7	연승	19	470	189,442	159,254	30,188
8	연승	29	900	321,452	270,236	51,216
9	연승	29		582,318	489,545	92,773
10	연승 (제주지역)	27	537	381,690	319,810	61,880
11	연승	52	660	360,569	303,123	57,446
12	연승 (제주지역)	27	588	598,874	501,791	97,083
13	연승 (제주지역)	25	507	441,583	369,994	71,589
14	연승	29	500	429,136	360,765	68,371
15	연승 (제주지역)	29	595	497,502	416,851	80,651
16	연승	29	608	348,012	292,565	55,447
17	연승 (제주지역)	21	415	431,972	361,940	70,032
18	연승 (제주지역)	36	650	208,987	175,103	33,884
19	연승	31	440	232,087	195,106	36,981
20	연승	29	650	478,887	402,593	76,294
21	연승	35	365	269,760	226,776	42,984
22	연승 (제주지역)	17	310	347,575	291,225	56,350
23	연승	29	720	275,329	231,460	43,869
24	연승 (제주지역)	29	608	483,269	404,924	78,345
25	연승 (제주지역)	29	600	486,596	407,709	78,887
26	연승 (제주지역)	21	431	448,735	375,987	72,748
27	연승 (제주지역)	29	510	507,634	425,339	82,295
28	연승	29		588,811	495,006	93,805
29	연승 (제주지역)	15	470	320,695	268,704	51,991

연번	허가업종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30	연승	29		646,862	543,806	103,056
31	연승	29	600	554,645	466,282	88,363
32	연승	29	608	360,502	303,068	57,434
33	연승 (제주지역)	22	537	577,576	483,943	93,633
34	연승 (제주지역)	29	470	427,827	358,468	69,359
35	연승 (제주지역)	29	500	642,124	538,029	104,095
36	연승	36	388	555,503	467,004	88,499
37	연승 (제주지역)	39	540	445,962	373,664	72,298
38	연승	29		337,186	283,463	53,723
39	연승 (제주지역)	39	570	411,049	344,410	66,639
40	연승 (제주지역)	10	355	278,508	233,353	45,155
41	연승	22	355	281,572	236,709	44,863
42	연승 (제주지역)	29	600	566,195	474,408	91,787
43	연승	29	458	275,402	231,521	43,881
44	연승 (제주지역)	29	588	331,706	277,930	53,776
45	연승	25		270,033	227,009	43,024
46	연승	29	500	703,475	591,401	112,074
47	연승 (제주지역)	30	600	554,365	464,493	89,872
48	연승 (제주지역)	21	300	213,375	178,778	34,597
49	연승 (제주지역)	29	600	576,022	482,639	93,383
50	연승 (제주지역)	39	608	543,494	455,386	88,108
51	연승 (제주지역)	40	570	449,943	376,998	72,945
52	연승 (제주지역)	29	550	256,439	214,862	41,577
53	연승 (제주지역)	39	608	468,013	392,140	75,873
54	연승	13	470	165,582	139,195	26,387
55	연승 (제주지역)	21	380	574,584	481,437	93,147
56	연승 (제주지역)	29	510	394,553	330,588	63,965
57	연승 (제주지역)	29	415	478,248	400,716	77,532

연번	허가업종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58	연승 (제주지역)	21	380	433,623	363,326	70,297
59	연승	27	388	299,586	251,853	47,733
60	연승 (제주지역)	10	365	142,988	119,802	23,186
61	연승 (제주지역)	20	320	429,143	359,570	69,573
62	연승	46	490	442,217	371,761	70,456
63	연승	24	315	410,942	345,469	65,473
64	연승 (제주지역)	29	608	210,547	176,410	34,137
65	연승	29	388	555,828	467,276	88,552
66	연승 (제주지역)	29	587	375,870	314,935	60,935
67	연승	29		623,471	524,143	99,328
68	연승	29	639	261,577	219,899	41,678
69	연승	29	550	591,118	496,943	94,175
70	연승 (제주지역)	65	570	444,222	372,206	72,016
71	연승	29		596,301	501,303	94,998
72	연승 (제주지역)	29	600	551,778	462,329	89,449
73	연승 (제주지역)	29	470	575,183	481,940	93,243
74	연승 (제주지역)	29	490	587,911	492,604	95,307
75	연승 (제주지역)	26	431	571,224	478,622	92,602
76	연승 (제주지역)	29	600	714,897	599,006	115,891
77	연승 (제주지역)	12	340	319,130	267,392	51,738
78	연승 (제주지역)	15	490	255,117	213,755	41,362
79	연승 (제주지역)	29	388	538,049	450,823	87,226
80	연승 (제주지역)	24	537	561,219	470,239	90,980
81	연승 (제주지역)	29	608	560,257	469,431	90,826
82	연승 (제주지역)	24	537	565,997	474,242	91,755
83	연승 (제주지역)	29	490	321,144	269,078	52,066
84	연승	40	340	228,359	191,970	36,389
85	연승	17	588	338,398	284,481	53,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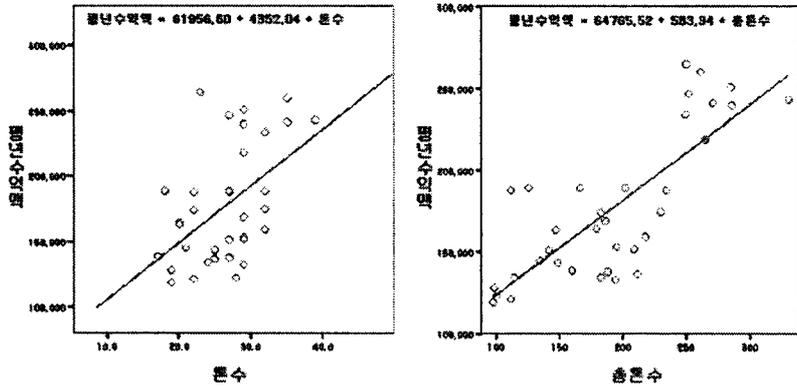
연번	허가업종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86	연승	14	510	151,797	127,605	24,192
87	연승 (제주지역)	22	328	380,311	318,656	61,655
88	연승	27	387	286,226	240,622	45,604
89	연승 (제주지역)	29	560	474,995	397,988	77,007
90	연승	22		394,762	331,868	62,894
91	연승 (제주지역)	21	380	449,310	376,468	72,842
92	연승 (제주지역)	29	600	546,308	457,744	88,564
93	연승	29		602,510	506,521	95,989
94	연승	17	365	252,415	212,196	40,219
95	연승 (제주지역)	29	608	655,206	548,990	106,216
96	연승(제주 지역)	24	588	638,229	534,763	103,466
97	연승 (제주지역)	29	639	602,169	504,551	97,618
98	연승 (제주지역)	29	595	470,608	394,315	76,293
99	연승 (제주지역)	21	380	540,307	452,716	87,591
100	연승	29	470	464,907	390,840	74,067
101	연승 (제주지역)	39	458	315,687	264,508	51,179
102	연승 (제주지역)	11	305	148,673	124,567	24,106
103	연승	27	505	236,849	199,110	37,739
104	연승 (제주지역)	25	477	563,271	471,958	91,313
105	연승 (제주지역)	26	580	454,959	381,203	73,756
106	연승	21	412	394,774	331,878	62,896
107	연승 (제주지역)	29	608	500,789	419,605	81,184
108	연승	16	388	191,642	161,107	30,535
109	연승 (제주지역)	32	350	260,857	218,564	42,293
110	연승 (제주지역)	17	320	282,915	237,047	45,868
111	연승 (제주지역)	9.16	360	237,609	199,084	38,525
112	연승	15	365	356,141	299,400	56,741
113	연승	22	365	356,141	299,400	56,741
114	연승	38	250	369,760	310,845	58,915

연번	허가업종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15	연승	29	360	552,753	464,690	88,063
116	연승 (제주지역)	29	587	462,620	387,621	74,999
117	연승	13	265	170,538	143,363	27,175
118	연승	15	315	172,021	144,608	27,413
119	연승	17	392	464,297	390,326	73,971
120	연승 (제주지역)	12	588	341,058	285,766	55,292
121	연승	34	470	269,056	226,187	42,869
122	연승	9.77	558	265,953	223,577	42,376
123	연승	18	558	546,203	459,184	87,019
124	연승	16	720	502,412	422,368	80,044
125	연승 (제주지역)	9.16	316	153,252	128,401	24,851
126	연승 (제주지역)	29	500	298,071	249,747	48,324
127	연승	38	400	303,944	255,516	48,428
128	연승 (제주지역)	21	365	247,408	207,296	40,112
129	연승	12		224,167	188,449	35,718
130	연승	10	254	207,704	174,610	33,094
131	연승 (제주지역)	19	315	209,824	175,802	34,022
132	연승 (제주지역)	22	587	241,584	202,414	39,170
133	연승 (제주지역)	18	315	268,195	224,712	43,483
134	연승	21	476	298,802	251,196	47,606
135	연승	16	420	351,153	295,203	55,950
136	연승	32	450	242,457	203,824	38,633
137	연승	32	402	196,917	165,538	31,379
138	연승	29	600	455,103	382,597	72,506
139	연승	8.55		150,924	126,872	24,052
140	연승 (제주지역)	25	431	389,235	326,133	63,102
141	연승	18	320	363,581	305,655	57,926
142	연승	36	415	291,880	245,376	46,504
143	연승	38	487	281,700	236,815	44,885
144	연승 (제주지역)	24	588	506,725	424,576	82,149
145	연승	29	360	654,209	549,985	104,224
146	연승 (제주지역)	36	486	421,256	352,961	68,295
147	연승	17	388	267,611	224,974	42,637
148	연승 (제주지역)	29	670	540,248	452,668	87,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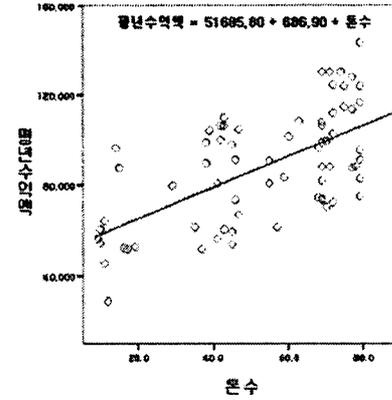
연번	허가업종	톤수	마력	평균연간어획금액	평년어업경비액	평년수익액
149	연승	21	315	502,925	422,800	80,125
150	연승	21	350	240,916	202,529	38,387
151	연승	13	265	186,463	156,750	29,713
152	연승	18	315	299,162	251,495	47,667
153	연승 (제주지역)	29	405	490,051	410,606	79,445
154	연승 (제주지역)	29	639	435,663	365,035	70,628
155	연승	32	365	233,078	195,941	37,137
156	연승 (제주지역)	19	608	416,409	348,901	67,508
157	연승 (제주지역)	39	388	240,653	201,635	39,018

2. 산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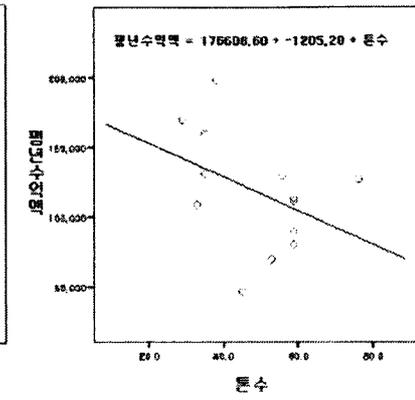
1). 기선권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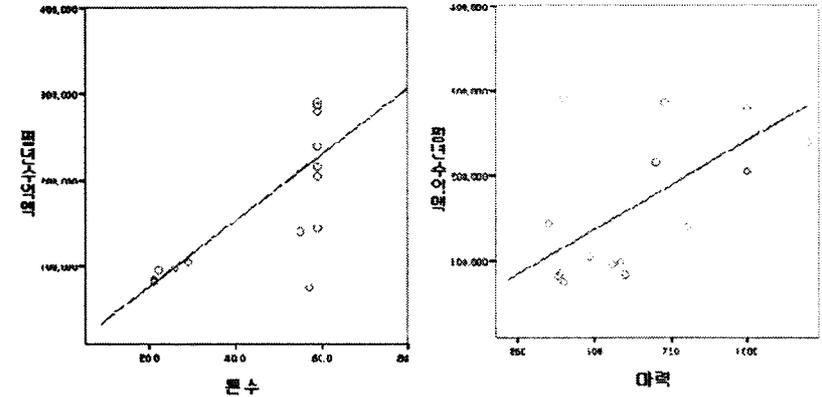
2) 근해통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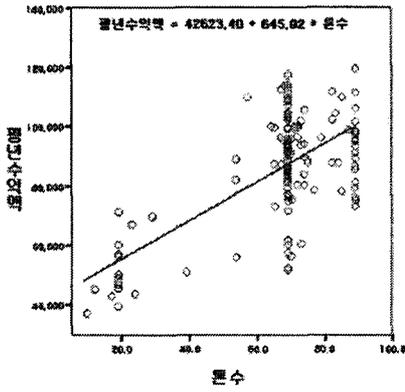
3) 동해구기선저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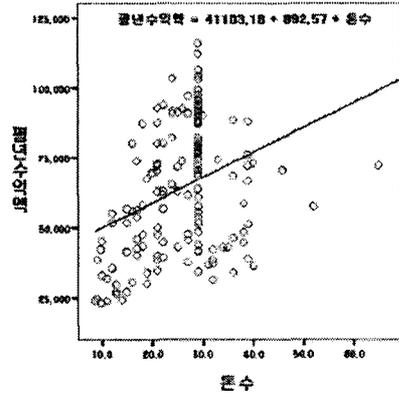
4) 동해구트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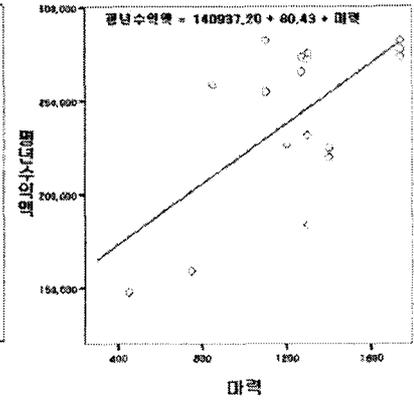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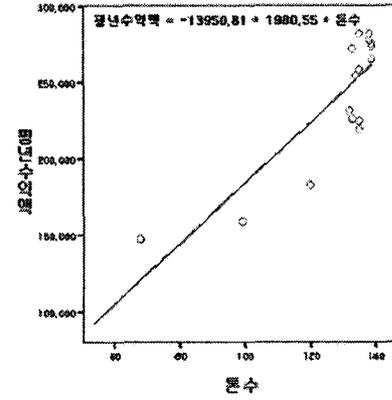
5) 근해안장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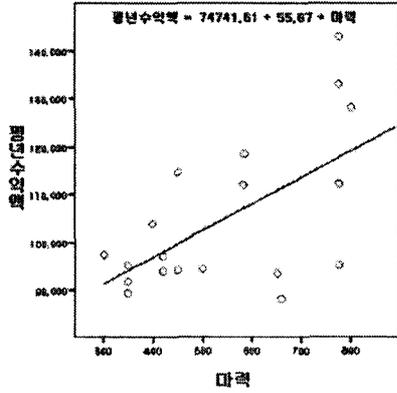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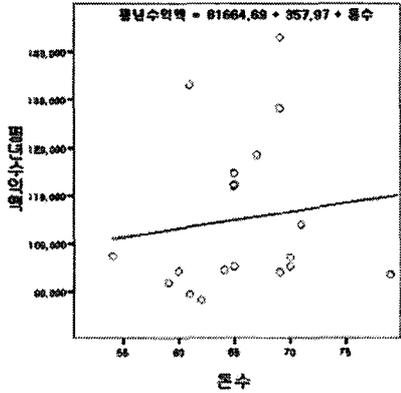
6) 근해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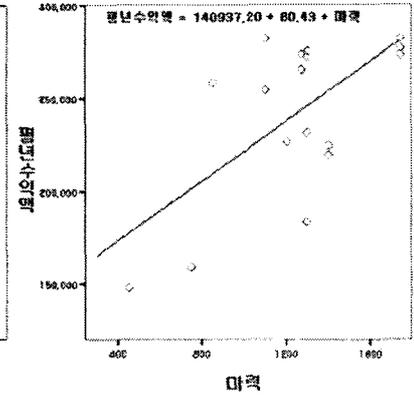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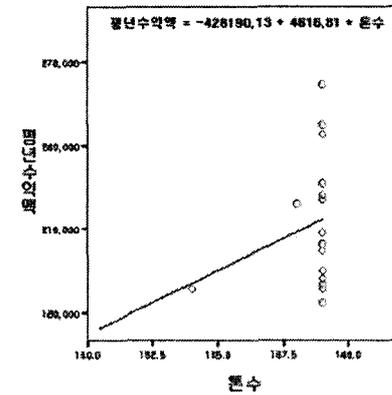
8)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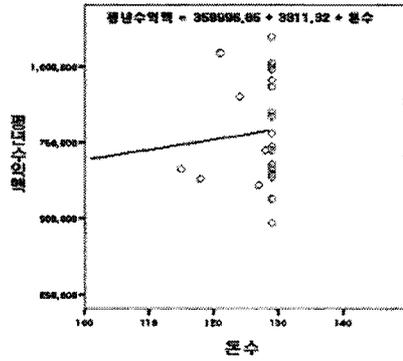
7)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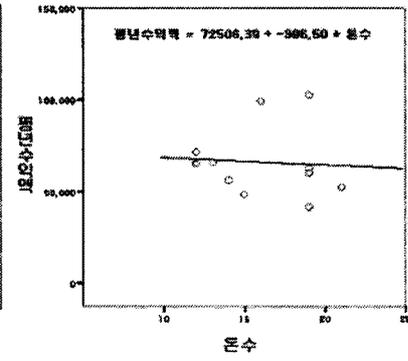
9) 대형트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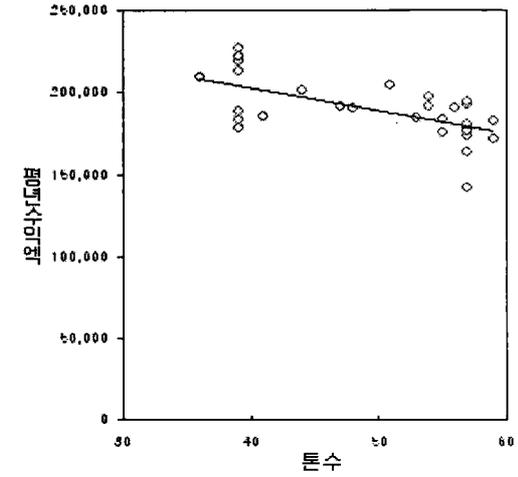
10) 대형선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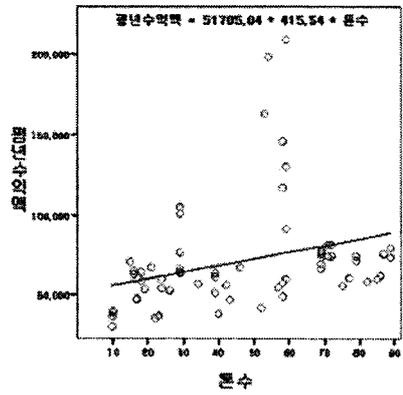
11) 소형선망



14) 외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



12) 근해채낚기



13) 근해자망

